2004. 7

지방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경기도행정자료실
B00000029141

경 기 도

2004. 7

지방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322.115
지618
2004-2
경기도 행정자료

경 기 도

목 차

Ⅰ. 관리대상 지방산업단지 ····· 3

Ⅱ. 지방산업단지 관리 기본방향 ····· 4

Ⅲ. 용도별 구획 · 공장배치 및 사후관리 ····· 5

Ⅳ.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획면적 ····· 6

Ⅴ. 산업단지별 세부 관리기본계획

1. 성남지방산업단지 ····· 8
2. 송탄지방산업단지 ····· 14
3. 평택지방산업단지 ····· 21
4. 향남제약지방산업단지 ····· 28
5. 반월도금지방산업단지 ····· 34
6. 문발Ⅰ지방산업단지 ····· 39
7. 문발Ⅱ지방산업단지 ····· 44
8. 금파지방산업단지 ····· 49
9. 용현지방산업단지 ····· 54
10. 추팔지방산업단지 ····· 62
11. 어연 · 한산지방산업단지 ····· 68
12. 칠괴지방산업단지 ····· 75
13. 장당지방산업단지 ····· 81
14. 동두천지방산업단지 ····· 87

15. 안성제Ⅰ·Ⅱ지방산업단지 ····· 93
16. 안성제Ⅲ지방산업단지 ····· 103
17. 금산지방산업단지 ····· 108
18. 덕산지방산업단지 ····· 113
19. 장원지방산업단지 ····· 118
20. 두교지방산업단지 ····· 123
21. 공도지방산업단지 ····· 128
22. 가율지방산업단지 ····· 133
23. 동항지방산업단지 ····· 138
24. 원곡지방산업단지 ····· 143
25. 미양Ⅱ지방산업단지 ····· 148
26. 학운지방산업단지 ····· 153
27. 율생지방산업단지 ····· 160
28. 상마지방산업단지 ····· 167
29. 양문지방산업단지 ····· 174
30. 목동지방산업단지 ····· 179
31. 검준지방산업단지 ····· 183
32. 상수지방산업단지 ····· 189
33. 장안지방산업단지 ····· 194
34. 탄현지방산업단지 ····· 198
35. 발안지방산업단지 ····· 204
36. 오산지방산업단지 ····· 210
37. 파주LCD지방산업단지 ····· 217
38. 용월지방산업단지 ····· 226
39. 현곡지방산업단지 ····· 232
40. 마도지방산업단지 ····· 237

Ⅰ. 관리대상 지방산업단지

연번	산 업 단 지 명	위 치	관리기관
1	성남지방산업단지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신흥동 일원	성남관리공단
2	송탄지방산업단지	평택시 모곡동 일원	평택관리공단
3	평택지방산업단지	평택시 세교동 일원	평택관리공단
4	향남제약지방산업단지	화성시 향남면 상신리 일원	화성시
5	반월도금지방산업단지	안산시 팔곡2동 일원	안산시
6	문발Ⅰ지방산업단지	파주시 교하면 문발리 일원	파주시
7	문발Ⅱ지방산업단지	파주시 교하면 문발리 일원	파주시
8	금파지방산업단지	파주시 파평면 금파리 일원	파주시
9	용현지방산업단지	의정부시 용현동 일원	의정부시
10	추팔지방산업단지	평택시 팽성읍 추팔리 일원	평택시
11	어연·한산지방산업단지	평택시 청북면 어연리, 한산리 일원	평택시
12	칠괴지방산업단지	평택시 칠괴동, 칠원동 일원	평택시
13	장당지방산업단지	평택시 장당동 일원	평택시
14	동두천지방산업단지	동두천시 동두천동 일원	동두천시
15	안성제Ⅰ지방산업단지	안성시 대덕면 건지리 일원	안성관리공단
16	안성제Ⅱ지방산업단지	안성시 미양면 구수리, 계륵리 일원	안성관리공단
17	안성제Ⅲ지방산업단지	안성시 서운면 신능리 일원	안성관리공단
18	금산지방산업단지	안성시 일죽면 금산리 일원	안성관리공단
19	덕산지방산업단지	안성시 삼죽면 덕산리 일원	안성관리공단
20	장원지방산업단지	안성시 죽산면 장원리 일원	안성관리공단
21	두교지방산업단지	안산시 죽산면 두교리 일원	안성관리공단
22	공도지방산업단지	안성시 공도면 만정리 일원	안성관리공단
23	가율지방산업단지	안성시 보개면 가율리 일원	안성관리공단
24	동항지방산업단지	안성시 양성면 동항리 일원	안성관리공단
25	원곡지방산업단지	안성시 원곡면 내가천리 일원	안성관리공단
26	미양Ⅱ지방산업단지	안성시 미양면 구수리 일원	안성관리공단
27	학운지방산업단지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일원	김포시
28	율생지방산업단지	김포시 대곶면 율생리 일원	김포시
29	상마지방산업단지	김포시 월곶면 고양리 일원	김포시
30	양문지방산업단지	포천시 영중면 양문리 일원	포천시
31	목동지방산업단지	가평군 북면 목동리 일원	가평군
32	검준지방산업단지	양주시 남면 상수리 일원	양주시
33	상수지방산업단지	양주시 남면 상수리 일원	양주시
34	장안지방산업단지	여주군 점동면 장안리 일원	여주군
35	탄현지방산업단지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일원	파주시
36	발안지방산업단지	화성시 향남면 구문천리 상신리 하길리 일원	화성시
37	오산지방산업단지	파주시 조리면 오산리 일원	파주시
38	파주LCD지방산업단지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일원	파주시
39	용월지방산업단지	안성시 삼죽면 용월리 일원	안성시
40	현곡지방산업단지	평택시 청북면 현곡리, 후사리, 토진리 일원	평택시
41	마도지방산업단지	화성시 마도면 쌍송리 일원	화성시

Ⅱ. 지방산업단지 관리 기본방향

가.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과 단지별 세부관리계획으로 구분하여 관리

나. 수도권공장의 재배치, 공장의 지역간 균형배치, 공해업종 등 특정 공장의 합리적인 배치

다. 첨단기술산업, 협동화실천계획 승인사업, 외국인 투자기업, 원자재 공급사업, 폐기물처리업, 수출증진 유망사업의 우선 지원 및 육성

라. 산업시설의 공동화, 협업화, 계열화 및 지원시설의 이용편의 등을 고려하여 입주기업의 효율성이 극대화 되도록 공장배치계획의 수립·시행

마. 신규 지정 산업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리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산업단지 관리공단 및 입주기업체협의회가 설립되어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 당해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위탁 수행

바.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산업단지별로 입주업종, 입주자격, 입주 우선순위 및 사후관리를 내용으로 한 세부 관리기본계획 수립·고시

사. 산업단지 연차별 시행계획에 의거 무등록공장 입주를 위한 영구 임대 단지를 운영할 수 있으며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하여 분양할 수 있음.

아. 세부관리기본계획에 관리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은 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관련업무를 수행

자. 추가 지정된 산업단지는 본 고시에 의하되 용도별 구획면적은 사유 발생시 변경고시

Ⅲ. 용도별 구획, 공장배치 및 사후관리

가. 관리기관은 산업단지를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며, 당해 산업단지에 물류시설 업체가 입주하고자 할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물류시설 용도는 지원시설 구역을 포함하여 도내 산업단지 평균 지원시설부지 비율 범위 내에서 허용함.

나. 공장, 기타시설의 배치계획은 관리기관이 본 고시의 범위내에서 세부 시행계획을 정하여 시행

다. 산업단지내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1) 산업시설구역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2) 지원시설구역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2호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부표(건축물의 용도분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운수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등의 건축물

3) 공공시설구역 공공기관의 청사 또는 공공시설

라. 관리기관은 매년 1회 이상 공장과 기타시설에 대하여 입주의 적정성 및 입주계약 준수여부 등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함.

마.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에 대한 사후관리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산업단지관리지침과 동 관리기본계획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산업단지 입주관리요령에 의함.

Ⅳ.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획면적

연번	산 업 단 지 명	관리대상 및 용도별 구획면적(㎡)				
		계	산업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	녹지
1	성남지방산업단지	1,823,121	1,237,839	26,945	304,671	253,666
2	송탄지방산업단지	1,086,289.6	786,629.4	20,863.1	230,881.5	47,915.6
3	평택지방산업단지	534,798.2	394,350.3	13,145.4	82,535.1	44,767.4
4	향남제약지방산업단지	648,214	464,251	-	104,370	79,593
5	반월도금지방산업단지	136,829	116,851	1,342	18,636	-
6	문발Ⅰ지방산업단지	50,302.4	30,252.2	358	7,121.7	12,570.5
7	문발Ⅱ지방산업단지	205,724.4	163,414	3,777.4	26,426.9	12,106.1
8	금파지방산업단지	78,289.8	50,383.1	697.5	12,827.7	14,381.5
9	용현지방산업단지	345,546.5	210,423.2	46,161.6	58,509.9	30,451.8
10	추팔지방산업단지	609,999.2	414,146.8	35,767	115,427.2	44,658.2
11	어연·한산지방산업단지	689,508.4	463,544.7	30,690.5	148,621.9	46,651.3
12	칠괴지방산업단지	641,275.5	495,324.8	22,364.3	85,506.1	38,080.3
13	장당지방산업단지	149,718.5	142,117.1	1,899.6	671.3	5,030.5
14	동두천지방산업단지	262,160	156,151.1	9,689.9	74,210	22,109
15	안성제Ⅰ지방산업단지	667,998	549,214	-	118,784	-
16	안성제Ⅱ지방산업단지	716,469	549,381	3,667	159,499	3,922
17	안성제Ⅲ지방산업단지	396,689.1	284,880.8	3,725.1	81,885.6	26,197.6
18	금산지방산업단지	57,842.4	33,661.5	4,085.7	10,955	9,140.2
19	덕산지방산업단지	59,238.6	48,331.7	-	7,216	3,690.9
20	장원지방산업단지	59,500	46,909.5	-	7,056.5	5,534
21	두교지방산업단지	56,018	48,314.1	-	2,603.2	5,100.7
22	공도지방산업단지	69,177.8	62,830.9	-	3,565.7	2,781.2
23	가율지방산업단지	57,892.5	49,934.7	-	4,022.8	3,935
24	동항지방산업단지	57,243.4	43,164.4	4,187.7	5,441.8	4,449.5

연번	산 업 단 지 명	관리대상 및 용도별 구획면적(㎡)				
		계	산업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	녹지
25	원곡지방산업단지	99,881.1	78,545	-	6,476	14,867.1
26	미양Ⅱ지방산업단지	159,986.5	144,249.6	984.8	7,485.7	7,266.4
27	학운지방산업단지	55,628.2	39,697.8	349.2	7,903	7,678.2
28	율생지방산업단지	48,758.8	34,141.4	1,166.8	3,961.0	9,489.6
29	상마지방산업단지	80,961	59,701	2,770	7,261	11,229
30	양문지방산업단지	179,634.9	115,016.3	3,425.5	47,351.2	13,841.9
31	목동지방산업단지	59,500	50,114	500	3,831	5,055
32	검준지방산업단지	145,000	88,307	1,500	43,909	11,284
33	상수지방산업단지	59,162	48,374	57.1	10,730.9	-
34	장안지방산업단지	59,425	44,583	-	4,505	10,337
35	탄현지방산업단지	122,871.3	83,908.5	13,113.2	11,781.3	14,608.3
36	발안지방산업단지	1,845,700	1,307,000	64,045	298,902	175,753
37	오산지방산업단지	230,811	171,341	4,394	27,582	27,494
38	파주LCD지방산업단지	1,695,724	1,167,813	44,091 (기타 21,332)	281,424	181,064
39	용월지방산업단지	60,000	40,524	991	7,567	10,900
40	현곡지방산업단지	727,668	514,291	15,088	129,690	68,599
41	마도지방산업단지	942,000	576,798	62,176	177,124	125,902

Ⅴ. 산업단지별 세부 관리기본계획 : 덧 붙 임

성남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1. 산업단지 개요

가. 관리기관 성남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

나. 조성목적

○ 경공업 육성으로 지역주민의 고용촉진

○ 위성도시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시민생활 안정대책 강구

다. 추진경위

- '68. 5. 7 서울시 광주대단위 공업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건설부고시 제286호)
- '71. 10. 7 공업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건설부고시 제617호)
- '72. 11. 3 도시계획 구역변경으로 공업단지 확장
- '74. 9. 7 성남공업단지(1, 2공단) 준공
- '76. 11. 10 공업단지관리법 적용대상 공업단지 지정
- '76. 11. 12 성남공업단지(3공단) 준공
- '80. 8. 23 사단법인 성남공업단지 관리공단 인가
- '81. 6. 30 공업단지관리기관이 성남시로부터 성남공업단지관리공단으로 변경 (대통령령 제10363호)
- '82. 10. 29 공업단지면적 및 용도별구획고시 (상공부고시 제40호)
- '86. 5. 20 공업단지면적 및 용도별구획고시개정 (상공부고시 제19호)
- '86. 9. 25 공업단지면적 및 용도별구획고시개정 (상공부고시 제34호)
- '87. 4. 30 공업단지면적 및 용도별구획고시개정 (상공부고시 제13호)
- '91. 6. 30 공업단지면적 및 용도별구획고시 (경기도고시 제245호)
- '94. 6. 20 공업단지입주업종 일부제한 (경기도고시 제166호)
- '00. 11. 2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변경 개정고시 (경기도 고시 제265호)
- '01. 2. 7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변경 개정고시 (경기도 고시 제22호)

라. 분양현황

구 분	분양대상	분 양 가 능 면 적			조 성 기 간	조성기관
		계	분 양	미 분 양		
계	1,264,784	1,264,784	1,264,784	-	68. 5. 7~76.11.12 89. 1. 6~90. 9.10	성남시
산업시설구역	1,237,839	1,237,839	1,237,839	-	〃	〃
지원시설구역	26,945	26,945	26,945	-	〃	〃

마. 입주현황

구 분	입 주 업 체 수			면 적 (㎡)		
	계	제조업	기 타	계	제조업	기 타
계	426	419	7	1,264,784	1,237,839	26,945
2001. 2월말 현재	426	419	7	1,264,784	1,237,839	26,945
향 후 계 획	-	-	-	-	-	-

바. 입지여건

○ 교통 단지내 도로 18Km(하천 복개도로 1.9Km 포함)

- 판교 · 구리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판교IC(10Km)
- 국도 3번(남해↔성남↔초산) , 지방도 308번(성남↔양평)

○ 용 수 팔당댐을 수원으로 복정상수사업소에서 공업용수 및 생활용수 동시 공급(8,100톤/일)

○ 항공 및 항만 김포공항(50Km), 인천항(64Km)

○ 전력 및 통신 전력(60,000Kw), 통신(1,500회선)

○ 환경기초시설 업체별 개별처리

○ 에너지 공급 대한 도시가스에서 LPG공급

2.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가. 산업단지 관리 계획

1) 기본방향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8조, 제39조 근거에 의하여 공장을 신설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업체를 입주시켜 생산활동을 지원

○ 산업용지는 산업지원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되 부득이한 경우 산업시설구역 중 일부는 산업시설 또는 물류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함

2) 추진방향

○ 공장시설 용도를 업종별(섬유,화학,기계 등)로 세분하여 배치 및 관리
○ 업종별 배치에 맞는 기반시설 설치 및 확충
○ 환경오염 및 공해업소 이전 유도

나. 산업단지 용도별 구획 계획

1) 용도별 구획면적

(단위 ㎡)

총 면 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1,823,121 (100%)	1,237,839 (67.9%)	26,945 (1.5%)	304,671 (16.7%)	253,666 (13.9%)

□ 산업시설구역 세분화

(단위 ㎡)

공장시설	물류시설	지식산업시설	폐 기 물 처리시설	기 타
1,233,881	4,958	-	-	-

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시설구역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나) 지원시설구역

- 산집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동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입주 기업체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부표(건축물의 용도분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운수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다) 공공시설구역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라) 녹지구역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3) 용도별구획평면도 별표#1

다. 업종별 배치 계획

1) 업종별 배치 현황

구 분 / 업종별	배 치 계 획		2001. 2월말 현재		향 후 계 획	
	업체수	면 적(㎡)	업체수	면 적(㎡)	업체수	면 적(㎡)
계	419	1,237,839	419	1,227,839		
조 립 금 속	217	539,498	217	539,498		
섬 유	69	194,040	69	194,040		
석 유 화 학	31	146,623	31	146,623		
음 식 료 품	41	105,989	41	105,989		
출판 , 인쇄	27	78,931	27	78,931		
가구,기타제품	25	139,917	25	139,917		
비 금 속	9	32,841	9	32,841		

라. 입주관리 계획

1) 입주대상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 제조업

○ 창고·보관업 등 물류 관련업

○ 폐기물 처리 시설업
다만, 인근업체 및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입주 제한

2) 입주자격

가) 산업시설구역

- 산집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및 산집법 시행령 제27조 에서 정한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물류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 다만 기존의 물류업을 영위하는 자를 우선하여 입주

나) 지원시설구역

- 산집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으로서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
- 건축법 시행령 별표(건축물의 용도분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전시시설, 운수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3) 입주절차

입주계약신청 → 입주계약 통보 → 공장설립완료신고 → 공장등록통보

마. 사후관리 계획

1) 산업용지관리

- ㅇ 산집법 및 산업단지 관리지침,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사후관리
- ㅇ 기존 입주업체 여건 등을 감안하여 2이상의 시설용도로 복합 이용 가능
- ㅇ 영세기업을 위한 APT형공장 설립 유도

2) 환경관리

- ㅇ 경인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폐수, 대기, 소음,진동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방지시설을 설치
- ㅇ 입주계약 체결시 사전에 환경부와 지자체 환경관련 부서에 문의토록 강구

3) 안전관리

- ㅇ 관리기관은 풍수해 및 기타 재난에 대비하여 사전에 재난대비 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와 재해발생시 복구대책 마련
- ㅇ 민방위 교육훈련시 재난대비 요령 및 복구에 대한 교육 및 실습을 진행 하도록 유도
- ㅇ 풍수해 및 기타 재난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에 관내업체 방문하여 시설보수 등을 보강하도록 권고
- ㅇ 재난 발생시 군부대와 협조하여 예비군동원 복구 지원

바. 입주기업체 지원사업 추진계획

1) 공장설립지원

- ㅇ 공장설립 인·허가 업무대행
- ㅇ 완료신고시 실태조사후 7일이내에 공장등록
- ㅇ 기타 공장용지 및 공장 알선
- ㅇ 유휴공장에 대하여 임대 알선

2) 생산활동지원

- ㅇ 시설설치자금, 운전자금, 기타 환경개선자금 알선 및 추천
- ㅇ 각종 무역박람회 및 상품홍보 해외파견 알선
- ㅇ 기타 산업정보 제공 및 알선
- ㅇ 각종 원가절감에 대한 세미나 개최
- ㅇ 업체별 상품홍보에 대하여 산업지에 게재

3) 근로자 복지후생 지원

- ㅇ 모범근로자 표창으로 근로자 사기진작
- ㅇ 성남시 근로자 장학생 선발 추천
- ㅇ 노사화합을 위한 근로자 체육대회 지원
- ㅇ 근로자의 날 노총 지원

4) 지원시설 설치계획

구 분	시 설 명	배 치 계 획		2001. 2월말 현재		향 후 계 획	
		업체수	면적(㎡)	업체수	면적(㎡)	업체수	면적(㎡)
계		12	30,872	11	27,348	1	3,524
공공 지원 시설	공단본부 (관리공단,우체국,은행)	3	2,935	3	2,935		
	경찰서 및 시설 관리공단	2	9,900	1	9,900		
	소 방 서	1	992	1	992		
생산 활동 지원 시설	자동차 정비 3개사	3	8,518	3	8,518		
	자동차 검사소	1	4,507	1	4,507		
	주 유 소	1	496	1	496		
후생 복지 시설	근로자레저스포츠센터	1	3,524			1	3,524

송탄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1. 지방산업단지 개요

가. 관리기관 평택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

나. 조성목적

○ 수도권내 부적격 공장에 대한 이전용지 제공

○ 무공해 공장 유치

다. 추진경위

- 1987. 5. 4 도시계획결정(일반공업지역):건설부고시 제180호
- 1988. 4. 19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지구 결정(경기도고시 제103호)
- 1988. 5. 28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 송탄시고시 제6호
- 1991. 1. 7 공사준공(송탄시공고 제4호)
- 1991. 7. 31 지방공업단지 지정(경기도고시 제302호)
- 1991. 1. 20 : 송탄공업단지 관리공단 설립인가
- 1992. 10. 15 송탄공업단지관리기본계획 일부변경수립
- 1993. 5. 20 송탄지방공업단지관리기본계획고시(경기도고시 제144호)
- 1996. 2. 6 평택지방산업단지 관리기관 지정(경기도공업55141-19)
- 1999. 1. 29 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수립 개정(경기도고시 제26호)

라. 분양현황

(단위:㎡)

구 분	분양대상	분 양 현 황			조성기간	사업시행자
		합계	분양	미분양		
계	807,492.5	807,492.5	807,492.5	-	88.5.21 ~ 90.12.31	한 국 토지공사
산업시설구역	786,629.4	786,629.4	786,629.4	-		
지원시설구역	20,863.1	20,863.1	20,863.1	-		

마. 입주현황

(단위:㎡)

구 분	입주업체수			면 적(㎡)		
	계	제조업	기타	계	제조업	기타
계	140	121	19	786,629.4	691,896.4	94,733
2001.2월말현재	140	121	19	786,629.4	691,896.4	94,733
향 후 계 획	-	-	-	-	-	-

바. 입지여건

시 설 명	총 계 획	2001년2월말현재	확 충 계 획		
			사업계획	규모	시행기관
도 로	9.3㎞	9.3㎞	-	-	-
용 수	10,000톤/일	10,000톤/일	-	-	-
전 력	50,000㎾	50,000㎾	-	-	-
통 신	3,900회선	3,900회선	-	-	-
환 경	13,000톤/일	13,000톤/일	-	-	-

2. 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가. 관리기본 방향

1) 기본방향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38조, 제39조 근거에 의하여 공장을 신설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업체를 입주시켜 생산활동을 지원

○ 산업용지는 산업시설구역,지원시설구역,공공시설구역,녹지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되, 부득이한 경우 산업시설구역 중 일부는 산업시설 또는 물류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함

2) 추진방향

○ 공장시설용도를 업종별(전자,기계,비금속등)로 세분하여 배치 및 관리

○ 업종별 배치에 맞는 기반시설 설치 및 확충

○ 환경오염 및 공해업소 이전유도

나. 산업단지 용도별 구획

1) 용도별 구획 계획

(단위:㎡)

총 면 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 지 구 역
1,086,289.6 (100%)	786,629.4 (72.4%)	20,863.1 (1.9%)	230,881.5 (21.3%)	47,915.6 (4.4%)

□ 산업시설구역 세부용도

(단위:㎡)

총 면 적	공장 시설	물류 시설	지식산업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기 타
786,629.4	773,892.5	12,736.9	-	-	-

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시설구역

- 공 장 시 설 용 도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사업)
- 지식산업 시설용도 자연과학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광고물 작성업, 패션디자인업등
- 정보통신 산업용도 정보의 수집,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등
- 지원비축 시설용도 석탄, 석유, 원자력, 천연가스등 에너지자원의비축, 저장, 공급등을 위한 시설(사업)
- 폐기물처리시설용도 폐수처리업과 폐기물수집 및 처리업
- 물 류 시 설 용 도 보관 및 창고업, 운송업(여객운송업제외)
- 기 타 시 설 용 도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지역특화산업, 전기업등

나) 지원시설구역 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로서 무제한적인 판매시설은 제외함

다) 공공시설구역 일반공적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도로, 상·하수도, 하천, 공원 등의 시설

라) 녹 지 구 역 녹지 등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및 기타시설

3) 용도별 구획 평면도 생략

다. 업종별 배치 계획

1) 업종별 배치 현황

구분 / 업종별	배치계획		2000.12월말현재		향후계획	
	업체수	면적(㎡)	업체수	면적(㎡)	업체수	면적(㎡)
합 계	140	786,629.4	140	786,629.4	-	-
음 식	7	19,803.1	7	19,803.1	-	-
섬 유	11	45,746	11	45,746	-	-
나 무	9	30,980	9	30,980	-	-
화 학	34	175,032	34	175,032	-	-
비 금 속	7	38,987	7	38,987	-	-
1차 금 속	5	17,990	5	17,990	-	-
기 계	66	445,354.4	66	445,354.4	-	-
물 류	1	12,736.9	1	12,736.9	-	-

2) 업종별 배치 위치도 생략

라. 입주관리계획

1) 입주 대상업종 전제조업

다만, 붙임 입주 제한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조업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지방산업단지 유지관리상 입주심의위원회에서 입주 불가로 결정되는 업체 (1998. 12.31일 이전 입주계약 또는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는 그 업종을 영위할 수 있으나 등록이후 붙임 제한업종으로의 변경은 불가)

2) 입주자격

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제조업체

나) 공장등록을 필한 공장을 양수하거나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일부를 임차하는 경우 또는 경매 등에 의거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취득하는 경우, 법 제39조, 제41조,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에 양도 또는 환수된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재분양 하는 경우에는 공장등록증이 없는 자 및 수도권이외에서 이전코자하는 업체에게도 입주를 허용

다) 법 시행령 제48조의 2 규정에 의한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3) 입주 우선순위

1순위 신도시 건설사업 등 공공사업 시행으로 이전하는 공장중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200㎡이상의 공장으로서 사업시행자의 추천을 받은 경우

2순위 이전적지를 한국토지공사 또는 주택건설 등록(지정)업자에게 매각하고 이전하는 자가 등록공장

3순위 임차공장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18조에 의하여 이전명령을 받은 등록공장

4순위 자가공장으로서 기존공장을 폐쇄하고 이전하는 공장(무등록공장포함)

5순위 기존 공장을(임차공장포함) 폐쇄하고 이전하는 무등록 공장

6순위 수출기업의 분공장(3년간 평균 수출실적이 500만불 이상인 공장)

7순위 1순위 내지 6순위 이외의 공장

마. 사후관리계획

입주계약의 체결, 해지 또는 공장설립의 완료와 그 이후의 모든 업무에 관하여는 본 관리기본계획 및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의거 업무처리 및 관리

바. 입주기업체 지원사업 추진계획

1) 기본방향

가) 입주기업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공지원시설 및 생산활동, 후생복지 시설인 파출소, 소방파출소, 우체국, 전화국, 오·폐수처리장, 금융, 보험, 정비업, 주차장, 판매점 등의 시설이 입주토록 허용

나) 입주업체의 생산활동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 향상도모

2) 기능별 지원시설계획

유형별시설	기 능 별	규모	시기	비 고
공공지원 시 설	소방파출소,전화국, 관리기관,우체국, 오폐수종말처리장등	각 1 개소씩	기 입주	
	파출소,금융,보험등	각 1 개소씩	2001~2003	
생산활동 지원시설	자 동 차 정 비	2 개소	기 설치	
	주 차 장	1 개소	2001~2003	
후생복지 지원 시설	복 지 관	1 개소	2001~2003	
	판매, 기타근린	7 개소	기 설치	
	후생, 기타근린	3 개소	2001~2003	

사. 기타 산업단지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지원시설 운영계획

○ 생산수출 지원사업

- 정보교류, 기술개발, 수출시장 진출협력
- 선진기술도입 추진, 경영상담실 운영

○ 고용인력 확보

취업알선 창구운영과 구인구직자 만남의날 운영

나) 산업단지 관리사업

○ 공동경비 충당사업 추진

○ 지방산업단지 환경정비

- 간선도로정비 및 가로수 조경관리
-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 기본관리
- 환경청소관리

○ 노사대책

- 노사 전진대회를 통한 노사화합
- 생산성 배가 촉진대회를 통한 공장 새마을운동 활성화
- 품질관리 분임조 운영을 통한 품질향상
- 산업체간 근로자 친목을 위한 체육대회
- 불우 근로자돕기 등

○ 근로자 후생복지사업

- 근로자 고충상담소 운영및 취미교실 운영
- 부녀근로자를 위한 유아, 탁아소 운영
-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운영

입 주 제 한 업 종

분류번호	용수 다소비 업종	분류번호	입주 부적격 업종
17401	솜 및 실 염색가공업	15111	도축업
17402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 가공업	15311	곡물 도정업
17403	날염가공업	15312	곡물 제분업
17404	섬유사 및 직물호부처리업	23210	원유정제처리업
17409	기타섬유 염색 및 정리업	23221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18201	원모피 가공처리업	23229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19101	원피 가공업	23300	핵연료 가공업
20212	강화 및 재생목재 제조업	26311	시멘트 제조업
21110	펄프 제조업	26312	석회 제조업
21129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26313	프라스터 제조업
21121	신문용지 제조업	26321	비내화 모르타르 제조업
21122	인쇄 및 필기용지 제조업	26322	레미콘 제조업
21123	크라프트지 및 상자용 판지 제조업	26325	콘크리트 타일,기와,벽돌 및
21129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블록 제조업
		26326	콘크리트관 및 조립구조재 제조업
		26911	석재 성형 가공품 제조업
		26921	아스콘 제조업
		26922	아스팔트성형제품 제조업
		26992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26994	탄소섬유 및 기타 탄소제품 제조업
		27111	제철 및 제강업
		27112	합금철 제조업
		27119	기타 제철 및 제강업

평택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1. 지방산업단지 개요

가. 관리기관 평택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

나. 조성목적

○ 개발유도 권역의 동부남부지역을 개발하여 내륙형 경공업 및 유통산업과 지역서비스 기능을 부여

○ 수도권내 중소기업 이전 및 시 전역에 산재한 공장을 집단화 배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 재정 확충에 기여

다. 추진경위

- 1986. 7. 15. 수도권개발유도권역개발계획고시(건설부고시 제306호)
- 1989. 8. 12. 일단의공업지역지정(건설부고시 제471호)
- 1990. 1. 5. 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결정및승인(경기도고시 제2호)
- 1990. 8. 16. 공업단지조성사업실시계획승인신청
- 1990. 9. 29. 평택공단분양공고(평택시공영 제10호)
- 1990. 12. 29. 실시계획승인(경기도고시 제193호)
- 1991. 11. 30. 평택공업단지(지방공단)고시(경기도고시 제455호)
- 1992. 1. 16. 평택공업단지관리기본계획승인(공업28012-189)
- 1994. 6. 20. 지방공업단지관리기본계획개정(경기도고시 제166호)
- 1996. 2. 6. 평택지방산업단지관리지정(경기도 공업55141-19)
- 1999. 1. 26. 지방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개정(경기도고시 제26호)

라. 분양현황

(단위:㎡)

구 분	분양대상	분 양 현 황			조성기간	사업시행자
		합계	분양	미분양		
계	407,495.7	407,495.7	395,910.2	11,585.5	90. 1. 5 ~ 93.12.31	평택시
산업시설구역	394,350.3	394,350.3	394,350.3	-		-
지원시설구역	13,145.4	13,145.4	1,559.9	11,585.5		-

마. 입주현황

(단위:㎡)

구 분	입주업체수			면 적(㎡)		
	계	제조업	기타	계	제조업	기타
계	57	55	2	394350.3	385,635.1	8,715.2
2001.2월말현재	57	55	2	394350.3	385,635.1	8,715.2
향 후 계 획	-	-	-	-	-	-

바. 입지여건

시 설 명	총 계 획	2001년2월말현재	확 충 계 획		
			사업계획	규모	시행기관
도 로	5㎞	5㎞	-	-	-
용 수	6,500톤/일	6,500톤/일	-	-	-
전 력	16,000㎾	16,000㎾	-	-	-
통 신	1,200회선	1,200회선	-	-	-
하수도시설	13㎞	13㎞	-	-	-

2. 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가. 관리기본 방향

1) 기본방향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 "산집법" 이라함) 제38조,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신설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업체를 입주시켜 생산활동을 지원

○ 산업용지는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되, 부득이한 경우 산업시설구역 중 일부는 산업시설 또는 물류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함.

2) 추진방향

○ 공장시설용도를 업종별(전자,기계,비금속등)로 세분하여 배치 및 관리

○ 업종별 배치에 맞는 기반시설 설치 및 확충

○ 환경오염 및 공해업소 이전유도

나. 산업단지 용도별 구획

1) 용도별 구획 계획

(단위:㎡)

총 면 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 지 구 역
534,798.2 (100%)	394,350.3 (73.7%)	13,145.4 (2.5%)	82,535.1 (15.4%)	44,767.4 (8.4%)

□ 산업시설구역 세부용도

(단위:㎡)

총 면 적	공장시설	물류시설	지식산업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기 타
394,350.3	394,350.3	-	-	-	-

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시설구역

- 공장시설용도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사업)
- 지식산업시설용도 자연과학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광고물작성업, 패션디자인업등
- 정보통신산업시설용도 정보의 수집,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등
- 지원비축시설용도 석탄, 석유, 원자력, 천연가스등 에너지자원의비축, 저장, 공급등을 위한 시설(사업)
- 폐기물처리시설용도 폐수처리업과 폐기물수집 및 처리업
- 물 류 시 설 용 도 보관 및 창고업, 운송업(여객운송업제외)
- 기 타 시 설 용 도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지역특화산업, 전기업등

나) 지원시설구역 산집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로서 무제한적인 판매시설은 제외함

다) 공공시설구역 일반 공적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도로, 상·하수도 하천, 공원 등의 시설

라) 녹 지 구 역 녹지 등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및 기타시설

3) 용도별 구획 평면도 생략

다. 업종별 배치 계획

1) 업종별 배치 현황

구 분 / 업종별	배치계획		2000.12월말현재		향후계획	
	업체수	면적(㎡)	업체수	면적(㎡)	업체수	면적(㎡)
합 계	57	394,350.3	57	394,350.3	-	-
음 식	2	10,247.3	2	10,247.3	-	-
섬 유	1	1,653.1	1	1,653.1	-	-
나 무	3	35,688.6	3	35,688.6	-	-
화 학	14	110,726.2	14	110,726.2	-	-
비 금 속	2	28,772.9	2	28,772.9	-	-
1차 금 속	3	20,474.4	3	20,474.4	-	-
기 계	32	186,787.8	32	186,787.8	-	-

2) 업종별 배치 위치도 생략

라. 입주관리계획

1) 입주대상업종 전제조업

다만, 붙임 입주 제한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조업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지방산업단지 유지관리상 입주심의위원회에서 입주 불가로 결정되는 업체 (1998. 12.31일 이전 입주계약 또는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는 그 업종을 영위할 수 있으나 등록이후 붙임 제한업종으로의 변경은 불가)

2) 입주자격

가) 산집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제조업체

나) 공장등록을 필한 공장을 양수하거나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일부를 임차하는 경우 또는 경매 등에 의거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취득하는 경우, 산집법 제39조, 제41조,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에 양도 또는 환수된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재분양 하는 경우에는 공장등록증이 없는 자 및 수도권이외에서 이전코자하는 업체에게도 입주를 허용

다) 산집법 시행령 제48조의 2 규정에 의한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3) 입주 우선순위

1순위 신도시 건설사업 등 공공사업 시행으로 이전하는 공장중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200㎡이상의 공장으로서 사업시행자의 추천을 받은 경우

2순위 이전적지를 한국토지공사 또는 주택건설 등록(지정)업자에게 매각하고 이전하는 자가 등록공장

3순위 임차공장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제18조에 의하여 이전명령을 받은 등록공장

4순위 자가공장으로서 기존공장을 폐쇄하고 이전하는 공장(무등록공장포함)

5순위 기존 공장을(임차공장포함) 폐쇄하고 이전하는 무등록 공장

6순위 수출기업의 분공장(3년간. 평균 수출실적이 500만불 이상인 공장)

7순위 1순위 내지 6순위 이외의 공장

마. 사후관리계획

입주계약의 체결, 해지 또는 공장설립의 완료와 그 이후의 모든 업무에 관하여는 본 관리기본계획 및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의거 업무처리 및 관리

바. 입주기업체 지원사업 추진계획

1) 기본방향

가) 입주기업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공지원시설 및 생산활동, 후생복지 시설인 파출소, 소방파출소, 우체국, 전화국, 오폐수처리장, 금융, 보험, 정비업, 주차장, 판매점 등의 시설이 입주토록 허용

나) 입주업체의 생산활동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 향상도모

2) 기능별 지원시설계획

유형별시설	기 능 별	규모	시기	비 고
공공지원시설	소방파출소,전화국, 관리기관,우체국,	각 1 개소씩	기 입주	
	파출소,금융,보험등	각 1 개소씩	2001~2003	
생 산 활 동 지 원 시 설	자 동 차 정 비	2 개소	기 설치	
	주 차 장	1 개소	2001~2003	
후 생 복 지 지 원 시 설	복 지 관	1 개소	2001~2003	
	판매, 기타근린	7 개소	기 설치	
	후생, 기타근린	3 개소	2001~2003	

사. 기타 산업단지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지원시설 운영계획

○ 생산수출 지원사업
- 정보교류, 기술개발, 수출시장 진출협력
- 선진기술도입 추진, 경영상담실 운영

○ 고용인력 확보
취업알선 창구운영과 구인구직자 만남의날 운영

나) 산업단지 관리사업

○ 공동경비 충당사업 추진

○ 지방산업단지 환경정비
- 간선도로정비 및 가로수 조경관리
-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 기본관리
- 환경청소관리

○ 노사대책
- 노사 전진대회를 통한 노사화합
- 생산성 배가 촉진대회를 통한 공장 새마을운동 활성화
- 품질관리 분임조 운영을 통한 품질향상
- 산업체간 근로자 친목을 위한 체육대회
- 불우 근로자 돕기 등

○ 근로자 후생복지사업
- 근로자 고충상담소 운영및 취미교실 운영
- 부녀근로자를 위한 유아, 탁아소 운영
-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운영

입 주 제 한 업 종

분류번호	용수 다소비 업종	분류번호	입주 부적격 업종
17401	솜 및 실 염색가공업	15111	도축업
17402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 가공업	15311	곡물 도정업
17403	날염가공업	15312	곡물 제분업
17404	섬유사 및 직물호부처리업	23210	원유정제처리업
17409	기타섬유 염색 및 정리업	23221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18201	원모피 가공처리업	23229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19101	원피 가공업	23300	핵연료 가공업
20212	강화 및 재생목재 제조업	26311	시멘트 제조업
21110	펄프 제조업	26312	석회 제조업
21129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26313	프라스터 제조업
21121	신문용지 제조업	26321	비내화 모르타르 제조업
21122	인쇄 및 필기용지 제조업	26322	레미콘 제조업
21123	크라프트지 및 상자용 판지 제조업	26325	콘크리트 타일,기와,벽돌 및
21129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블록 제조업
		26326	콘크리트관 및 조립구조재 제조업
		26911	석재 성형 가공품 제조업
		26921	아스콘 제조업
		26922	아스팔트성형제품 제조업
		26992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26994	탄소섬유 및 기타 탄소제품 제조업
		27111	제철 및 제강업
		27112	합금철 제조업
		27119	기타 제철 및 제강업

향남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1. 산업단지 개요

가. 관리기관 화 성 시

나. 조성목적

○ 수도권내 이전대상 제약업체에 대한 이전용지 제공

○ 제약전문 단지조성으로 협동화사업 추진

다. 추진경위

○ 1979. 11. 26 지방공업개발장려지구 지정(지방공업개발법 제2조)

○ 1979. 12. 14 아산산업기지개발촉진지구 지정(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5조)

○ 1980. 10. 29 지방공업개발 장려지구 기본계획승인
(지방공업개발법 제4조 및 동시행령 제7조)

○ 1981. 5. 2 산업기지개발사업 실시 계획승인

○ 1985. 5. 14 건설부공고 제46호로 향남제약 공업단지 조성 준공 인가

○ 1990. 12. 27 향남제약단지 지방공업단지 지정 고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부칙 제4조)

라. 분양현황

(단위 ㎡)

구 분	분양대상	분 양 현 황			조성기간	사업시행자
		합계	분양	미분양		
계	464,251	464,251	464,251			
산업시설구역	464,251	464,251	464,251		'81~'85	한국약품공업 협동조합
지원시설구역	-	-	-	-		

마. 입주현황

구 분	입 주 업 체 수			면 적(㎡)		
	계	제조업	기타	계	제조업	기타
계	39	39	-	464,251	464,251	-
2001.2월말 현재	39	39	-	464,251	464,251	-
향 후 계 획	-	-	-	-	-	-

바. 입지여건

○ 도 로

· 서해안고속도로 발안 IC (5km), 경부고속도로 오산IC(24km)

국도 39호선 인접, 지방도 302호선, 철도 경부선 오산역 (24km)

항만 평택항 20km

○ 용 수 산업단지관리사무소에서 지하수 2개공을 공업용수 및 생활용수 동시공급

○ 전 력 인입경로 서서울전력소→오산변전소→단지변전소→입주업체, 공급능력 전압154KV, 용량118,270KW

○ 통 신 발안전화국에서 2,700회선공급

○ 환 경 2,900톤 / 일

2.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가. 기본방향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 "산집법" 이라함) 제38조, 제39조 근거에 의하여 공장을 신설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업체를 입주시켜 생산활동을 지원

○ 산업용지는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되, 제약단지로 특별관리 하고자 함.

○ 공장시설 용도를 업종별(의약 및 관련업종)로 세분하여 배치 및 관리

나. 산업단지 용도별 구획 계획

1) 용도별 구획 면적

(단위:㎡)

총면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648,214 (100%)	464,251 (72%)	- (%)	104,370 (16%)	79,593 (12%)

□ 산업시설구역 세부용도

(단위:㎡)

계	공장시설	물류시설	지식산업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기 타
464,251	464,251	-	-	-	-

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시설구역

산집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공장의 부대시설

나) 지원시설구역 해 당 없 음

다) 공공시설구역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구역

라) 녹 지 구 역 · 녹지구역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 용도별 구획 평면도 : 생략

다. 업종별 배치계획

○ 업종별 배치현황

구분 / 업종별	배치계획		2000.12월말 현재		향후계획	
	업체수	면적(㎡)	업체수	면적(㎡)	업체수	면적(㎡)
합 계	39	464,251	39	464,251		
의약제제품 제 조 업	39	464.251	39	464,251		

라. 입주관리계획

1) 입주 대상업종　의약제 제조업종 및 식품관련 제조업종 (별첨)

※ 단, 의약제 관련업종 및 건강보조식품의 업종이어야 함.

2) 입주자격　산집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입주 자격을 갖춘 자로서 대한약품공업협동조합원중 등록된 중소기업체

3) 입주 우선순위　입주계약 선착순

4) 입주절차　입주계약신청 → 입주계약통보 → 공장설립완료신고 → 공장등록통보

마. 사후관리계획

1) 산업용지 관리

○ 산집법 및 산업단지관리 지침, 입주관리요령에 의거 사후관리

○ 기존 입주업체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2이상의 시설용도로 복합이용 가능

2) 환경관리

○ 경인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폐수, 대기, 소음·진동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방지시설의 설치

○ 입주계약 체결시 사전에 환경부 및 지자체 환경관련 부서에 문의토록 강구

3) 안전관리

○ 관리기관은 풍수해 및 기타 재난에 대비한여 사전에 재난대비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와 재해발생시 복구대책 마련

○ 민방위 교육훈련시 재난대비요령 및 복구에 대한 교육 및 실습을 진행하도록 유도

○ 풍수해 및 기타 재난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에 관내업체를 방문하여 시설보수 등을 보강하도록 권고

바. 입주기업체 지원사업 추진계획

1) 공장설립지원

○ 공장설립 인·허가업무대행

○ 완료 신고시 실태조사 후 7일이내 공장등록

○ 기타 공장용지 및 공장임대, 알선

2) 생산활동지원

○ 시설설치자금, 운전자금, 기타 환경개선자금 알선 및 추천

○ 각종 무역박람회 및 상품홍보 해외파견 알선

○ 기타 산업정보 제공 및 알선

○ 각종 원가절감에 대한 세미나 및 기업인협의회 개최

○ 업체별 제품홍보 및 전시

3) 근로자 복지후생지원

○ 모범근로자 표창으로 근로자 사기진작

○ 노사화합을 위한 근로자 체육대회 지원

○ 근로자의날 노총지원

4) 지원시설 설치계획

○ 해 당 없 음

입 주 업 종

의약제 관련업종		식품 관련업종	
분류번호	업 종	분류번호	업 종
24129	기타기초화합물	15492	차류 가공업
24211	의약용화합물 및 항생물질	15131	과실및채소주스제조업
24212	생물학적제재	15495	인삼식품제조업
24221	의약용약제품	15497	건강보조용액화식품제조업
24222	한의약 제조	15549	기타비알콜성음료제조업
24223	동물약품 제조	15499	그외기타식료품제조업
24230	의료용및기타의학관련제품	15451	천연및혼합조제조미료제조업
24311	가정용살균및살충제	15453	식초및합성조미료제조업
24332	치약, 비누및기타세제	15454	식품첨가물제조업
24333	화장품	15493	수프및균질화식품제조업
24334	표면광택제및실내가향제		
24393	접착제및젤라틴		
24399	그외 기타분류안된 화학제품		

반월도금 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1. 산업단지 개요

가. 관리기관 안산시

나. 조 성 목 적

○ 수도권 이전대상 도금업체의 협동화단지

○ 국내도금산업의 기술향상과 경쟁력강화 도모

다. 추 진 경 위

○ 1977. 3. 28 도시계획법상 공업지역지정(건설부고시 제53호)

○ 1988. 2. 16 공업단지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공단 지정
(대통령령 제12398호 관보 제10861호 게재)

○ 1989. 9. 4 기본관리계획 수립지시(상공부 →시)

○ 1990. 4. 30 공업단지 면적고시 및 기본관리계획 승인요청

○ 1990. 5. 10 " 보완지시

○ 1990. 5. 15 공업단지 면적고시 및 기본관리계획 보완제출
※ 지원시설구역 및 녹지구역 면적 확보

○ 1992.12. 17 반월도금 공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시달

○ 1993. 5. 20 지방공업단지 관리기본계획고시 (경기도 고시 제144호)

○ 2000. 8. 11 반월도금 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개정고시
(경기도 고시 제2000-205호)

라. 분 양 현 황

(단위 m²)

구 분	총면적	분양가능면적					조성기간	조성기관
		합 계	분 양	미 분 양				
			조 성	소 계	조 성	미조성		
계	136,829	118,193	118,193	-	-	-	'79 ~ '87	안산시
산업시설구역	116,851	116,851	116,851	-	-	-		
지원시설구역	1,342	1,342	1,342	-	-	-		
공공시설구역	18,636	-	-	-	-	-		
녹 지 구 역	-	-	-	-	-	-		

마. 입 주 현 황

구 분	입 주 업 체 수			면 적 (㎡)		
	계	제 조 업	기 타	계	제 조 업	기 타
합 계	59	59	-	116,851	116,851	-
2001년2월 현재	59	59	-	116,851	116,851	-
향 후 계 획	-	-	-	-	-	-

바. 입 지 여 건

시 설 명	2001년 2월 현재
도 로	신갈·안산고속도로 안산IC(4㎞) 서해안고속도로 매송IC(1.2㎞)이용(서울42㎞,수원15㎞) 국도42번 (인천↔안산↔동해)
철 도	서울지하철 4호선(사당↔안산) 상록수역(5㎞)이용
항 공	김포공항 (40㎞)이용
오·폐수	공동폐수처리장에서 처리 (처리능력 :600톤/일)
통 신	안산전화국 154회선 공급
전 력	인입경로 : 서서울전력소 →안산변전소 →입주업체 공급능력 : 전압154㎾, 용량 45MVA

2.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가. 산업단지 관리기본방향

○ 산업단지 지정 이전에 입주하여 공업 관련법에 위반되는 입주업체 (임대기준, 양도동의 등)는 적정조치

○ 공업배치의 계열, 집단, 전문화로 집적이익의 창출

○ 지방산업 육성발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나. 산업단지 용도별 구획계획

1) 용도별 구획면적

(단위 ㎡)

총 면 적	산 업 시설지구	지 원 시설지구	공 공 시설지구	녹 지 시설지구	비 고
136,829 (100%)	116,851 (85%)	1,342 (2%)	18,636 (13%)	-	

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시설구역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산집법"이라 한다)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공장의 부대시설

나) 지원시설구역

산집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동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입주 기업체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다) 공공시설구역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라) 녹 지 구 역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3) 용도별구획 평면도 생략

다. 업종별 공장배치 계획

1) 업종별 배치계획

(단위 ㎡, 개사)

업 종	업 체 수	면 적	비 고
합 계	59	116,851	
식 품	1	49,864	
조 립금속·기타	58	66,987	
전기 및 전자기기	-	-	
기 계	-	-	

※ 업체수는 입주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업종별 배치기준

업종별 연계성을 고려하여 계열화가 가능하도록 인접배치

※ 한국표준분류상 동일 또는 유사업종별로 공업배치를 기준

3) 업종별배치 평면도 생략

라. 입주관리계획

1) 입주대상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 제조업

(단, 관리기관은 용수 및 용지 다소비 업종, 인근업체에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

※ 도금, 조립금속, 석유화학, 첨단업종을 우선 유치 및 도금업종배치에 도금업 활성화를 위하여 전기, 전자 부품생산 부분임대 제조업 입주허용
첨단업종이라 함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업종(제15조 별표5)

2) 입주자격

○ 산업시설구역

- 산집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및 산집법 시행령 제27조에서 정한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자

○ 지원시설구역

- 산집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으로서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
- 건축법시행령 별표(건축물의 용도분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전시시설 등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3) 입주 우선순위

가) 도금업관련 유사업종

나)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공해가 적은 업종

다) 수입대체 효과가 크고 미래 유망업종

4) 입주제한업종

분류번호	업 종 명	분류번호	업 종 명
15111	도축업	26921	아스콘 제조업
18201	원모피 가공처리업	27119	달리분류되지않은 제철 및 제강
20101	일반제재업	36129	기타 목재가구 제조업
23221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37100	재생용 금속가공원료 생산업
26311	시멘트 제조업	37200	재생용 비금속가공원료 생산업
26322	레미콘 제조업	63209	기타 창고업
26911	석재성형 가공품 제조업		

마. 사후관리 계획

1) 산업용지 관리

- 산집법과 산업단지관리지침 및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사후관리
- 임대기준에 부적합한 입주업체는 임대기간 만료시 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치관리
- 공장 이전적지의 입지가 발생할 경우 관련법에 적합하도록 관리
- 기타 입주자격을 갖춘 업체라도 인근업체 및 주민에 피해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입주를 제한

2) 환경관리

- 산업단지내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는 적정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
- 경인지방환경관리청 등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입주업체 심사시 부적합한 업체의 입주 사전 방지

3) 안전관리

- 관리기관은 풍수해 및 기타 재난에 대비하여 사전에 재난대비 계획을 수립하여 재해 발생시 복구대책 마련
- 입주업체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교육

바. 입주업체 지원사업 추진계획

1) 기본방향

가) 입주기업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나) 단지내 근로자의 생산활동 및 복지향상 도모

2) 지원시설 설치계획

가) 공동폐수처리장 설치 600톤/일(처리방법 활성오니법)

나) 복지회관건립 계획

- ┌ 위치 팔곡2동 49-2
- ├ 면적 1,342㎡
- └ 용도 식당, 휴게실, 강당, 주차장등

다) 산업 폐기물 처리계획 2.5톤/일(울산환경매립장에 전량 위탁처리)

라) 공업용수 공급계획 생활용수를 공업용수로 대체사용 및 자체 지하수개발사용

마) 인력수급계획

인력수급은 회사 자체에서 수급하되 인력 부족시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지원강화

문발 I 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1. 산업단지 개요

가. 관리기관 파주시

나. 조성목적

○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의 균형개발 도모

○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는 공장의 집단화

○ 건전한 유망 중소기업 육성을 통하여 지역의 생산성과 고용증대

다. 추진경위

- '90. 2.22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 '91. 5.23 국토이용계획 변경(산림보전지역⇒개발촉진지역)
- '91.12.10 지방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 기본계획 승인
- '91.12.31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 '92. 1.28 분양공고
- '92. 8.16 공사착공
- '94.12. 8 준공인가
- '00. 1.14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 '00. 8. 1 관리기본계획 변경(경기도고시 제10호)

라. 분 양 현 황

(단위 ㎡)

총 면 적	분 양 가 능 면 적			조성 기간	사업시행자
	합 계	분 양	미분양		
50,302.4	30,252.2	30,252.2	-	'91~'94	파주시

마. 입 주 현 황

구 분	입주업체수			면 적(㎡)		
	계	제조업	기타	계	제조업	기타
합 계	11	11	-	30,252.2	30,252.2	-
2001. 2월말 현재	11	11	-	30,252.2	30,252.2	-
향 후 계 획	-	-	-	-	-	-

바. 입 지 여 건

시설명	총계획	2001.2월말 현재	향후 확충계획		
			사업기간	규 모	시행기관
도 로	4,520㎡	4,520㎡	-	-	-
용 수	400톤/일	400톤/일	-	-	-
전 력	1,490㎾	1,490㎾	-	-	-
통 신	129회선	129회선	-	-	-

2.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가. 기본방향

수도권 중소기업 이전을 수용하여 지원시설 및 공공시설의 설치·운영 등을 통해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고 공단용지를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으로 관리함.

나. 산업단지 용도별 구획 계획

1) 용도별 구획 면적

(단위 ㎡)

총 면 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 지 구 역
50,302.4 (100%)	30,252.2 (60.2%)	358 (0.7%)	7,121.7 (14.2%)	12,570.5 (25%)

□ 산업시설구역 세부용도

(단위 ㎡)

공장시설	물류시설	지식산업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기 타
30,252.2	-	-	-	-

2) 용도별 구획 평면도 생략

다. 업종별 배치계획

1) 업종별 배치현황

구 분	배치계획		2001. 2월말 현재		향후계획	
	업체수	면적(㎡)	업체수	면적(㎡)	업체수	면적(㎡)
합 계	11	30,252.2	11	30,252.2	-	-

2) 입주업체 위치도 생략

라. 입주관리계획

1) 입주대상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 제조업

※ 다만, 관리기관은 용수 다소비업종, 용지 과다소요업종 등 산업단지 입주 부적격 업종에 대하여 미리 그 업종을 공고한 후 입주를 제외할 수 있음.

2) 입주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 "산집법" 이라함)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업체 다만, 산집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이 아닌 공장 및 공업용수 다소비업종에 대하여는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

마. 사후관리계획

산집법, 지방산업단지 입주관리 요령에 의거 관리

바. 입주기업체 지원시설

1) 기본방향

가) 지원시설구역은 파주시가 개발·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 입주업체의 생산활동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 향상 도모

2) 시설의 설치

가) 공업용수 시설

- ㅇ 용 량 400톤/일
- ㅇ 시행기관 파주시
- ㅇ 완공시기 '94.12

나) 전력시설

ㅇ 용　　량　1,490㎾

ㅇ 시행기관　한국전력공사

다) 통신시설

ㅇ 회 선 수　192회선

ㅇ 시행기관　한국통신공사

라) 도로시설

ㅇ 연　　장　392m, 폭　12m

ㅇ 시행기관　파주시

마) 오·폐수처리시설

ㅇ 용　　량　Q=370㎥/일

ㅇ 시행기관　파주시

입 주 제 한 업 종

분류번호	업 종 명	분류번호	업 종 명
15311, 15312	곡물도정 및 제분업	17401	솜 및 실 염색 가공업
15111	도축업	17402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 가공업
23100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업	17403	나염 가공업
26311	시멘트 제조업	17409	기타 섬유염색 및 정리업
26322	레미콘 제조업	19101	원피 가공업
26326	콘크리트관 및 조립구조재 제조업	18201	원모피 가공처리업
26325	콘크리트타일,기와,벽돌 및 블록제조업	21110	펄프 제조업
26921	아스콘 제조업	21121	신문용지 제조업
26922	아스팔트 성형제품 제조업	21122	인쇄 및 필기용지 제조업
21129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21123	크리프크지 및 상자용 판지 제조업
		20212	강화 및 재생목재 제조업
		21129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문발Ⅱ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1. 산업단지 개요

가. 관리기관 파주시

나. 조성목적

○ 수도권정비계획상 과밀억제권역의 이전공장 유치로 지방재정 자립도 향상 및 소득원 개발

○ 파주시내 무질서하게 난립된 조건부등록(이전) 공장의 유치로 도시환경 보전 및 집적이익 추구

○ 지역내 유휴노동력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주민소득 증대 기여

다. 추진경위

- '93. 8.14 군사시설보호법 협의
- '95. 2. 9 지방산업단지 지구지정
- '95. 3. 2 환경영향평가 기초안 협의
- '95. 8.26 지방산업단지 지정 변경고시
- '95.11. 4 실시계획 승인
- '95.12.28 입주업체 선정 및 분양
- '95.12.30 공사착공
- '96. 2.29 분양공고
- '96. 4.22 : 분양
- '96. 8.16 재분양 공고(1개업체)
- '96.11.27 분양완료
- '98. 5.18 문발2지방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승인
- '00. 8. 1 관리기본계획 변경(경기도고시 제10호)

  ※ 업종변경

라. 분 양 현 황

(단위 ㎡)

총 면 적	분 양 가 능 면 적			조성 기간	사업시행자
	합 계	분 양	미분양		
205,724.4	163,414	163,414	-	'95~'98	파주시

마. 입 주 현 황

구 분	입 주 업 체 수			면 적(㎡)		
	계	제조업	기타	계	제조업	기타
합 계	13	13	-	163,414	163,414	-
2001. 2월말 현재	13	13	-	163,414	163,414	-
향 후 계 획	-	-	-	-	-	-

바. 입 지 여 건

시 설 명	총 계 획	2001.2월말 현재	향후 확충계획		
			사업기간	규 모	시행기관
도 로	18,804㎡	18,804㎡	-	-	-
용 수	1,951톤/일	1,951톤/일	-	-	-
전 력	2,503KVA	2,503KVA	-	-	-
통 신	302회선	302회선	-	-	-

2.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가. 기본방향

수도권 중소기업 이전을 수용하여 지원시설 및 공공시설의 설치·운영 등을 통해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고 공단용지를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으로 관리함.

나. 산업단지 용도별 구획 계획

1) 용도별 구획 면적

(단위 ㎡)

총 면 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 지 구 역
205,724.4 (100%)	163,414 (79.4%)	3,777.4 (1.8%)	26,426.9 (12.9%)	12,106.1 (5.9%)

□ 산업시설구역 세부용도

(단위 ㎡)

공장시설	물류시설	지식산업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기 타
163,414	-	-	-	-

2) 용도별 구획 평면도 생략

다. 업종별 배치계획

1) 업종별 배치현황

구분 / 업종별	배치계획		2001. 2월말 현재		향후계획	
	업체수	면적(㎡)	업체수	면적(㎡)	업체수	면적(㎡)
합 계	13	163,414	13	163,414	-	-

2) 입주업체 위치도 생략

라. 입주관리계획

1) 입주대상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 제조업

※ 다만, 관리기관은 용수 다소비업종, 용지 과다소요업종 등 산업단지 입주 부적격 업종에 대하여 미리 그 업종을 공고한 후 입주를 제외할 수 있음

2) 입주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이하 "산집법" 이라함)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업체. 다만, 산집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이 아닌 공장 및 공업용수 다소비업종에 대하여는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

3) 입주 우선 순위

- 1순위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협동화사업 실천계획승인을 받은 공장
- 2순위 과밀억제지역에서 공공사업시행 및 도시정비를 위해 이전이 불가피한 공장
- 3순위 파주시내 조건부로 등록된 공장으로 기존공장을 폐쇄하고 이전하고자 하는 공장
- 4순위 파주시내 무등록공장으로 기존공장을 폐쇄하고 이전하고자 하는 공장
- 5순위 수도권내 과밀억제지역에서 조건부로 등록한 공장으로서 이전하고자 하는 공장
- 6순위 기타 입주자격을 갖추고 입주를 희망하는 공장

○ 경합시 우선순위

구 분	비공업지역	공업지역
파 주 시 내	1순위	2순위
과밀억제권역	3순위	4순위
기 타 지 역	5순위	6순위

마. 사후관리계획

○ 산집법, 지방산업단지관리지침과 문발 2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의거 관리

바. 입주기업체 지원시설

1) 기본방향

가) 지원시설구역은 파주시가 개발·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 입주업체의 생산활동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 향상 도모

2) 시설의 설치

가) 공업용수 시설

ㅇ 용 량 1,951톤/일

ㅇ 시행기관 파주시

나) 전력시설

ㅇ 용 량 2,503KVA

ㅇ 시행기관 한국전력공사

다) 통신시설

ㅇ 회 선 수 302회선

ㅇ 시행기관 한국통신공사

라) 도로시설

구 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계			5	1508	18804	
중로	2류	15	1	599	9054	
중로	3류	12	1	635	7711	
중로	3류	12	1	59.5	720	
소로	3류	6	1	60.5	391	
소로	3류	6	1	154	928	

마) 오·폐수처리시설

ㅇ 용 량 Q=1,658㎥/일

ㅇ 시행기관 파주시

입 주 제 한 업 종

분류번호	업 종 명	분류번호	업 종 명
15311, 15312	곡물도정 및 제분업	17401	솜 및 실 염색 가공업
15111	도축업	17402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 가공업
23100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업	17403	나염 가공업
26311	시멘트 제조업	17409	기타 섬유염색 및 정리업
26322	레미콘 제조업	19101	원피 가공업
26326	콘크리트관 및 조립구조재 제조업	18201	원모피 가공처리업
26325	콘크리트타일,기와,벽돌 및 블록제조업	21110	펄프 제조업
26921	아스콘 제조업	21121	신문용지 제조업
26922	아스팔트 성형제품 제조업	21122	인쇄 및 필기용지 제조업
21129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21123	크리프크지 및 상자용 판지 제조업
		20212	강화 및 재생목재 제조업
		21129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금파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1. 산업단지 개요

가. 관리기관 파주시

나. 조성목적

○ 낙후된 파평면 지역의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의 균형발전 도모

○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지역경제 자립기반 강화

○ 유휴 노동력 이용 및 고용창출을 통해 지역주민 소득향상 기여

다. 추진경위

- '98. 5.18 공업용지물량 공급확정(건설교통부 수도권58200-101호)
- '99. 4.24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
- '99.10. 9 환경성 검토 의뢰 (환평 67150-961호)
- '99.10.29 금파지방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경기도고시 제391호)
- '99.12.17 금파지방산업단지 시행자 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승인 (경기도고시 제472호)
- '00. 8.30 금파지방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경기도고시 제2000-5057호)
- '00.11.30 금파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승인(경기도고시 제5099호)
- '01. 2.27 분양공고(6개업체)

라. 분 양 현 황

(단위:㎡)

총 면 적	분 양 가 능 면 적			조성 기간	사업시행자
	합 계	분 양	미분양		
78,060	51,990	-	51,990	-	파주시

마. 입 주 현 황

구 분	입주업체수			면 적(㎡)		
	계	제조업	기타	계	제조업	기타
계	6	6	-	51,990	51,990	-
2001. 2월말 현재	-	-	-	-	-	-
향 후 계 획	6	6	-	51,990	51,990	-

바. 입 지 여 건

시 설 명	총 계 획	2001.2월말 현재	향후 확충계획		
			사업기간	규 모	시행기관
도 로	11,932㎡	-	2001년 ~ 2002년	11,932㎡	파주시
용 수	493톤/일	-		493톤/일	"
전 력	2,100KVA	-		2,100KVA	한국통신공사
통 신	26회선	-		26회선	한국전력공사

2.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가. 기본방향

중소기업 이전을 수용하여 지원시설 및 공장시설의 설치, 운영 등을 통해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고 공장용지를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으로 관리함.

나. 산업단지 용도별 구획 계획

1) 용도별 구획 면적

(단위 ㎡)

총 면 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 지 구 역
78,060 (100%)	51,990 (66.6%)	- (0%)	14,602 (18.7%)	11,468 (14.7%)

□ 산업시설구역 세부용도

(단위 ㎡)

공장시설	물류시설	지식산업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기 타
51,990	-	-	-	-

2) 용도별 구획 평면도 생략

다. 업종별 배치계획

1) 업종별 배치현황

구 분 / 업종별	배치계획		2001. 2월말 현재		향후계획	
	업체수	면적(㎡)	업체수	면적(㎡)	업체수	면적(㎡)
합 계	6	51,990	-	-	6	51,990
재생재료 가공원료 생산업	1	32,890	-	-	3	32,890
기 타	5	19,100	-	-	3	19,100

2) 업종별 배치 계획도 생략

라. 입주관리계획

1) 입주대상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 제조업

※ 다만, 관리기관은 용수 및 용지 과다소요업종 등 산업단지 입주 부적격 업종에 대하여 미리 그 업종을 공고한 후 입주를 제외할 수 있음

2) 입주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이하 "산집법" 이라함)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업체 다만, 산집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 공장이 아닌 공장 및 공업용수 다소비 업종에 대하여는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

3) 입주 우선 순위

- 1순위 파주시내 등록된 공장으로서 택지개발지구지정 등 공공사업 시행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공장
- 2순위 파주시 무등록공장 또는 임대공장으로서 이전을 희망하는 업체
- 3순위 기타 입주자격을 갖추고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

마. 사후관리계획

산집법, 지방산업단지관리지침 및 금파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의거 관리

바. 입주기업체 지원시설 추진계획

○ 도로계획 11,932㎡(폭원 12m, 연장 959m, 노선수 2)

○ 용수계획 493㎥/일(공업용수 462, 생활용수 31)

※ 2001년 용수수요 추정 원단위 적용

○ 오·폐수처리계획 131㎥/일(폐수 104, 오수 27)

※ 개별공장 1차 처리후 폐수처리장 2차 처리

○ 폐기물처리계획 총발생량 3.7㎥/일(산업 3.3, 생활 0.3, 슬러지 0.1)

- 일반폐기물 입주업체 자체처리
- 특정폐기물 위탁처리

○ 전기공급계획 2,100KVA(문산 변전소 공급)

○ 통신시설계획 26회선(문산 전신전화국 공급)

입 주 제 한 업 종

분류번호	업 종 명	분류번호	업 종 명
15311, 15312	곡물도정 및 제분업	17401	솜 및 실 염색 가공업
15111	도축업	17402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 가공업
23100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업	17403	나염 가공업
26311	시멘트 제조업	17409	기타 섬유염색 및 정리업
26322	레미콘 제조업	19101	원피 가공업
26326	콘크리트관 및 조립구조재 제조업	18201	원모피 가공처리업
26325	콘크리트타일,기와,벽돌 및 블록제조업	21110	펄프 제조업
26921	아스콘 제조업	21121	신문용지 제조업
26922	아스팔트 성형제품 제조업	21122	인쇄 및 필기용지 제조업
21129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21123	크리프크지 및 상자용 판지 제조업
		20212	강화 및 재생목재 제조업
		21129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용현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1. 산업단지 개요

가. 관 리 기 관 의정부시

나. 조 성 목 적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내 위치한 용도지역 위반 공장의 이전을 촉진하여 도시환경 정비

다. 추 진 경 위

- '95. 7.21. 수도권정비 심의 위원회 의결(건설교통부)
- '95. 11.28. 지방공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승인(경기도 고시 제404호)
- '96. 10. 7.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경기도 고시 제264호)
- '96. 12.30. 조성공사 및 전면 책임감리 용역 착수
- '97. 3.18. 산업시설용지 분양공고(의정부시 공고 제51호)
- '97. 8.26. 산업시설용지 분양공고(의정부시 공고 제199호 - 제2차)
- '98. 3.30. 산업시설용지 분양공고(의정부시 공고 제47호 - 제3차)
- '98. 6.25. 조성공사 3차분 착수
- '98. 7. 9. 용현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경기도 고시 제295호)
- '98. 9. 10. 용현지방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경기도 고시 제378호)
- '98. 11.14. : 용현지방산업단지 관리계획 개정고시(경기도 고시 제464호)
- '99. 7.26. 용현지방산업단지 관리계획 개정고시(경기도 고시 제728호)
- '99. 12.31.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조건부 변경)
  ※ 입주자격 : 과밀억제권역 → 수도권지역
- 2000. 6.22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경기도 고시 제5033호)
- 2000. 7.27 의정부 용현지방산업단지 개발사업 준공인가 (경기도 공고 제5044호)

라. 분 양 현 황

(단위 ㎡)

구 분	분양대상	분 양 현 황 (2001. 2월 현재)			조성기간	사업시행자
		합 계	분 양	미 분 양		
계	256,584.8	256,584.8	205,842.9	50,741.9	'95.11. ~ 2000. 7.	의정부시
산업시설구역	210,423.2	210,423.2	169,258.3	41,164.9		
지원시설구역	46,161.6	46,161.6	36,584.6	9,577.0		

마. 입주현황

구 분	입 주 업 체 수			면 적 (㎡)		
	계	제조업	기타	계	제조업	기타
계	76	67	9	256,584.8	210,423.2	46,161.6
2001. 2월말 현재	25	22	3	85,160.2	48,575.6	36,584.6
향 후 계 획	51	45	6	171,424.6	161,847.6	9,577

바. 입지여건

시 설 명	총 계 획	현 시 설	향 후 확 충 계 획		
			사업기간	규 모	시행기관
단지내 도로(m)	3,455	3,455	-	-	-
용 수(㎥/일)	3,688	3,688	-	-	-
전 력(KVA)	26,015	26,015	-	-	-
통 신(회선)	1,182	1,182	-	-	-
폐수처리(㎥/일)	3,626	3,626	-	-	1차 : 입주업체 2차 : 하수종말 처리장

2.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가. 기 본 방 향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 "산집법" 이라함) 제38조,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신설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업체를 입주시켜 생산활동을 지원

○ 산업용지는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지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되, 부득이한 경우 산업시설구역중 일부는 물류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함

○ 추진방향

- 공장시설 용도를 업종별 (섬유, 기계, 금속등)로 세분하여 배치 및 관리
- 업종별 배치에 맞는 기반시설 설치 및 확충

나. 산업단지 용도별 구획 계획

1) 용도별 구획 면적

(단위 ㎡)

총 면 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시설구역
345,546.5 (100%)	210,423.2 (60.90%)	46,161.6 (13.36%)	58,509.9 (16.93%)	30,451.8 (8.81%)

□ 산업시설구역 세부용도

(단위 ㎡)

공장시설	물류시설	지식산업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기 타
210,423.2	-	-	-	-

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시설구역

산집법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나) 지원시설구역

① 산집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동법 제4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 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② 건축법 시행령 부표(건축물의 용도분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운수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다) 공공시설구역 :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라) 녹 지 구 역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3) 용도별 구획 평면도 생략

다. 업종별 배치계획

1) 업종별 배치현황

(단위 ㎡)

구분 / 업종별	배 치 계 획		2000.12월말 현재		향 후 계 획	
	업체수	면적(㎡)	업체수	면적(㎡)	업체수	면적(㎡)
합 계	67	210,423.2	22	48,575.6	45	161,847.6
조립금속	42	151,389.9	10	23,287	32	128,102.9
섬유·의복	24	56,093.2	12	25,288.6	12	30,804.6
APT형 공장	1	2940.1	-	-	1	2,940.1

2) 입주업체 위치도 생략

라. 입주관리 계획

1) 입주대상업종

산집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서 허용하는 한국표준산업관리분류상 전 제조업

※ 입주제외 대상

o 공업용수 다소비 업종, 산업단지 입주부적격 업종(별표3 참조)

o 관내 이전공장에 대하여는 공업용수 다소비 업종 및 산업단지입주 부적격 업종 제한에 관계없이 자체 심의후 입주업체선정

2) 입주자격

○ 산업시설구역

산집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공장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장

○ 지원시설구역

- 산집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 기관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자
-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물에 입주하는자
- 건축법 시행령 별표(건축물의 용도분류)에의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위험물저장시설 및 처리시설, 전시시설, 운수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을 영위하고자 하는자

3) 입주 우선순위

- 1순위 의정부시 소재 업체중 공공사업으로 철거되어 당해 지방 산업단지로 이전을 희망하는 도시형 공장
- 2순위 의정부시 소재 업체중 용도지역에 불합리하게 설치되어 당해 지방산업단지로 이전을 희망하는 도시형 공장
- 3순위 의정부시 지역의 소재 업체중 당해 지방산업단지로 이전을 희망하는 도시형 공장
- 4순위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도시형 공장

4) 입 주 절 차

신청 및 상담 →검토 및 입주계약 체결 →개별 인·허가 취득 → 공장건축 완료 →입주

마. 사후관리계획

1) 산업용지 관리 산집법 및 산업단지관리지침,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사후관리

2) 환 경 관 리

○ 오·수처리 공장자체 1차 처리후 부용천변 차집관거에 연결처리
○ 산업폐기물 일반폐기물은 쓰레기 적환장, 특정폐기물은 자체 위탁처리

3) 안 전 관 리 재해 방지를 위한 방재계획 수립

바. 입주기업체 지원사업 추진계획

1) 공장설립 지원

입주기업 공장설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속한 공공행정과 분양대금 채무보증으로 설립 자금난 해소

2) 생산활동 지원

노동부 사무소, 우편 집중국, 금융기관등 공공지원시설과 부품상가, 물류, 창고, 전시, 판매, 차량, 운수등 관련시설 입주가능

3) 근로자 복지후생 지원

기숙사, 복지회관, 탁아소, 유아원, 입주가능

4) 지원시설 설치계획

구분	시설명	배치계획		2000.12월말현재		향후계획	
		업체수	면적(㎡)	업체수	면적(㎡)	업체수	면적(㎡)
총계		9	46,161.6	3	36,584.6	6	9,577
공공지원	소 계	2	29,770.8	2	29,770.8	-	-
	노 동 부	1	3,359.7	1	3,359.7	-	-
	우편집중국	1	26,411.1	1	26,411.1	-	-
생산활동지원	소 계	2	9,064.7	1	6,813.8	1	2,250.9
	-롯데마그넷	1	6,813.8	1	6,813.8		
	-창고, 전시 차량관련등	1	2,250.9	-	-	1	2,250.9
후생복지지원	소 계	5	7,326.1	-	-	5	7,326.1
	유아원, 기숙사, 복지회관등	5	7,326.1	-	-	5	7,326.1

사. 기타 산업단지 운영에 관한 사항

1) 아파트형 공장

○ 위　　치 . 용현지방산업단지내

○ 면　　적　2,940.1㎡

○ 사 업 기 간　'95. ~ 2002.12.

○ 분양예정 기업체수　60개소

2) 용수공급계획　2,451㎥/일(최대 3,688㎥/일)

○ 용수공급계획은 팔당댐 계통 수도권 광역 상수도에서 용수 확보가능

○ 용수 공급은 용현 배수지(30,000톤)에서 공급

3) 오수처리계획

○ 각 공장에서 배출되는 공장폐수는 공장자체 1차 처리후 생활오수와 함께 부용천에 기설치된 차집관거 ø1000㎜에 연결하여 최종적으로 장암동 하수처리장에서 정화 처리되도록 계획

○ 공장폐수와 생활오수는 공장 및 생활용수의 80%가 오수관으로 배출될 것으로 보며 여기에 지하수 유입량 15%를 가산하여 산정

※ 초당 배출 오수량　0.043㎥

4) 폐기물 처리계획

○ 총 발생량 ---------- 9,707 ton/년

○ 특정폐기물량 ---------- 758 ton/년

○ 일반폐기물량 ---------- 8,949 ton/년

○ 처리계획

- 용현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발생량중 특정 폐기물은 위탁용역 처리하고
- 일반 폐기물은 신곡동 1-1번지 일대 폐기물 처리시설(면적:34,887㎡)에서 처리 ('93. 12.24 : 도시계획결정 -경기도 제 '93-460호)

5) 전기공급계획 의정부전력소에서 공급 26,015KVA

6) 통신시설계획 의정부전신전화국에서 공급 1,182회선

【별표 3】

산업단지 입주제한 업종

〔공업용수 다소비 업종, 산업단지 입주 부적격 업종〕

분류번호	공업용수 다소비 업종	분류번호	산업단지 입주 부적격 업종
17121	섬유 및 사염색 가공업	10102	연탄 및 기타 응집무연탄 생산업
17122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가공업	10200	갈탄 광업
17123	나염가공업	10300	토탄 광업
1712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섬유표백, 염색 및 가공업	26952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업
18201	원모피 처리업	26955	시멘트 제조업
19111	원피 가공업	26956	레미콘 제조업
21011	펄프제조업	26957	콘크리트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 제조업
21012	한지 제조업	26959	기포콘크리트 제조업
21013	신문용지 제조업	26961	콘크리트조립구조재 및 기타 토목공사용 콘크리트 제품 제조업
21014	인쇄 및 필기용지 제조업	26962	달리분류되지않는 콘크리트, 시멘트 및 플라스터 제품 제조업
21015	크라프트지 제조업	26993	성형가공석재 및 석제품 제조업
21016	상자용 판지 제조업	26962	착색가공석재 생산업
21019	달리분류되지않는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26993	아스팔트제품제조업
		28922	도금업

※ 음·식료품 업종인 임가공 도정업, 임가공 제분업 제외

추팔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1. 산업단지 개요

가. 관리기관 평택시

나. 조성목적

○ 수도권내 이전대상업체 유치로 공업기반 활성화

○ 지역공업육성으로 고용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주민 소득증대 도모

다. 추진경위

○ 1986. 7.15 수도권정비 시행계획 개발유도권역 안의 개발계획 결정 (건교부 고시 제306호)

○ 1993.11.12 추팔지방공업단지 지정 고시(경기도 고시 제1993-386호)

○ 1994. 4. 2 추팔지방공업단지 개발계획 승인고시 (경기도 고시 제1994-88호)

○ 1994. 9.12 추팔지방공업단지 실시계획 승인(경기도 고시 제1994-253호)

○ 1996. 5. 7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승인(경기도 고시 제1996-98호)

○ 1996.11. 8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승인(경기도 고시 제1996-303호)

○ 1998. 7. 9 추팔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경기도 고시 제295호)

○ 1998.12.24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승인(경기도 고시 제1998-529호)

○ 2000.12.11 개발사업 준공(경기도 공고 제2000-496호)

○ 2003. 9.30 경기도지방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개정고시 (경기도 고시 제2003-241호)

라. 분양현황

(단위 ㎡)

구 분		분양대상	분양현황			조성기간	사업시행자
			합 계	분 양	미 분 양		
계		449,913.8	449,913.8	746,833.5	40,859.0	'94 ~ '00	평 택 시
산업시설구역	소계	414,146.8	414,146.8	414,146.8			
	분양	325,170.7	325,170.7	325,170.7			
	임대	88,976.1	88,976.1	76,368.1	12,608.0		
지원시설구역		35,767.0	35,767.0	7,516.0	28,251.0		

마. 입주현황

구 분	입주업체수(개사)			면 적(㎡)		
	계	제조업	기타	계	제조업	기타
계	38	38	-	414,146.8	414,146.8	-
2004. 5월말 현재	38	38	-	414,146.8	414,146.8	-
향 후 계 획	-	-	-	-	-	-

바. 입지여건

시 설 명	총 계 획	비 고
○ 단지내도로(m)	5,677	
○ 용수(㎥/일)	7,376	
○ 전력(mvh)	80,032	
○ 통신(회선)	1,765	
○ 폐수처리(㎥/일)	20,000	
○ 폐기물매립장(㎡)	19,600	

2.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가. 기본방향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 "산집법" 이라함) 제38조,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신설 또는 이전하고자하는 업체를 입주시켜 생산활동을 지원

○ 공단용지를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으로 구획하여 관리하며, 단지내 지원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입주 기업체 생산활동의 효율적 지원을 도모

나. 산업단지 용도별 구획 계획

1) 용도별 구획면적

(단위 ㎡)

총 면 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시설구역	비고
609,999.2 (100%)	414,146.8 (67.9%)	35,767 (5.9%)	115,427.2 (18.9%)	44,658.2 (7.3%)	

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시설구역

산집법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나) 지원시설구역

① 산집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법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② 건축법 시행령 부표(건축물의 용도분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운수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다) 공공시설구역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라) 녹 지 구 역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3) 용도별 구획 평면도 별표 # 1

다. 업종별 배치계획

1) 업종별 배치현황

구 분	업 종	업 체 수	면 적(㎡)	비 고
계		38	414,146.8	
분양지구	음·식료품, 섬유·의복, 나무·목재	28	325,170.7	
외국인임대지구	고도기술수반업종, 첨단업종,N/T마크인증신기술 수반업종	10	88,976.1	

※ 업체수는 분양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라. 입주관리계획

1) 입주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 제조업으로 하며

○ 분양단지 음 · 식료품, 석유 · 화학, 조립금속 · 기계 · 장비, 전기전자 업종을 우선 유치업종으로 함

○ 임대단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2항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고도기술수반업종, 첨단기술 및 제품생산업종, N/T마크인증 신기술 수반업종

※ 단, 용수다소비업종, 공해업종(염색, 주물, 도금, 염, 안료, 피혁업종)등 산업단지 입주 부적격 업종은 입주를 제한함

2) 입주자격

가) 산업시설구역

산집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공장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및 산집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서 정한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나) 지원시설구역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업자로서 산집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 자격을 갖춘 자

3) 입주우선순위

가)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등록공장

① 이전공장의 수도권 지역별 우선순위

구 분	비 공 업 지 역		공 업 지 역	
	비도시형 공장	도시형 공장	비도시형 공장	도시형 공장
과밀억제지역	1 순위	2 순위	5 순위	6 순위
자연보전지역	3 순위	4 순위	7 순위	8 순위
성장관리지역	9 순위	10 순위	11 순위	12 순위

② 분양면적 단위당 인천항 화물의 이용도

③ 통상산업부 고시에 의한 "첨단업종"의 공장

④ 전년도 수출실적이 많은 공장

나) 기타공장

① 통상산업부 고시에 의한 첨단업종의 공장
(산집법 시행규칙 제15조 참조)

② 도시형업종의 공장(산집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참조)

다) 용수다소비공장 제한

용수공급계획 범위 내에서 면적 당 배분량을 초과하는 경우 상기 입주 우선 순위에 의한 입주자 선정을 제한할 수 있음

4) 입주절차

용지분양 → 산업단지 입주계약 → 건축허가 → 공장등록

마. 사후관리계획

1) 분양용지의 관리

산집법, 산업단지관리지침과 추팔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의거 관리

2) 환경관리

산업단지내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 소음진동 등의 배출 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

바. 지원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 기본방향

○ 입주기업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공행정, 우정. 통신, 금융. 보험. 후생, 의료와 산집법 시행령 제6조제5항 및 제6항 규정의 사업을 위한 시설의 설치

※ 해당 실수요자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함

○ 입주업체의 생산활동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향상 도모

2) 지원시설 설치계획

가) 입주기업체 지원을 위한 시설

○ 지원시설용지 ———————————————— 35,767㎡

○ 지원시설설치계획 금융, 복지 · 후생, 의료, 근린생활시설 등

나) 폐수처리계획

○ 단지 내 발생폐수(약 6,786㎥/일)는 팽성 시가지 생활오수를 함께 처리하기 위한 팽성하수도 계획에 반영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입주업체에서 1차 처리 후 하수종말처리장 유입)

○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계획

- 위 치 팽성읍 신궁리
- 처리용량 20,000㎥/일

다) 산업(일반포함) 폐기물 처리계획

○ 총 발생량(매립대상) ———————————— 2,417.6톤/년

○ 처리계획

- 단지내 폐기물 매립장 설치 폐기물 처리
- 매립장 면적 ———————————————— 19,600㎡

라) 공업용수 공급계획

○ 단지 내 공업용수는 기존의 팽성 배수지(기존 2,500㎥, 4,000㎥)를 이용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에서 인입하여 공급

입 주 제 한 업 종

분류번호	업 종 명	분류번호	업 종 명
10119	연탄 및 기타응집 유·무연탄생산업	26313	프라스터제조업
15111	도축업	26321	비내화 모르타르 제조업
15311	곡물 도정업	26322	레미콘 제조업
15312	곡물 제분업	26325	콘크리트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 제조업
17401 ~ 17409	섬유 염색 및 가공업		
18201	원모피 가공처리업	26326	콘크리트관 및 조립구조재 제조업
19101	원피 가공업	26911	석재 성형 가공품 제조업
20212	강화 및 재생목재 제조업	26921	아스콘 제조업
21110	펄프 제조업	26922	아스팔트 성형제품 제조업
21121	신문용지 제조업	26956	기포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21122	인쇄 및 필기용지 제조업	26992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21123	그라프크지및상자용판지 제조업	26993	석면,암면 및 유사제품 제조업
21129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26994	탄소섬유 및 기타탄소제품 제조업
23100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업	27111	제철 및 제강업
23210	원유정제처리업	27112	합금철 제조업
23221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27119	기타 제철 및 제강업
23229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27311	선철주물 주조업
23300	핵연료가공업	27312	강주물 주조업
24129	기타 기초 무기화합물 제조업	27321	알루미늄주물 주조업
24131	무기안료및기타금속산화물제조업	27322	동주물 주조업
24132	합성염료,유연제및기타착색제제조업	27323	비철금속 가압 주조업
26311	시멘트 제조업	27329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26312	석회제조업	28922	도금업

어연 · 한산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1. 산업단지 개요

가. 관리기관 평택시

나. 조성목적

○ 국토의 균형발전과 수도권 이전대상공장 수용을 위한 이전적지확보

○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자립경제 기반육성 및 지역산업활성화

○ 외국인기업의 유치로 국내산업 고도화에 기여

다. 추진경위

○ 1986. 7.15 수도권정비 시행계획 수립(건교부 고시 제306호)

○ 1993. 5.29 한산지방산업단지 지구지정 승인(건교부)

○ 1993.12.17 국토이용계획 변경(건교부 고시 제542호)

○ 1993.12.28 지방공업단지 지구 지정 고시(경기도 고시 제479호)

○ 1994. 6.15 개발기본계획 승인(건교부)

○ 1994. 6.27 개발기본계획 승인 고시(경기도 고시 제171호)

○ 1996. 5. 7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경기도 고시 제99호)

○ 1996. 5. 8 사업시행자 변경 승인(경기도 고시 제105호)

※ 평택시장 → 경기도지사

○ 1996. 7. 9 산업단지의 명칭 변경 승인 고시(경기도 고시 제244호)

○ 1998. 1. 3 사업시행자 변경 승인 고시(경기도 고시 제488호)

※ 경기도지사 →경기지방공사사장

○ 1998. 7. 9 관리기본계획 승인(경기도 고시 제1998-295호)

○ 1999. 6. 4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경기도 고시 제196호)

○ 1999.10.19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경기도 고시 제377호)

○ 1999.12.29 개발사업 준공

○ 2000. 9.27 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경기도 고시 제230호)

○ 2002. 1. 7 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경기도 고시 제2002-001호)

라. 분양현황

(단위 ㎡)

구 분	분양대상	분 양 현 황			조성기간	사업시행자
		합 계	분 양	미 분 양		
계	494.235.2	494,235.2	460,865.9	33,369.3	'93 ~ '98	경기지방 공 사
산업시설구역	463,544.7	463,544.7	438,534.8	25,009.9		
지원시설구역	30,690.5	30,690.5	22,331.1	8,359.4		

마. 입주현황

구 분	입 주 업 체 수(개사)			면 적(㎡)		
	계	제조업	기타	계	제조업	기타
계	36	35	1	463,544.7	438,534.8	25,009.9
2003. 7월말 현재	35	35	-	438,534.8	438,534.8	-
향 후 계 획	1	-	1	25,009.9	-	25,009.9

바. 입지여건

시 설 명	총 계 획	비 고
○ 단지내도로(m)	4,789	
○ 공업용수(㎥/일)	5,634	
○ 생활용수(㎥/일)	590	
○ 전력(KVA)	28,595	
○ 통신(회선)	1,067	
○ 폐수처리(㎥/일)	5,500	
○ 폐기물매립장(㎡)	25,010	

2.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가. 기본방향

○ 수도권정비 및 공업재배치에 의한 내국인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이 입주하는 혼용방식을 채택하여 공단용지를 분양단지와 임대단지로 구분관리하고

○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으로 구획하여 관리하며, 단지내 지원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입주 기업체의 생산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을 도모

나. 산업단지 용도별 구획 계획

1) 용도별 구획면적

(단위 ㎡)

총 면 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시설구역	비고
	공장시설	폐기물처리시설				
689,508.4 (100%)	438,534.8 (63.6%)	25,009.9 (3.6%)	30,690.5 (4.5%)	148,621.9 (21.6%)	46,651.3 (6.7%)	

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시설구역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 "산집법" 이라함)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나) 지원시설구역

① 산집법 제2조1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법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② 건축법 시행령 부표(건축물의 용도분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운수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다) 공공시설구역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라) 녹 지 구 역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3) 용도별 구획 평면도 생략

다. 업종별 배치계획

1) 업종별 배치현황

(단위 ㎡, 개사)

구 분	업 종	업체수	면 적	비 고
계		35	438,534.8	
분양지구	음 . 식료품, 석유·화학, 조립금속·기계, 기타제조업	9	174,699.8	
외국인임대지구	고도기술수반업종,첨단업종, N/T마크인증신기술 수반업종	26	263,835.0	

※ 업체수는 분양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업종별 배치계획 생략

라. 입주관리계획

1) 입주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 제조업으로 하며

○ 분양단지 음 · 식료품, 석유 · 화학, 조립금속 · 기계, 기타제조업

○ 임대단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2항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고도기술수반업종, 첨단기술 및 제품생산업종, N/T마크 인증 신기술 수반업종

※ 단, 용수다소비업종, 공해업종(염색, 주물, 도금, 염, 안료, 피혁업종)등 산업단지 입주 부적격 업종은 입주를 제한함

2) 입주자격

가) 산업시설구역

산집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공장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및 산집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서 정한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자

나) 지원시설구역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업자로서 산집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 자격을 갖춘자

3) 입주우선순위

가)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등록공장

① 이전공장의 수도권 지역별 우선순위

구 분	비 공 업 지 역		공 업 지 역	
	비도시형 공장	도시형 공장	비도시형 공장	도시형 공장
과밀억제지역	1 순위	2 순위	5 순위	6 순위
자연보전지역	3 순위	4 순위	7 순위	8 순위
성장관리지역	9 순위	10 순위	11 순위	12 순위

② 분양면적 단위당 인천항 화물의 이용도

③ 산업자원부 고시에 의한 "첨단업종"의 공장

④ 전년도 수출실적이 많은 공장

나) 기타공장

① 산업자원부 고시에 의한 첨단업종의 공장
(산집법 시행규칙 제15조 참조)

② 도시형업종의 공장(산집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참조)

다) 용수다소비공장 제한
용수공급계획 범위 내에서 면적 당 배분량을 초과하는 경우 상기 입주 우선 순위에 의한 입주자 선정을 제한할 수 있음

4) 입주절차
용지분양 → 산업단지 입주계약 → 건축허가 → 공장등록

마. 사후관리계획

1) 분양용지의 관리
산집법, 산업단지관리지침과 어연·한산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의거 관리

2) 환경관리
산업단지내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 소음진동 등의 배출 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

바. 지원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 기본방향

○ 입주기업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공행정, 우정. 통신, 금융. 보험. 후생, 의료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 및 제6항 규정의 사업을 위한 시설의 설치

※ 해당 실수요자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함

○ 입주업체의 생산활동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향상 도모

2) 지원시설 설치계획

가) 입주기업체 지원을 위한 시설

○ 지원시설용지 ———————————————— 30,690.5㎡

○ 지원시설설치계획 금융, 복지.후생, 의료, 근린생활시설 등

나) 폐수처리계획

○ 각 공정별로 1차 처리된 공장 폐수와 생활용수는 분리 차집관거를 통하여 준공 예정인 폐수종말처리장(5,500㎡/일)으로 유입되며, 최종 처리후 진위천으로 방류

다) 산업(일반포함) 폐기물 처리계획

○ 매립시설 25,009.9㎡

○ 처리계획 폐기물처리업체에 부지를 공급하여 시설설치 및 운영

라) 상수도 공급계획

○ 총 용수량 6,224㎡/일

○ 공업용수량 5,634㎡/일

○ 생활용수량 590㎡/일

○ 수 원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공급계획에서 공급(10,000㎡/일)

○ 배 수 지 본 공단 서측변에 설치한 배수지를 공동으로 이용

입 주 제 한 업 종

분류번호	업 종 명	분류번호	업 종 명
10119	연탄 및 기타응집 유·무연탄생산업	26313	프라스터제조업
15111	도축업	26321	비내화 모르타르 제조업
15311	곡물 도정업	26322	레미콘 제조업
15312	곡물 제분업	26325	콘크리트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 제조업
17401 ~ 17409	섬유 염색 및 가공업	26326	콘크리트관 및 조립구조재 제조업
18201	원모피 가공처리업	26911	석재 성형 가공품 제조업
19101	원피 가공업	26921	아스콘 제조업
20212	강화 및 재생목재 제조업	26922	아스팔트 성형제품 제조업
21110	펄프 제조업	26956	기포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21121	신문용지 제조업	26992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21122	인쇄 및 필기용지 제조업	26993	석면,암면 및 유사제품 제조업
21123	그라프크지및상자용판지 제조업	26994	탄소섬유 및 기타탄소제품 제조업
21129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27111	제철 및 제강업
23100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업	27112	합금철 제조업
23210	원유정제처리업	27119	기타 제철 및 제강업
23221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27311	선철주물 주조업
23229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27312	강주물 주조업
23300	핵연료가공업	27321	알루미늄주물 주조업
24129	기타 기초 무기화합물 제조업	27322	동주물 주조업
24131	무기안료및기타금속산화물제조업	27323	비철금속 가압 주조업
24132	합성염료,유연제및기타착색제제조업	27329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26311	시멘트 제조업	28922	도금업
26312	석회제조업		

칠괴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1. 산업단지 개요

가. 관리기관 평택시

나. 조성목적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 공업재배치 정책에 부응

○ 지방화시대에 대비한 자립경제 기반구축

○ 지역 내 기존 자동차산업의 활성화로 수출경쟁력 제고 및 공업용지 수요충족

다. 추진경위

○ 1986. 7.15 개발유도권역안의 개발계획 수립(건교부 고시 제306호)

○ 1994. 1. 3 개발유도권역안의 개발계획 변경
※칠괴지구(0.68㎢)(건교부고시 제1993-564호)

○ 1995. 3. 4 지방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고시
(경기도 고시 제1995-67호)

○ 1995.12. 2 실시계획 승인(경기도 고시 제1995-412호)

○ 1998. 7. 9 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경기도 고시 제295호)

○ 1998.10. 8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승인(경기도 고시 제1998-406호)

○ 1999. 4. 8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승인(경기도 고시 제1999-98호)

○ 1999. 6.21 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경기도 고시 제222호)

○ 2000. 1.12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경기도 고시 제2000-9호)

○ 2000. 4.19 지방산업단지 사업준공

○ 2000. 6.23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승인(경기도 고시 제2000-167호)

○ 2000. 9.27 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경기도 고시 제2000-230호)

라. 분양현황

(단위 ㎡)

구 분	분양대상	분 양 현 황			조성 기간	사업시행자
		합 계	분 양	미 분 양		
계	517,689.1	517,689.1	517,689.1	-	'94 ~ 2000.3	평 택 시
산업시설구역	495,324.8	495,324.8	495,324.8	-		
지원시설구역	22,364.3	22,364.3	22,364.3	-		

마. 입주현황

구 분	입 주 업 체 수(개사)			면 적(㎡)		
	계	제조업	기타	계	제조업	기타
계	19	19	-	495,324.8	495,324.8	-
2003. 7월말 현재	19	19	-	495,324.8	495,324.8	-
향 후 계 획	-	-	-	-	-	-

바. 입지여건

시 설 명	총 계 획	비 고
○ 단지내도로(m)	3,048	
○ 용수(㎥/일)	7,464	
○ 전력(KVA)	50,283	
○ 통신(회선)	680	
○ 폐수처리(㎥/일)	3,513	
○ 폐기물매립장(㎡)	19,197	

2.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가. 기본방향

수도권 공업재배치 및 자동차산업의 정책적인 육성을 위하여 공단용지를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으로 구획하여 관리하며, 단지 내 공공 및 지원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입주기업체 기업활동의 효율적 지원을 도모

나. 산업단지 용도별 구획 계획

1) 용도별 구획면적

(단위 ㎡)

총면적	산업 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시설구역	비고
641,275.5 (100%)	495,324.8 (77.2%)	22,364.3 (3.5%)	85,506.1 (13.3%)	38,080.3 (6.0%)	

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시설구역

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환법률(이하 "산집법" 이라함)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② 자동차·운송장비 부지 일부 61,409.5㎡(당초 조립금속 부지)는 완성된 자동차 출고 대기장으로만 사용 (2000. 6.23 실시계획 변경조건)

※ 공장건축면적 증설 불가

나) 지원시설구역

① 산집법 제2조1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법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② 건축법 시행령 부표(건축물의 용도분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운수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다) 공공시설구역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라) 녹 지 구 역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3) 용도별 구획 평면도 생략

다. 업종별 배치계획

1) 업종별 배치현황

(단위 ㎡, 개사)

업 종	업 체 수	면 적	비 고
합 계	19	495,324.8	
기 계	6	53,336.4	
전기및전자기기	1	11,854.1	
운 수 장 비	1	190,314.9	
화합물및화학제품	2	7,707	
시험연구시설	1	178,386.2	
통 신	7	51,119.4	
음·식료품	1	2,606.8	

※ 업체수는 분양결과에 따라 달라질수 있음.

2) 업종별 배치계획 생략

라. 입주관리계획

1) 입주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 제조업으로 하며 음·식료품, 통신, 기계, 전기및전자기기, 운수장비, 화합물 및 화학제품(중분류24-35)업종을 우선 유치업종으로 함

※ 단, 용수다소비업종, 공해업종(염색, 주물, 도금, 염, 안료, 피혁업종) 등 산업단지 입주부적격업종은 입주를 제한함

2) 입주자격

가) 산업시설구역

산집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공장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및 산집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서 정한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자

나) 지원시설구역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업자로서 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자

3) 입주우선순위

가)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등록공장

① 이전공장의 수도권 지역별 우선순위

구 분	비 공 업 지 역		공 업 지 역	
	비도시형 공장	도시형 공장	비도시형 공장	도시형 공장
과밀억제지역	1 순위	2 순위	5 순위	6 순위
자연보전지역	3 순위	4 순위	7 순위	8 순위
성장관리지역	9 순위	10 순위	11 순위	12 순위

② 분양면적 단위당 인천항 화물의 이용도

③ 산업자원부 고시에 의한 "첨단업종"의 공장

④ 전년도 수출실적이 많은 공장

나) 기타공장

① 산업자원부 고시에 의한 첨단업종의 공장
(산집법 시행규칙 제15조 참조)

② 도시형업종의 공장(산집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참조)

다) 용수다소비공장 제한

용수공급계획 범위 내에서 면적 당 배분량을 초과하는 경우 상기 입주 우선 순위에 의한 입주자 선정을 제한할 수 있음

4) 입주절차

용지분양 → 산업단지 입주계약 → 건축허가 → 공장등록

마. 사후관리계획

1) 분양용지의 관리

산집법, 산업단지관리지침과 칠괴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의거 관리

2) 환경관리

산업단지내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 소음진동 등의 배출 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

바. 지원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 기본방향

○ 입주기업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공행정, 우정. 통신, 금융. 보험. 후생, 의료와 산집법 시행령 제6조제5항 및 제6항 규정의 사업을 위한 시설의 설치

※ 해당 실수요자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함

○ 입주업체의 생산활동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향상 도모

2) 지원시설 설치계획

가) 입주기업체 지원을 위한 시설

○ 지원시설용지 ———————————— 22,364.3㎡

○ 지원시설설치계획 금융, 복지.후생, 의료, 근린생활시설 등

나) 폐수처리계획

○ 단지 내 발생하는 오,폐수(약 3,513톤/일)는 기 설치된 송탄공단내 폐수종말처리장(용량 13,000톤/일)에서 공동처리

다) 산업(일반포함) 폐기물 처리계획

○ 소각시설 1일 30톤(시간당 1.25톤)

○ 매립시설 60,190㎥

○ 침출수처리시설 1일 40㎥

○ 처리계획 칠괴, 장당산업단지, 쌍용자동차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과 평택시내에 사업장과 생활폐기물을 포함하여 사업지구내 자체 매립장 확보

라) 공업용수 공급계획

○ 단지 내 공업용수는 기존의 공단전용 배수지(용량 5,700㎥/일 최대 사용량 31,000㎥)를 공동이용 용수공급

입 주 제 한 업 종

분류번호	업 종 명	분류번호	업 종 명
10119	연탄 및 기타응집 유·무연탄생산업	26313	프라스터제조업
15111	도축업	26321	비내화 모르타르 제조업
15311	곡물 도정업	26322	레미콘 제조업
15312	곡물 제분업	26325	콘크리트타일, 기와, 벽돌 및
~17401 17409	섬유 염색 및 가공업		블록 제조업
18201	원모피 가공처리업	26326	콘크리트관 및 조립구조재 제조업
19101	원피 가공업	26911	석재 성형 가공품 제조업
20212	강화 및 재생목재 제조업	26921	아스콘 제조업
21110	펄프 제조업	26922	아스팔트 성형제품 제조업
21121	신문용지 제조업	26956	기포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21122	인쇄 및 필기용지 제조업	26992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21123	그라프크지및상자용판지 제조업	26993	석면,암면 및 유사제품 제조업
21129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26994	탄소섬유 및 기타탄소제품제조업
23100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업	27111	제철 및 제강업
23210	원유정제처리업	27112	합금철 제조업
23221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27119	기타 제철 및 제강업
23229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27311	선철주물 주조업
23300	핵연료가공업	27312	강주물 주조업
24129	기타 기초 무기화합물 제조업	27321	알루미늄주물 주조업
24131	무기안료및기타금속산화물제조업	27322	동주물 주조업
24132	합성염료,유연제및기타착색제제조업	27323	비철금속 가압 주조업
26311	시멘트 제조업	27329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26312	석회제조업	28922	도금업

장당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1. 산업단지 개요

가. 관리기관 평택시

나. 조성목적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 공업재배치 정책에 부응

○ 지방화시대에 대비한 자립경제 기반구축 및 지역내 기존산업의 활성화유도

○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주민 소득증대 도모

다. 추진경위

- '86. 7.15 수도권정비 시행계획중 개발유도권역안의 개발계획수립 (건교부 고시 제306호)
- '94. 1. 3 개발유도권역안의 개발계획변경(건교부 고시 제564호)
- '95. 3. 4 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경기도 고시 제66호)
- '95.12. 2 실시계획 승인(경기도 고시 제411호)
- '97. 6.13 실시계획 변경승인(경기도 고시 제202호)
- '98. 6. 9 준공인가(경기도 고시 제243호)
- '98. 7. 9 관리기본계획 수립(경기도 고시 제295호)

라. 분양현황

(단위 ㎡)

구 분	분양대상	분 양 현 황			조성 기간	사업시행자
		합 계	분 양	미 분 양		
계	144,016.7	144,016.7	144,016.7	-	'95~'98	평택시
산업시설구역	142,117.1	142,117.1	142,117.1	-	"	"
지원시설구역	1,899.6	1,899.6	1,899.6	-	"	"

마. 입주현황

구 분	입주업체수			면 적(㎡)		
	계	제조업	기타	계	제조업	기타
계	6	6	-	6	142,117.1	-
2001. 2월말 현재	6	6	-	6	142,117.1	-
향 후 계 획	-	-	-	-	-	-

바. 입지여건

시 설 명	총 계 획	2001년2월말현재	확 충 계 획		
			사업계획	규모	시행기관
도 로	65m	65m	-	-	-
용 수	1,988㎥/일	1,988㎥/일	-	-	-
전 력	6,412㎾	6,412㎾	-	-	-
통 신	124회선	124회선	-	-	-
폐수처리	3,091㎥/일	3,091㎥/일	-	-	-
폐기물매립장	18,937㎡	18,937㎡	-	-	-

2.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가. 기본방향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 "산집법" 이라함) 제38조,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신설 또는 이전하고자하는 업체를 입주시켜 생산활동을 지원

○ 공단용지를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으로 구획하여 관리하며, 단지내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여 입주 기업체 생산활동의 효율적 지원을 도모

나. 산업단지 용도별 구획 계획

1) 용도별 구획면적

(단위 ㎡)

총 면 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시설구역	비 고
149,718.5 (100%)	142,117.1 (94.9%)	1,899.6 (1.3%)	671.3 (0.4%)	5,030.5 (3.4%)	

□ 산업시설구역 세부용도

(단위:㎡)

공 장 시 설	물 류 시 설	지식산업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기 타
142,117.1	-	-	-	-

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시설구역

산집법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나) 지원시설구역

① 산집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산집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② 건축법 시행령 부표(건축물의 용도분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운수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다) 공공시설구역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라) 녹 지 구 역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3) 용도별 구획 평면도 생략

다. 업종별 배치계획

1) 업종별 배치현황

업 종	업 체 수	면적(㎡)	비 고
합 계	6	142,117.1	
음·식료, 석유·화학	1	48,297.4	
음·식료품	1	36,444.2	
종이·인쇄 및 전제조업	3	17,375.5	
기계·장비	1	40,000	

※ 업체 수는 분양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업종별 배치계획 생략

라. 입주관리계획

1) 입주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 제조업으로 하며 음·식료품, 석유·화학, 기계·장비, 종이·인쇄 업종을 우선 유치 업종으로 함

※ 단, 용수 다소비 업종, 공해업종(염색, 주물, 도금, 염, 안료, 피혁업종)등 산업단지 입주 부적격 업종은 입주를 제한함

2) 입주자격

가) 산업시설구역

산집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공장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및 산집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서 정한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자

나) 지원시설구역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에 위해 산집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 기관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자

3) 입주 우선 순위

가)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등록공장

① 이전공장의 수도권 지역별 우선 순위

구 분	비 공 업 지 역		공 업 지 역	
	비도시형 공장	도시형 공장	비도시형 공장	도시형 공장
과밀억제지역	1 순위	2 순위	5 순위	6 순위
자연보전지역	3 순위	4 순위	7 순위	8 순위
성장관리지역	9 순위	10 순위	11 순위	12 순위

② 분양면적 단위당 인천항 화물의 이용도

③ 산업자원부 고시에 의한 "첨단업종"의 공장

④ 전년도 수출실적이 많은 공장

나) 기타공장

① 산업자원부 고시에 의한 첨단업종의 공장
(산집법 시행규칙 제15조 참조)

② 도시형업종의 공장(산집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참조)

다) 용수 다소비 공장 제한

용수공급계획 범위 내에서 면적당 배분량을 초과하는 경우 상기 입주 우선 순위에 의한 입주자 선정을 제한할 수 있음

4) 입주절차

용지분양 → 산업단지 입주계약 → 건축허가 → 공장등록

마. 사후관리계획

1) 분양용지의 관리

산집법, 산업단지관리지침과 장당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의거 관리

2) 환경관리

산업단지내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 소음진동 등의 배출 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

바. 지원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 기본방향

○ 입주기업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공행정, 우정. 통신, 금융. 보험. 후생, 의료와 산집법 시행령 제6조제6항 규정의 사업을 위한 시설의 설치
※ 해당 실수요자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함

○ 입주업체의 생산활동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향상 도모

2) 지원시설 설치계획

가) 입주기업체 지원을 위한 시설

○ 지원시설용지 ———————————————— 1,899.6㎡

○ 지원시설설치계획 금융, 복지.후생, 의료, 근린생활시설 등

나) 폐수처리계획

○ 단지내 발생하는 오, 폐수(약 3,091톤/일)는 기 설치된 송탄단지내 폐수종말처리장(용량 13,000톤/일)에서 공동처리

다) 산업(일반포함) 폐기물 처리계획

○ 총 발생량 ———————————————— 8,963톤/년

○ 매립대상폐기물량 ———————————————— 8,963톤/년

○ 처리계획

- 인근 칠괴산업단지 내 확보된 폐기물매립장 이용처리
- 매립장 면적 ———————— 19,197㎡(칠괴산업단지 내)

라) 공업용수 공급계획

○ 단지내 공업용수는 기존의 공단전용 배수지(용량 5,720㎥, 일 최대 사용량 31,000㎥)를 공동이용 용수공급

입 주 제 한 업 종

분류번호	업 종 명	분류번호	업 종 명
10119	연탄 및 기타응집 유·무연탄생산업	26313	프라스터제조업
15111	도축업	26321	비내화 모르타르 제조업
15311	곡물 도정업	26322	레미콘 제조업
15312	곡물 제분업	26325	콘크리트타일, 기와, 벽돌 및
17401 ~ 17409	섬유 염색 및 가공업		블록 제조업
18201	원모피 가공처리업	26326	콘크리트관 및 조립구조재 제조업
19101	원피 가공업	26911	석재 성형 가공품 제조업
20212	강화 및 재생목재 제조업	26921	아스콘 제조업
21110	펄프 제조업	26922	아스팔트 성형제품 제조업
21121	신문용지 제조업	26956	기포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21122	인쇄 및 필기용지 제조업	26992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21123	그라프크지및상자용판지 제조업	26993	석면,암면 및 유사제품 제조업
21129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26994	탄소섬유 및 기타탄소제품 제조업
23100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업	27111	제철 및 제강업
23210	원유정제처리업	27112	합금철 제조업
23221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27119	기타 제철 및 제강업
23229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27311	선철주물 주조업
23300	핵연료가공업	27312	강주물 주조업
24129	기타 기초 무기화합물 제조업	27321	알루미늄주물 주조업
24131	무기안료및기타금속산화물제조업	27322	동주물 주조업
24132	합성염료,유연제및기타착색제제조업	27323	비철금속 가압 주조업
26311	시멘트 제조업	27329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26312	석회제조업	28922	도금업

동두천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1. 산업단지 개요

가. 관리기관 동두천시

나. 조성목적

○ 기업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피혁, 염색업체의 집단이주 및 공해공장 입주 유도

다. 추진경위

- '93. 2. 3 수도권심의위원회 승인(270,000㎡)
- '95. 7.4 환경영향평가 완료
- '94. 9. 7 1차 수도권심의위원회 변경승인
  ※ 피혁폐기물 재활용공장 등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 '94.10. 1 지방산업단지(5개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 '96. 3.30 2차 수도권심의위원회 변경승인
  ※ 도시형업종 일부 유치 및 개발면적 변경(264,014㎡)
- '96.11. 7 실시계획 승인
- '97. 3.31 3차 수도권심의위원회 변경승인
  ※ 도시형공장을 공해공장(피혁,염색)으로 변경
- '97. 7.18 공사 착공
- '97.10. 4 분양공고 및 분양실시
- '98. 7. 9 관리기본계획 고시
- '99. 9.14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 개발면적및 업종 배치계획 변경 (262,160㎡)
- 2000.3. 2 개발사업(1~4지구) 준공인가
- 2000.6. 9 개발사업(5지구) 준공인가

라. 분양현황

(단위 ㎡)

구 분	분양대상	분 양 현 황			조성기간	사업시행자
		합 계	분 양	미 분 양		
계	165,841	165,841	158,817.9	7,023.1	'97.7~2000.6	동두천시
산업시설구역	156,151.1	156,151.1	152,432.7	3,718.4		
지원시설구역	9,689.9	9,689.9	6,385.2	3,304.7		

마. 입주현황

구 분	입 주 업 체 수			면 적 (㎡)		
	계	제조업	기 타	계	제조업	기 타
계	41	38	3	165,841	155,097.6	10,743.4
2001.2월말현재	39	37	2	158,817.9	151,379.2	7,438.7
향후계획	2	1	1	7,023.1	3,718.4	3,304.7

바. 입지여건

○ 도 로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이용(구리IC에서 38㎞ 지점)
국도3호선 인접(500M) - 강변우회도로와 바로 인접

○ 철 도 경원선 동안역과 연접

○ 항공 및 항만 김포공항(60㎞), 인천항(80㎞) 이용

○ 용 수 20,000톤/1일

○ 오 폐수 단지내 폐수처리장 1차처리후 동두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최종처리

○ 전 력 전압 154KV, 용량 69,000KVA

2.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가. 기본방향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 "산집법" 이라함) 제38조,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신설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업체를 입주시켜 생산활동을 지원

○ 산업용지는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되, 부득이한 경우 산업시설구역 중 일부는 물류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함.

나. 추진방향

○ 공장시설 용도를 업종별 〔피혁,섬유(염색) 및 그와 관련된 기계 제조업, 폐기물처리시설업〕 로 세분하여 배치 및 관리

○ 업종별 배치에 맞는 기반시설 설치 및 확충

○ 환경오염 및 공해업소 이전 유도

다. 산업단지 용도별 구획 계획

1) 용도별 구획 면적

(단위 ㎡)

총 면 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262,160 (100%)	156,151.1 (59.6%)	9,689.9 (3.7%)	74,210 (28.3%)	22,109 (8.4%)

□ 산업시설구역 세부용도

(단위 ㎡)

공장시설	물류시설	지식산업시설	폐 기 물 처리시설	기 타
155,097.6	-	1,053.5	-	-

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시설구역

산집법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나) 지원시설구역

① 산집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동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입주 기업체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② 건축법시행령 부표(건축물의 용도분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운수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다) 공공시설구역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라) 녹지구역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3) 용도별 구획 평면도 : 생략

라. 업종별 배치계획

1) 업종별 배치현황

구 분 / 업종별	배치계획		2000.12월말 현재		향 후 계 획	
	업체수	면적(㎡)	업체수	면적(㎡)	업체수	면적(㎡)
합 계	38	155,097.6	37	151,379.2	1	3,718.4
섬유(염색)가공	13	72,569.3	13	72,569.3		
피혁가공	20	58,880.5	20	58,880.5		
섬유·피혁제품제조 및 관련기계 제조업	4	18,878.3	3	15,159.9	1	3,718.4
폐기물처리시설업	1	4,769.5	1	4,769.5		

2) 업종별 배치계획도 생략

마. 입주관리계획

1) 입주 대상업종

○ 피혁,섬유(염색) 및 그와 관련된 기계 제조업

○ 폐기물처리시설업(재활용 업종)

2) 입주자격

○ 산업시설구역

산집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및 산집법 시행령 제27조에서 정한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지원시설구역

- 산집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으로서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물에 입주하는자
- 건축법시행령 별표(건축물의 용도분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전시시설, 운수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3) 입주 우선순위

○ 피혁 및 염색

· 1순위 기존 동두천시 관내 피혁,섬유(염색)업체로서 기존 공장폐쇄를 전제로 이전하고자 하는 업체

· 2순위 수도권내 피혁,섬유(염색)업체로서 기존 공장폐쇄를 전제로 이전하고자 하는 업체

○ 피혁,섬유(염색) 및 그와 관련된 기계 제조업, 재활용 업종

· 1순위 수도권내 과밀억제지역에서 공공사업시행 및 도시정비를 위해 이전이 불가피한 피혁, 섬유(염색) 및 그와 관련된 기계 제조업, 재활용 업체

· 2순위 수도권내 피혁, 섬유(염색) 및 그와 관련된 기계 제조업, 재활용업체로서 기존 공장을 폐쇄 또는 임차해약을 전제로 이전하고자 하는 업체

4) 입주절차 입주신청 → 심의위원회심의 → 입주계약체결 → 공장설립완료신고 → 공장등록

바. 사후관리계획

1) 산업용지관리

산집법 및 산업단지관리지침, 관리기본계획에따라 사후관리

2) 환경관리

환경영향평가 실시 등 관련법에 따라 사후관리

3) 안전관리

산집법에 따라 사후관리

사. 입주기업체 지원사업 추진계획

1) 공장설립지원

○ 세제혜택

· 취득세, 등록세 전액 면제

· 재산세, 종토세 5년간 50% 감면(최초 취득시 5년이내)

2) 생산활동 지원

○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자금 지원

3) 지원시설 설치계획

구 분	시설명	배치계획		2000.12월말 현재		향 후 계 획	
		업체수	면적(㎡)	업체수	면적(㎡)	업체수	면적(㎡)
총 계		2	9,689.9	1	6,385.2	1	3,304.7
생산활동 지원시설		1	3,304.7	-	-	1	3,304.7
후생복지 지원시설		1	6,385.2	1	6,385.2		

안성 Ⅰ · Ⅱ 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1. 산업단지 개요

가. 관리기관　　사단법인 안성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

나. 조성목적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 산업재배치 정책에 부응
○ 지방화 시대에 대비한 자립경제 기반구축
○ 지역내 기존산업의 활성활로, 경쟁력제고 및 산업용지 수요충족
○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주민 소득증대 도모

다. 추진경위

구　　분	제 1 산업단지	제 2 산업단지
개발계획수립	-	`86.7.11(건설부)
도시계획 변경결정	`79.7.19	`90.10.18(건설부)
공업단지 조성사업 승인(실시계획 인가)	`79.11.22	`90.12.11(경기도)
조성공사.착공 준공	`81.12.29 `85.12.31	`91. 3.5 `93.10.7
지방산업단지 지정	`86.7.19(상공부) ※공업단지관리법 제3조	`92.4.11(경기도)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관리공단 설립 인가	`86.8.19(경기도)	`92.7.6(경기도) ※기존공단에 흡수

라. 분양현황

(단위　㎡)

구　분	조성면적	분양가능면적					조성기간	조성기관
		계	분　양	미　분　양				
			조성	소계	조성	미조성		
총　계	1,384,467	1,093,846	1,093,846	-	-	-		
제1산업단지	667,998	547,640	544,,465	-	-	-	'81~'85	한국토지공사
제2산업단지	716,469	549,381	549,381	-	-	-	'91~'93	안성군수

마. 입주현황

(03. 9월말 현재 / 단위 개사, ㎡)

구 분	입주업체수			면 적		
	계	제조업	기 타	계	제 조 업	기 타
합 계	124	112	12	1,098,595	1,043,571	55,024
제1산업단지	52	47	5	549,214	512,156	37,058
제2산업단지	72	65	7	549,381	531,415	17,966

바.입지여건

구 분	시설명	2000년 현재		시행기관	향후 확충 계 획
		제1산업단지	제2산업단지		
단지운영	단지 내 도로 (M)	5,290	7,265	한국토지공사 / 안성시	미 정
	상수도 (㎥/일)	4,000	2,500	안성시	2001년도
	공업용수 (㎥/일)	/	10,000	안성시	미 정
	전력 (KVA)	2,200	5,761	한국전력공사	미 정
	통신 (회선)	900	1,124	한국통신공사	미 정
	도시가스 (㎥/년)	12백만	10백만	(주)삼천리	미 정
	오,폐수처리(㎥/일)	3,000	12,500	한국토지공사 / 안성시	미 정
복지 및 지원기관	교육연구및복지시설	1	/		
	관리청사 (개소)	1	1	안성시	미 정
	소방파출소	1	1	안성소방서	
	우편취급소 (개소)	/	1	관리공단	미 정
	금융기관 (개소)	/	1	미양농협	미 정
	복지회관 (동)	1	/	안성시	미 정
	헬스장 (개소)	1	/	안성시	미 정
	테니스장 (면)	2	2	안성시	미 정
	농구장 (코트)	1	1	안성시	미 정
	배구장 (코트)	/	1	안성시	미 정

2.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가. 기본방향.

- ㅇ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산집법"이라한다) 제38조,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신설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업체를 입주시켜 생산활동을 지원
- ㅇ 산업용지는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으로 구획하여 관리하되, 부득이 한 경우 산업시설구역 중 일부는 산업시설 또는 물류시설로 사용할 수 있으며, 단지 내 공공및지원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입주기업체 기업활동의 효율적 지원을 도모

나. 추진방향.

- ㅇ 공장시설용도를 업종별(섬유,화학,기계 등)로 세분하여 배치 및 관리.
- ㅇ 업종별 배치에 맞는 기반시설 설치 및 확충.
- ㅇ 환경오염 및 공해업소 이전유도.

다. 산업단지 용도별 구획 계획

1) 용도별 구역면적

(단위:㎡)

구 분	총면적	산업시설 구 역	지원시설 구 역	공공시설 구 역	녹지시설 구 역	비 고
합 계	1,384,467 (100%)	1,098,595 (79.3%)	3,667 (0.3%)	278,283 (20.1%)	3,922 (0.3%)	
제1산업단지	667,998 (100%)	549,214 (82.2%)	-	118,784 (17.8%)		
제2산업단지	716,469 (100%)	549,381 (76.7%)	3,667 (0.5%)	159,499 (22.3%)	3,922 (0.5%)	

□ 산업시설구역 세부용도

(단위:㎡)

구 분	총 계	공장시설	물류시설	지식산업 시 설	폐기물처리시설	기 타
총 계	1,098,595	1,097,005		1,590		
제1산업단지	549,214	547,624		1,590		
제2산업단지	549,381	549,381				

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시설구역

산집법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나) 지원시설구역

① 산집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동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2) 건축법 시행령 부표(건축물의 용도분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운동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공공용시설

다) 공공시설구역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라) 녹지시설구역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3) 용도별 배치계획 생략

라. 업종별 배치계획

1) 업종별 배치계획

○ 안성제1산업단지

구 분 / 업종별	배치계획		2003.09월말 현재		향후계획	
	업체수	면적(㎡)	업체수	면적(㎡)	업체수	면적(㎡)
합 계	43	537,853	52	549,214		
음 . 식료품	4	105,237	6	105,237		
섬유 . 의복	3	23,309	3	23,309		
목재 . 인쇄	/	/	/	/		
종이 . 인쇄	2	27,661	4	27,661		
제약 . 화학	16	217,159	18	221,908		
비금속광물	1	5,009	1	5,009		
조립금속기계	12	140,161	15	146,773		
기 타	5	19,317	5	19,317		

○ 안성제2산업단지

구 분 / 업 종 별	배치계획		2003:09월말 현재		향후계획	
	업체수	면적(㎡)	업체수	면적(㎡)	업체수	면적(㎡)
합 계	59	526,463	72	549,381		
음 . 식료품	8	184,963	11	207,880		
섬유 . 의복	20	72,020	1	72,020		
목재 . 인쇄	2	14,680	/	/		
종이 . 인쇄	3	30,500	3	30,500		
제약 . 화학	5	48,480	21	63,161		
비금속광물	1	28,390	/	/		
조립금속기계	10	101,630	29	130,020		
기 타	10	45,800	7	45,800		

2) 입주업체 위치도 생략

마. 입주관리계획

1) 입주대상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 제조업으로 하며, 다만 다음 업종은 입주 업종에서 제외함

· 공업용수 다소비 업종 및 산업단지 입주부적격 업종 (붙임#1)

· 수질환경보전법상 특정유해물질 배출공장

○ 창고 ·보관업 등 물류 관련업

2) 입주자격

○ 산업시설구역

· 산집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및 법 시행령 제27조에서 정한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물류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 다만 기존의 물류업을 영위하는 자를 우선하여 입주

O 지원시설구역

· 산집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으로서 동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

· 건축법 시행령 별표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운동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공공용시설

3) 입주우선순위

가)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등록공장

(1) 수도권지역별 우선순위

구 분	비공업지역		공 업 지 역	
	비도시형공장	도시형공장	비도시형공장	도시형공장
과밀억제지역	1	2	5	6
자연보전권역	3	4	7	8
성장관리권역	9	10	11	12

(2) 안성관내에서 이전하는 공장

(3) 산업자원부의 고시에 의한 "첨단업종"의 공장

(4) 전년도 수출실적이 많은 공장

나) 용수 多 소비 공장 제한.

용수공급계획 범위 내에서 면적당 배분량을 초과하는 경우 상기 입주 우선순위에 의한 입주자 선정을 제한할 수 있음.

4) 입주절차

산집법 제38조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입주계약 신청에 의함.

바. 사후관리계획

1) 산업용지 관리

산집법, 산업단지 관리지침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사후관리

2) 환경관리

가) 오 · 폐수처리 계획

단 지 별	구 분	시설용량	월평균 오.폐수 처리량(㎥/월)			비 고
			합 계	폐 수	오 수	
제1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3,000㎥/일 (5,014㎥)	34,007	27,874	6,133	활 성 오니법
제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12,500㎥/일 (17,526㎥)	72,139	65,717	6,422	

○ 처리구역

- 제1산업단지 제1산업단지
- 제2산업단지 제2산업단지, 제3산업단지, 미양Ⅱ산업단지

○ 처리방법 각 공장에서 1차 처리 후 처리장으로 유입처리(활성오니법)

○ 처리기준

—제1산업단지 BOD 20mg/ℓ, COD 40mg/ℓ, SS 20mg/ℓ

—제2산업단지 BOD 30mg/ℓ, COD 40mg/ℓ, SS 40mg/ℓ

나) 산업(일반포함) 폐기물 처리계획 전량 위탁처리

3) 안전관리

산업단지방재계획에 따라 관리

사. 입주기업체 지원사업 추진계획

1) 공장설립 지원

○ 민원사무 처리관련지침에 의한 신속한 업무처리 지원

○ 원스톱 민원처리

○ 임대 및 분양,매매정보 제공(안성산업정보지 등)

○ 개별법에 의한 각종 인,허가 처리사항에 관한 정보 제공

2) 생산활동 지원

○ 공업용수 공급

· 총 용수공급량

– 제1산업단지 상수도 1일 4,000㎥

– 제2산업단지 상수도 1일 2,500㎥ 공업용수 1일 10,000㎥

○ 전력공급 지원

· 총 공급량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공급계획 수립

– 제1산업단지 2,200KVA

– 제2산업단지 5,761KVA

○ 도시가스공급 지원

· 총 공급량 (주)삼천리의 공급계획

– 제1산업단지 12백만 ㎥ / 년

– 제2산업단지 10백만 ㎥ / 년

○ 초고속 통신망 및 통신회선 확보 지원

· 통신회선 총 공급량 한국통신전력공사의 공급계획

– 제1산업단지 900회선

– 제2산업단지 1,124회선

※ 초고속 인터넷(ADSL/메가페스)통신시설 설치

○ 공단우편취급소 운영

· 취급업무:우표류 판매,우편물(국내외 등기소포, EMS), 우체국보험

→우편물은 직원이 직접수거(정기적인 순회 및 전화연락에 의거)

○ 금융기관 유치

· 미양농업협동조합 구수지소

○ 산 · 학 · 연 공동기술개발 협약 체결

· 한경대학교

— 창업보육센터지원 협약체결

— 일 시 2000년 4월 4일

— 업체수 : 9 개사

· 두원공과대학교

— 산학연협력 체제 협약체결

— 일 시 2000년 5월 4일

— 분 야 정보통신,기계 등

— 업체수 2 개사

— 실 적 산업체위탁교육학과 개설 (제2산업단지내)

· 중앙대학교

— 산학연협력협약체결

— 일 시 2001년 3월 15일

— 분 야 식,음료업종. 제약화학 등 바이오산업

— 업체수 10 개사

O 이 업종 교류 확대 지원

O 취업정보센터 운영

O e - 비지니스 환경 구축 지원

O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체계 정립

O 산집법 시행령 제57조 규정이 정한 지원사업

3) 근로자 복지후생 지원

O 산업체 위탁교육 학과 개설

각 산업체에 재직중인 고졸사원의 계속 교육기회의 제공과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특정분야의 기술수요를 전문대학의 정규과정에서 수용.

산학협력협약체결 두원공과대학교

시 기 2001년 2월

학과명 소프트웨어학과

인 원 20명

O 복지회관, 운동시설 지원

사. 기타 산업단지 운영에 관한 사항

O 아파트형 공장 산집법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관리

O 기술개발 및 산업정보제공(중소기업 무료 홈페이지구축 및 공단 내 서버구축 → 원스톱 민원처리를 위한 전산화)

O 친 환경공단 조성을 위한 방지시설 사후관리 철저

O 분양용지의 불법전매, 장기 유휴화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철저

O 공장민원처리와 관련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

O 공단가족한마음체육대회를 통한 화합구현

O 근로자 후생복지구현을 위한 지원사업계획 수립

O 안성산업정보지 발간사업

O 입주기업체 홍보비디오 제작사업

O 기타 공단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사업 발굴 및 시행

[붙임#1]

입 주 제 한 업 종

분류번호	제 한 업 종	분류번호	제 한 업 종
10119	연탄 및 기타 응집 유·무연탄 생산업	23210	원유정제처리업
10120	갈탄 및 토탄광업	23221	윤활유 및 그리스제조업
15111	도축업	23229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15119	기타 육지동물, 고기가공 및 저장처리업	23300	핵연료 가공업
15311	곡물 도정업	26231	점토벽돌, 블록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제조업
15312	곡물 제분업	26232	타일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17401	솜 및 실 염색 가공업	26311	시멘트제조업
17402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가공업	26312	석회제조업
17403	날염 가공업	26313	플라스터제조업
17404	섬유사 및 직물 호부처리업	26321	비내화 모르타르 제조업
17409	기타 섬유염색 및 정리업	26322	레미콘제조업
18201	원모피 가공처리업	26323	플라스터 제품제조업
19101	원피가공업	26324	섬유시멘트제품제조업
19102	재생 및 특수가공 가죽제조업	26325	콘크리트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제조업
20212	강화 및 재생목재 제조업	26326	콘크리트관 및 조립구조재 제조업
21110	펄프 제조업	26912	착색골재 생산업
21121	신문용지 제조업	26921	아스콘제조업
21122	인쇄 및 필기용지 제조업	26922	아스팔트 성형제품제조업
21123	크라프트지 및 상자용판지제조업	26992	비금속광물 분쇄물생산업
21129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28922	도금업
23100	코크스 및 관련제품제조업		

안성Ⅲ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1. 산업단지 개요

가. 관리기관 사단법인 안성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

나. 조 성 목 적

○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 산업재배치 정책에 부응
○ 지방화시대에 대비한 자립경제 기반 구축
○ 지역내 기존산업의 활성화로 경쟁력 제고 및 산업용지 수요충족

다. 추 진 경 위

'98. 03. 23 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경기도고시 제126호)
'98. 08. 12 개발계획 승인(경기도고시 제296호)
'99. 12. 17 실시계획 승인(경기도고시 제473호)
'01. 04. 23 관리기본계획승인(경기도고시 제65호)
'03. 06. 23 경기도 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경기도고시 제155호)

라. 분 양 현 황

(단위:㎡)

총면적	분양가능면적					조성기간	조성기관
	합 계	분 양	미 분 양				
		조 성	소 계	조 성	미조성		
396,689.1	288,605.9	286,994	1,611.9	1,611.9	-	2000~2001	안성시

마. 입 주 현 황

구 분	입주업체수			면 적 (㎡)		
	계	제조업	기 타	계	제조업	기 타
합 계	39	39	-	284,880.8	284,880.8	-
2003년 8월 현재	39	39	-	-	-	-
향 후 계 획	-	-	-	284,880.8	284,880.8	-

바. 입 지 여 건

시 설 명	총 계 획	2003년 현재	시행기관	향후확충계획
단지내 도로(m)	4,356	4,356	안성시	없음
용 수 (㎥/일)	4,285	4,285	〃	〃
전 력 (KVA)	24,535	24,535	〃	〃
통 신 (회선)	476	476	〃	〃
폐수처리(㎥/일)	3,942	3,942	〃	〃

2.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가. 관리기본계획

수도권 산업재배치 및 제조업의 정책적인 육성을 위하여 산업 용지를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으로 구획하여 관리하며 단지내 공공 및 지원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입주업체 기업활동의 효율적 지원을 도모

나. 입주 및 사후관리계획

1) 입주업종 한국표준산업 분류상의 전 제조업

※ 다만, [붙임1]의 입주제한 업종 및 수질환경보전법상 특정유해물질 배출업종은 제한함

2) 입주자격 (산업시설구역)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산집법'이라한다)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공장으로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공장

3) 입주 우선 순위

가)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등록공장

① 수도권지역별 우선순위

구 분	비 공 업 지 역		공 업 지 역	
	비도시형공장	도시형공장	비도시형공장	도시형공장
과밀억제권역	1	2	5	6
자연보전권역	3	4	7	8
성장관리권역	9	10	11	12

② 산업자원부 고시에 의한 "첨단업종"의 공장

③ 전년도 수출실적이 많은 공장

나) 기타공장

① 산업자원부 고시에 의한 첨단업종의 공장

② 도시형 업종의 공장(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참조)

다) 용수 다소비공장 제한

용수공급계획 범위 내에서 면적당 배분량을 초과하는 경우 상기 입주우선 순위에 의한 입주자 선정을 제한 할 수 있음

4) 사후관리 계획

산집법, 산업단지관리지침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의거 관리

다. 산업단지 용도별 구획계획

1) 용도별 구획면적 (단위 ㎡)

총 면 적	산 업 시설구역	지 원 시설구역	공 공 시설구역	녹 지 시설구역	비 고
396,689.1 (100%)	284,880.8 (71.8%)	3,725.1 (0.9%)	81,885.6 (20.6%)	26,197.6 (6.6%)	

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시설구역 산집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용도의 건축물

나) 공공시설구역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다) 녹지시설구역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3) 용도별 구획 생략

라. 업종별 공장배치 계획

1) 업종별 배치계획 (단위 ㎡,개사)

업 종	업 체 수	면 적	비 고
합 계	39	284,880.8	
조립금속 및 기계	13	65,937.5	
목 재 및 기 타	12	157,712.8	
음 · 식 료 품	6	35,632.9	
석 유 화 학	8	25,597.6	
자동차 연구 단지	-	-	

※ 업체수는 분양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배 치 기 준

○ 업종별 블록화 배치

○ 관련업종 인접 배치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 또는 유사업종별로 공장배치를 기준으로 하되 분양결과에 따라 산집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함

3) 업종별 배치계획 생략

마. 공공시설계획

1) 기본방향

○ 산업단지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입주기업에 효율적이고 활력 있는 생산 활동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시설을 완비

○ 산업단지내 종사자들의 여가활동 및 쾌적한 노동활동에 적합하도록 시설물 선정 설치

○ 입주업체의 생산활동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 향상 도모

2) 지원시설 설치계획

가) 폐수처리계획

○ 총 폐수발생량 : 3,942㎥/일(공업폐수 3,455㎥/일, 생활폐수 487㎥/일)

○ 안성제2지방산업단지에 입지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

나) 산업(일반포함) 폐기물 처리계획

○ 총 발생량 129.2톤/일
(생활폐기물 37.6 , 지정(슬러지)폐기물 90.3 , 소각재 1.3)

○ 처리계획
- 일반폐기물은 안성시 소각장 및 매립시설에서 처리
- 지정폐기물, 소각재중 소각량은 지구내 소각시설에서 처리
- 매립장 및 슬러지는 전량 위탁처리

다) 공업용수 공급계획

○ 총 용수량 4,285톤/일(공업용수 3,455, 생활용수 487)

○ 공업용수는 안성제2산업단지에서 인입 사용

○ 생활용수는 수도권광역상수도 5단계에서 공급

라) 전력수급계획

○ 공급계획 24,535 KVA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공급계획 수립)

마) 통신시설계획

○ 총 회선수 476회선(한국통신공사와 협의하여 계획수립)

바) 지방산업 관리를 위한 필요한 사항

○ 기술개발 및 산업정보 제공

○ 인력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지원 강화

○ 산업단지의 각종 재해방지를 위한 방재 계획 수립

〔붙임1〕

입 주 제 한 업 종

표준산업 분류번호	업 종
15111	도축업
23210	원유정제처리업
23221	윤활류 및 그리스 제조업
232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석유정제 분획물 재처리업
23300	핵연료가공업
26941	시멘트제조업
26942	석회제조업
26943	프라스터제조업
26951	비내화 모르타르제조업
26952	레미콘 제조업
26961	성형가공석재 및 석제품제조업
26993	아스팔트 제품제조업
26995	비금속광물 분쇄처리업
26996	인조흑연 및 기타 산소 제품제조업
27111	제철업
27112	합금철강 제조업
27113	제강업
271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철 및 제강업
63204	위험물품보관업
63209	기타 창고업

금산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1. 산업단지 개요

가. 관리기관 사단법인 안성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

나. 조 성 목 적

○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 산업재배치 정책에 부응

○ 지방화시대에 대비한 자립경제 기반 구축

○ 지역내 기존산업의 활성화로 경쟁력 제고 및 산업용지 수요충족

다. 추 진 경 위

· '93. 10. 18 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경기도 고시 제329호)

· '93. 12. 22 실시계획 승인(경기도고시 제438호)

· '98. 05. 23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및 준공인가 (경기도 고시 제208호)

· '98. 07. 09 : 관리기본계획 수립(경기도고시 제295호)

'01. 04. 23 관리기본계획변경(경기도고시 제65호)

· '03. 06. 23 경기도 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경기도고시 제155호)

라. 분 양 현 황

(단위:㎡)

총면적	분양가능면적					조성기간	조성기관
	합 계	분 양	미 분 양				
		조 성	소 계	조 성	미조성		
57,842.4	37,747.2	37,747.2	-	-	-	1993 ~ 1998	안성시

마. 입 주 현 황

구 분	입주업체수			면 적 (㎡)		
	계	제조업	기 타	계	제조업	기 타
합 계	4	4	-	33,661.5	33,661.5	
2003년 8월 현재	4	4	-	33,661.5	33,661.5	
향 후 계 획	-	-	-	-	-	

바. 입 지 여 건

시 설 명	총 계 획	2003년 현재	시행기관	향후확충계획
단지내 도로(m)	519.1	519.1	안성시	없음
용 수 (㎥/일)	839	839	〃	〃
전 력 (KVA)	1,834	1,834	〃	〃
통 신 (회선)	109	109	〃	〃
폐수처리(㎥/일)	767	767	〃	〃

2.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가. 관리기본계획

수도권 산업재배치 및 제조업의 정책적인 육성을 위하여 산업 용지를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으로 구획하여 관리하며 단지내 공공 및 지원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입주업체 기업활동의 효율적 지원을 도모

나. 입주 및 사후관리계획

1) 입주업종 한국표준산업 분류상의 전 제조업

※ 다만, [붙임1]의 입주제한 업종 및 수질환경보전법상 특정유해물질 배출업종은 제한함

2) 입주자격 (산업시설구역)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산입법'이라한다)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공장으로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공장

3) 입주 우선 순위

가)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등록공장

① 수도권지역별 우선순위

구 분	비 공 업 지 역		공 업 지 역	
	비도시형공장	도시형공장	비도시형공장	도시형공장
과밀억제권역		1		3
자연보전권역		2		4
성장관리권역		5		6

② 산업자원부 고시에 의한 "첨단업종"의 공장

③ 전년도 수출실적이 많은 공장

나) 기타공장

① 산업자원부 고시에 의한 첨단업종의 공장

② 도시형 업종의 공장(산집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참조)

다) 용수 다소비공장 제한

용수공급계획 범위 내에서 면적당 배분량을 초과하는 경우 상기 입주우선 순위에 의한 입주자 선정을 제한할 수 있음

4) 사후관리 계획

산집법, 산업단지관리지침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의거 관리

다. 산업단지 용도별 구획계획

1) 용도별 구획면적 (단위 ㎡)

총 면 적	산 업 시설구역	지 원 시설구역	공 공 시설구역	녹 지 시설구역	비 고
57,842.4 (100%)	33,661.5 (58.2%)	4,085.7 (7.1%)	10,955 (18.9%)	9,140.2 (15.8%)	

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시설구역 산집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용도의 건축물

나) 공공시설구역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다) 녹지시설구역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3) 용도별 구획 생략

라. 업종별 공장배치 계획

1) 업종별 배치계획

업 종	업 체 수	면 적	비 고
합 계	4	33,661.5	
나 무 , 목 재	-	-	
화 학 제 품	-	-	
재생재료가공처리	-	-	
기 타 기계 제 조	-	-	
기 타 제 조	4	33,661.5	

※ 업체수는 분양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배 치 기 준

○ 업종별 블록화 배치

○ 관련업종 인접 배치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 또는 유사업종별로 공장배치를 기준으로 하되 분양결과에 따라 산집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함

3) 업종별 배치계획 생략

마. 공공시설계획

1) 기본방향

○ 산업단지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입주기업에 효율적이고 활력 있는 생산활동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시설을 완비

○ 산업단지내 종사자들의 여가활동 및 쾌적한 노동활동에 적합하도록 시설물 선정 설치

2) 지원시설 설치계획

가) 입주업체 지원을 위한 시설

유 치 업 종	업 체 수	면 적 (㎡)	주요설치내용
합 계	1	4,086	식 당
공공지원시설	-	-	-
생산활동지원시설	1	4,086	식 당

나) 폐수처리계획

○ 총 폐수 발생량 767㎥/일

○ 단지내 발생 오·폐수는 공동폐수 처리장에서 처리 후 방류

○ 생활오수는 오수관으로 직접 연결하여 자체 정화시설에서 처리 후 방류

다) 산업(일반포함) 폐기물 처리계획

○ 총 발생량 11,719톤/년 (생활폐기물 74.4 , 산업폐기물 11,645)

○ 처리계획

일반폐기물은 안성시소각장 및 매립시설에서 위탁처리하며 특정폐기물은 전량위탁처리

라) 공업용수 공급계획

단지내 공업용수는 충주댐광역상수도 공급, 우선 지하수를 자체 개발하여 839톤/일 공동 용수공급

마) 전력수급계획

○ 공급계획 1,834 KVA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공급계획 수립)

바) 통신시설계획

○ 총회선수 109회선(한국통신공사와 협의하여 계획수립)

사) 지방산업 관리를 위한 필요한 사항

○ 기술개발 및 산업정보 제공

○ 인력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지원 강화

○ 산업단지의 각종 재해방지를 위한 방재 계획 수립

〔붙임1〕

입 주 제 한 업 종

표준산업 분류번호	업 종
23210	원유정제처리업
23221	윤활류 및 그리스 제조업
232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석유정제 분획물 재처리업
23300	핵연료가공업
26941	시멘트제조업
26942	석회제조업
26943	프라스터제조업
26951	비내화 모르타르제조업
26952	레미콘 제조업
26961	성형가공석재 및 석제품제조업
26993	아스팔트제품 제조업
26995	비금속광물 분쇄처리업
26996	인조흑연 및 기타 산소제품제조업
27111	제철업
27112	합금철강 제조업
27113	제강업
271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철 및 제강업
63204	위험물품보관업
63209	기타 창고업

덕산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1. 산업단지 개요

가. 관리기관 : 사단법인 안성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

나. 조 성 목 적

○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 산업재배치 정책에 부응

○ 지방화시대에 대비한 자립경제 기반 구축

○ 지역내 기존산업의 활성화로 경쟁력 제고 및 산업용지 수요충족

다. 추 진 경 위

· '93. 10. 09 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고시 (경기도고시 제330호)

· '93. 12. 14 실시계획 승인(건교부고시 제439호)

· '98. 03. 23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 '98. 05. 18 준공인가

· '98. 07. 09 관리기본계획 수립(경기도고시 제295호)

'01. 04. 23 관리기본계획변경(경기도고시 제65호)

'03. 06. 23 경기도 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경기도고시 제155호)

라. 분 양 현 황

(단위:㎡)

총면적	분양가능면적					조성기간	조성기관
	합 계	분 양	미 분 양				
		조 성	소 계	조 성	미조성		
59,238.6	48,331.7	48,331.7	-	-	-	1993 ~ 1998	안성시

마. 입 주 현 황

구 분	입주업체수			면 적 (㎡)		
	계	제조업	기 타	계	제조업	기 타
합 계	12	12	-	48,331.7	48,331.7	-
2003년 8월 현재	12	12	-	48,331.7	48,331.7	-
향 후 계 획	-	-	-	-	-	-

바. 입 지 여 건

구 분	총 계 획	2003년 현재	시행기관	향후확충계획
단지내 도로(m)	691	691	안성시	없음
용 수 (㎥/일)	195	195	〃	〃
전 력 (KVA)	551	551	〃	〃
통 신 (회선)	107	107	〃	〃
폐수처리(㎥/일)	169	169	〃	〃

2.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가. 관리기본계획

수도권 산업재배치 및 제조업의 정책적인 육성을 위하여 산업 용지를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으로 구획하여 관리하며 단지내 공공 및 지원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입주업체 기업활동의 효율적 지원을 도모

나. 입주 및 사후관리계획

1) 입주업종 한국표준산업 분류상의 전 제조업

※ 다만, [붙임1]의 입주제한 업종 및 수질환경보전법상 특정유해물질 배출업종은 제한함

2) 입주자격 (산업시설구역)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산집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공장으로 동법시행령 제27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공장

3) 입주 우선 순위

가)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등록공장

① 수도권지역별 우선순위

구 분	비 공 업 지 역		공 업 지 역	
	비도시형공장	도시형공장	비도시형공장	도시형공장
과밀억제권역		1		4
자연보전권역		2		5
성장관리권역		3		6

② 산업자원부 고시에 의한 "첨단업종"의 공장

③ 전년도 수출실적이 많은 공장

나) 기타공장

① 산업자원부 고시에 의한 첨단업종의 공장

② 도시형 업종의 공장(산집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참조)

다) 용수 다소비공장 제한

용수공급계획 범위 내에서 면적당 배분량을 초과하는 경우 상기 입주우선 순위에 의한 입주자 선정을 제한할 수 있음

4) 사후관리 계획

산집법, 산업단지관리지침과 산업단지관리기본 계획에 의거 관리

다. 산업단지 용도별 구획계획

1) 용도별 구획면적

(단위 ㎡)

총 면 적	산 업 시설구역	지 원 시설구역	공 공 시설구역	녹 지 시설구역	비 고
59,238.6 (100%)	48,331.7 (81.6%)	-	7,216 (12.2%)	3,609.9 (6.2%)	

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시설구역 산집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용도의 건축물

나) 공공시설구역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다) 녹지시설구역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3) 용도별 구획 생략

라. 업종별 공장배치 계획

1) 업종별 배치계획

업 종	업 체 수	면 적	비 고
합 계	12	48,331.7	
음 · 식 료 품	3	11,921	
첨 단 업 종	-	-	
나 무 업 종	-	-	
기 계 업 종	2	11,512.4	
기 타 제 조 업	7	24,898.3	

※ 업체수는 분양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배 치 기 준

○ 업종별 블록화 배치

○ 관련업종 인접 배치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 또는 유사업종별로 공장배치를 기준으로하되 분양결과에 따라 산집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함

3) 업종별 배치계획 생략

마. 공공시설계획

1) 기본방향

○ 산업단지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입주 기업에 효율적이고 활력 있는 생산활동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시설을 완비

○ 산업단지내 종사자들의 여가활동 및 쾌적한 노동활동에 적합하도록 시설물 선정 설치

2) 지원시설 설치계획

가) 폐수처리계획

○ 총 폐수발생량 169㎥/일 (공업용수 100㎥/일, 생활용수 69 ㎥/일)

○ 폐수발생업체에 대한 분양불가

○ 생활오수처리 발생업체 자체처리시설 설치처리

나) 산업(일반포함) 폐기물 처리계획

○ 총 발생량 4,419톤/년(생활폐기물 72, 산업폐기물 4,347)

○ 처리계획

일반폐기물은 안성시 쓰레기 매립장에서 위탁처리하며 특정폐기물은 전량 위탁처리

다) 공업용수 공급계획

○ 총용수량 195톤/일(공업용수 120톤/일, 생활용수 75톤/일)

○ 단지내 공업용수는 광역상수도 공급전 우선 지하수를 개발하여 용수공급

라) 전력수급계획

○ 공급계획 551 KVA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공급계획 수립)

마) 통신시설계획

○ 총 회선수 107회선(한국통신공사와 협의하여 계획수립)

바) 지방산업 관리를 위한 필요한 사항

○ 기술개발 및 산업정보 제공

○ 인력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지원 강화

○ 산업단지의 각종 재해방지를 위한 방재 계획 수립

[붙임]

산업단지 입주 제한업종

표준산업 분류번호	업 종
15111	도축업
23210	원유정제처리업
23221	윤활류 및 그리스 제조업
232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석유정제 분획물 재처리업
23300	핵연료가공업
26941	시멘트제조업
26942	석회제조업
26943	프라스터제조업
26951	비내화 모르타르제조업
26952	레미콘 제조업
26961	성형가공석재 및 석제품제조업
26993	아스팔트 제품제조업
26995	비금속광물 분쇄처리업
26996	인조흑연 및 기타 산소제품 제조업
27111	제철업
27112	합금철강 제조업
27113	제강업
271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철 및 제강업
63204	위험물품보관업
63209	기타 창고업

장원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1. 산업단지 개요

가. 관리기관 사단법인 안성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

나. 조 성 목 적

○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 산업재배치 정책에 부응

○ 지방화시대에 대비한 자립경제 기반 구축

○ 지역내 기존산업의 활성화로 경쟁력 제고 및 산업용지 수요충족

다. 추 진 경 위

· '94. 01. 29 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경기도공시 제23호)

'94. 05. 04 실시계획 승인(경기도고시 제122호)

'98. 04. 17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경기도고시 제22호)

'98. 05. 11 준공인가(경기도고시 제184호)

· '98. 07. 09 관리기본계획 수립(경기도고시 제295호)

'01. 04. 23 관리기본계획변경(경기도고시 제65호)

· '03. 06. 23 경기도 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경기도고시 제155호)

라. 분 양 현 황

(단위 ㎡)

총면적	분양가능면적					조성기간	조성기관
	합 계	분 양	미 분 양				
		조 성	소 계	조 성	미조성		
59,500	46,909.5	46,909.5	-	-	-	1996 ~ 1998	안성시

마. 입 주 현 황

구 분	입주업체수			면 적 (㎡)		
	계	제조업	기 타	계	제조업	기 타
합 계	11	11	-	46,909.5	46,909.5	
2003년 8월 현재	11	11	-	46,909.5	46,909.5	
향 후 계 획	-	-	-	-	-	

바. 입 지 여 건

구 분	총 계 획	2001년 현재	시행기관	향후확충계획
단지내 도로(m)	730	730	안성시	없음
용 수 (㎥/일)	123	123	〃	〃
전 력 (KVA)	486	486	〃	〃
통 신 (회선)	123	123	〃	〃
폐수처리(㎥/일)	113	113	〃	〃

2.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가. 관리기본계획

수도권 산업재배치 및 제조업의 정책적인 육성을 위하여 산업 용지를 산업시설구역,지원시설구역,공공시설구역,녹지구역으로 구획하여 관리하며 단지내 공공 및 지원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입주업체 기업활동의 효율적 지원을 도모

나. 입주 및 사후관리계획

1) 입주업종 한국표준산업 분류상의 전 제조업

※ 다만, [붙임1]의 입주제한 업종 및 수질환경보전법상 특정유해물질 배출업종은 제한함

2) 입주자격 (산업시설구역)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산집법' 이라 한다)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공장으로 동법시행령 제27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공장

3) 입주 우선 순위

가)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등록공장

① 수도권지역별 우선순위

구 분	비 공 업 지 역		공 업 지 역	
	비도시형공장	도시형공장	비도시형공장	도시형공장
과밀억제권역		1		3
자연보전권역		2		4
성장관리권역		5		6

② 산업자원부 고시에 의한 "첨단업종"의 공장

③ 전년도 수출실적이 많은 공장

나) 기타공장

① 산업자원부 고시에 의한 첨단업종의 공장

② 도시형 업종의 공장(산집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참조)

다) 용수 다소비 공장 제한

용수공급계획 범위 내에서 면적당 배분량을 초과하는 경우 상기 입주 우선순위에 의한 입주자 선정을 제한할 수 있음

4) 사후관리 계획

산집법, 산업단지관리지침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의거 관리

다. 산업단지 용도별 구획계획

1) 용도별 구획면적

(단위 ㎡)

총 면 적	산 업 시설구역	지 원 시설구역	공 공 시설구역	녹 지 시설구역	비 고
59,500 (100%)	46,909.5 (78.8%)	-	7,056.5 (11.9%)	5,534 (9.3%)	

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시설구역 산집법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용도의 건축물

나) 공공시설구역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다) 녹지시설구역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3) 용도별 구획 생략

라. 업종별 공장배치 계획

1) 업종별 배치계획

업 종	업 체 수	면 적	비 고
합 계	11	46,909.5	
음 · 식 료 품	1	4,269.1	
첨 단 업 종	1	2,975.7	
나 무 업 종	-	-	
기 계 업 종	3	22,712.7	
기 타 제 조 업	6	16,952	

※ 업체수는 분양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배 치 기 준

○ 업종별 블록화 배치

○ 관련업종 인접 배치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 또는 유사업종별로 공장배치를 기준으로 하되 분양결과에 따라 산집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함

3) 업종별 배치계획 생략

마. 공공시설계획

1) 기본방향

○ 산업단지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입주기업에 효율적이고 활력 있는 생산활동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시설을 완비

○ 산업단지내 종사자들의 여가활동 및 쾌적한 노동활동에 적합하도록 시설물 선정 설치

2) 지원시설 설치계획

가) 폐수처리계획

○ 총 폐수발생량 113㎥/일(공업용수 46㎥/일, 생활용수 67㎥/일)

○ 폐수발생업체는 입주불가

○ 생활오수는 오수관으로 직접 연결하여 자체 정화 시설에서 처리 후 방류

나) 폐기물 처리계획

○ 총 발생량 7,986.3톤/년(생활폐기물 69.9 , 산업폐기물 7,916.4)

○ 처리계획

- 폐기물의 분리수법을 통하여 발생량을 감소시키고 재활용 가능물질 분류
- 일반폐기물은 안성시위생처리장에 위탁처리하며 지정폐기물은 전량위탁 처리

다) 공업용수 공급계획

○ 총용수량 123톤/일(공업용수 50톤/일, 생활용수 73톤/일)

○ 단지 내 공업용수 및 생활용수는 지하수를 자체 개발하여 공급

라) 전력수급계획

○ 공급계획 486 KVA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공급계획 수립)

마) 통신시설계획

○ 총 회선수 123회선(한국통신공사와 협의하여 계획수립)

바) 지방산업 관리를 위한 필요한 사항

○ 기술개발 및 산업정보 제공

○ 인력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지원 강화

○ 산업단지의 각종 재해방지를 위한 방재 계획 수립

[붙임]

산업단지 입주 제한업종

표준산업 분류번호	업 종
15111	도축업
23210	원유정제처리업
23221	윤활류 및 그리스 제조업
232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석유정제 분획물 재처리업
23300	핵연료가공업
26941	시멘트제조업
26942	석회제조업
26943	프라스터제조업
26951	비내화 모르타르제조업
26952	레미콘 제조업
26961	성형가공석재 및 석제품제조업
26993	아스팔트 제품제조업
26995	비금속광물 분쇄처리업
26996	인조흑연 및 기타 산소제품 제조업
27111	제철업
27112	합금철강 제조업
27113	제강업
271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철 및 제강업
63204	위험물품보관업
63209	기타 창고업

두교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1. 산업단지 개요

가. 관리기관 사단법인 안성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

나. 조 성 목 적

○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 산업재배치 정책에 부응
○ 지방화시대에 대비한 자립경제 기반 구축
○ 지역내 기존산업의 활성화로 경쟁력 제고 및 산업용지 수요충족

다. 추 진 경 위

'94. 01. 29 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경기도고시 제22호)
· '94. 05. 04 실시계획 승인(경기도고시 제121호)
· '96. 06. 15 개발계획 변경승인(경기도고시 제129호)
· '96. 12. 20 실시계획 변경승인(경기도고시 제357호)
'98. 05. 29 지정(개발계획), 실시계획 변경승인 및 준공인가
· '98. 07. 09 관리기본계획 수립(경기도고시 제295호)
'01. 04. 23 관리기본계획변경(경기도고시 제65호)
· '03. 06. 23 경기도 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경기도고시 제155호)

라. 분 양 현 황

(단위:㎡)

총면적	분양가능면적					조성기간	조성기관
	합 계	분 양	미 분 양				
		조 성	소 계	조 성	미조성		
56,018	48,314.1	48,314.1	-	-	-	1993 ~ 1998	안성시

마. 입 주 현 황

구 분	입주업체수			면 적 (㎡)		
	계	제조업	기 타	계	제조업	기 타
합 계	2	2	-	48,314.1	48,314.1	
2003년 8월 현재	2	2	-	48,314.1	48,314.1	
향 후 계 획	-	-	-	-	-	

바. 입 지 여 건

구 분	총 계 획	2003년 현재	시행기관	향후확충계획
단지내 도로(m)	226	226	안성시	없음
용 수 (㎥/일)	210.3	210.3	〃	〃
전 력 (KVA)	109	109	〃	〃
통 신 (회선)	39	39	〃	〃
폐수처리(㎥/일)	193.4	193.4	〃	〃

2.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가. 관리기본계획

수도권 산업재배치 및 제조업의 정책적인 육성을 위하여 산업 용지를 산업시설구역,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으로 구획하여 관리하며 단지내 공공 및 지원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입주업체 기업활동의 효율적 지원을 도모

나. 입주 및 사후관리계획

1) 입주업종 한국표준산업 분류상의 전 제조업

※ 다만, [붙임1]의 입주제한 업종 및 수질환경보전법상 특정유해물질 배출업종은 제한함

2) 입주자격 (산업시설구역)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산집법' 이라한다)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공장으로 동법시행령 제27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공장

3) 입주 우선 순위

가)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등록공장

① 수도권지역별 우선순위

구 분	비 공 업 지 역		공 업 지 역	
	비도시형공장	도시형공장	비도시형공장	도시형공장
과밀억제권역	1	2	5	6
자연보전권역	3	4	7	8
성장관리권역	9	10	11	12

② 산업자원부 고시에 의한 "첨단업종"의 공장

③ 전년도 수출실적이 많은 공장

나) 기타공장

① 산업자원부 고시에 의한 첨단업종의 공장

② 도시형 업종의 공장(산집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참조)

다) 용수 다소비공장 제한

용수공급계획 범위 내에서 면적당 배분량을 초과하는 경우 상기 입주우선순위에 의한 입주자 선정을 제한할 수 있음

4) 사후관리 계획

산집법, 산업단지관리지침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의거 관리

다. 산업단지 용도별 구획계획

1) 용도별 구획면적

(단위 ㎡)

총 면 적	산 업 시설구역	지 원 시설구역	공 공 시설구역	녹 지 시설구역	비 고
56,018 (100%)	48,314.1 (86.3%)	-	2,603.2 (4.6%)	5,100.7 (9.1%)	

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시설구역 산집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용도의 건축물

나) 공공시설구역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다) 녹지시설구역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3) 용도별 구획 생략

라. 업종별 공장배치 계획

1) 업종별 배치계획

(단위: ㎡,개사)

업 종	업 체 수	면 적	비 고
합 계	2	48,314.1	
의 약 품 제 조	1	27,618.7	
식 품 제 조	1	20,695.4	

※ 업체수는 분양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배 치 기 준

○ 업종별 블록화 배치

○ 관련업종 인접 배치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 또는 유사업종별로 공장배치를 기준으로 하되 분양결과에 따라 산집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함

3) 업종별 배치계획 생략

마. 공공시설계획

1) 기본방향

○ 산업단지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입주기업에 효율적이고 활력 있는 생산활동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시설을 완비

○ 산업단지내 종사자들의 여가활동 및 쾌적한 노동활동에 적합하도록 시설물 선정 설치

○ 입주업체의 생산활동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 향상 도모

2) 지원시설 설치계획

가) 폐수처리계획

○ 총 폐수량 193.4㎥/일(공업용수 157.5㎥/일, 생활용수 35.9㎥/일)

○ 각 공장자체는 완전 처리 후 방류하고

○ 생활오수는 오수관으로 직접 연결하여 자체 정화 시설에서 처리 후 방류

나) 산업(일반포함) 폐기물 처리계획

○ 총 발생량 160.9톤/년(생활폐기물 37.2 , 산업폐기물 123.7)

○ 처리계획

- 폐기물의 분리수법을 통하여 발생량을 감소시키고 재활용 가능물질 분류
- 일반폐기물은 안성시 처리장에 위탁처리하며 특정폐기물은 전량 위탁처리

다) 공업용수 공급계획

○ 총 용수량 210.3톤/일(공업용수 171.2톤/일, 생활용수 39.1톤/일)

○ 단지내 공업용수 및 생활용수는 지하수를 개발하여 용수공급

라) 전력수급계획

○ 공급계획 109 KVA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공급계획 수립)

마) 통신시설계획

○ 총 회선수 39회선(한국통신공사와 협의하여 계획수립)

바) 지방산업 관리를 위한 필요한 사항

○ 기술개발 및 산업정보 제공

○ 인력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지원 강화

○ 산업단지의 각종 재해방지를 위한 방재 계획 수립

[붙임]

산업단지 입주 제한업종

표준산업 분류번호	업 종
15111	도축업
23210	원유정제처리업
23221	윤활류 및 그리스 제조업
232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석유정제 분획물 재처리업
23300	핵연료가공업
26941	시멘트제조업
26942	석회제조업
26943	프라스터제조업
26951	비내화 모르타르제조업
26952	레미콘 제조업
26961	성형가공석재 및 석제품제조업
26993	아스팔트제품제조업
26995	비금속광물 분쇄처리업
26996	인조흑연 및 기타 산소제품 제조업
27111	제철업
27112	합금철강 제조업
27113	제강업
271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철 및 제강업
63204	위험물품보관업
63209	기타 창고업

공도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1. 산업단지 개요

가. 관리기관 사단법인 안성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

나. 조 성 목 적

○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 산업재배치 정책에 부응

○ 지방화시대에 대비한 자립경제 기반 구축

○ 지역내 기존산업의 활성화로 경쟁력 제고 및 산업용지 수요충족

다. 추 진 경 위

· '92. 06. 03 수도권정비 심의 의결

· '94. 01. 29 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고시(경기도고시 제21호)

· '94. 05. 04 실시계획 승인(경기도고시 제120호)

'94. 08. 16 개발계획 변경 승인(경기도고시 제233호)

· '94. 09. 27 실시계획승인(경기도고시 제269호)

· '96. 04. 01 준공인가(경기도고시 제66호)

· '98. 07. 09 관리기본계획 수립(경기도고시 제295호)

· '01. 04. 23 관리기본계획변경(경기도고시 제65호)

· '03. 06. 23 경기도 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경기도고시 제155호)

라. 분 양 현 황

(단위:㎡)

총면적	분양가능면적					조성기간	조성기관
	합 계	분 양	미 분 양				
		조 성	소 계	조 성	미조성		
69,177.8	62,830.9	62.830.9	-	-	-	1994~1995	안성시

마. 입 주 현 황

구 분	입주업체수			면 적 (㎡)		
	계	제조업	기 타	계	제조업	기 타
합 계	2	2	-	62,830.9	62,830.9	-
2003년 8월 현재	2	2	-	62,830.9	62,830.9	-
향 후 계 획	-	-	-	-	-	-

바. 입 지 여 건

시 설 명	총 계 획	2003년 현재	시행기관	향후확충계획
단지내 도로(m)	336	336	안성시	없음
용 수 (㎥/일)	49	49	〃	〃
전 력 (KVA)	14,628	14,628	〃	〃
통 신 (회선)	112	112	〃	〃
폐수처리(㎥/일)	708	708	〃	〃

2.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가. 관리기본계획

수도권 산업재배치 및 제조업의 정책적인 육성을 위하여 산업 용지를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으로 구획하여 관리하며 단지내 공공 및 지원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입주업체 기업활동의 효율적 지원을 도모

나. 입주 및 사후관리계획

1) 입주업종 한국표준산업 분류상의 전 제조업

※ 다만, [붙임1]의 입주제한 업종 및 수질환경보전법상 특정유해물질 배출업종은 제한함

2) 입주자격 (산업시설구역)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산집법'이라한다)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공장으로 동법시행령 제27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공장

3) 입주 우선 순위

가)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등록공장

① 수도권지역별 우선순위

구 분	비 공 업 지 역		공 업 지 역	
	비도시형공장	도시형공장	비도시형공장	도시형공장
과밀억제권역	1	2	5	6
자연보전권역	3	4	7	8
성장관리권역	9	10	11	12

② 산업자원부 고시에 의한 "첨단업종"의 공장

③ 전년도 수출실적이 많은 공장

나) 기타공장

① 산업자원부 고시에 의한 첨단업종의 공장

② 도시형 업종의 공장(산집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참조)

다) 용수 다소비 공장 제한

용수공급계획 범위 내에서 면적당 배분량을 초과하는 경우 상기 입주 우선순위에 의한 입주자 선정을 제한 할 수 있음

4) 사후관리 계획

산집법, 산업단지관리지침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의거 관리

다. 산업단지 용도별 구획계획

1) 용도별 구획면적

(단위 ㎡)

총 면 적	산 업 시설구역	지 원 시설구역	공 공 시설구역	녹 지 시설구역	비 고
69,177.8 (100%)	62,830.9 (90.8%)	-	3,565.7 (5.2%)	2,731.2 (4.0%)	

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시설구역 산집법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용도의 건축물

나) 공공시설구역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다) 녹지시설구역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3) 용도별 구획 생략

라. 업종별 공장배치 계획

1) 업종별 배치계획

(단위: ㎡,개사)

업 종	업 체 수	면 적	비 고
합 계	2	62,830.9	
금 속 가 구	1	3,305.9	
목 제 가 구	1	59,525.0	

※ 업체수는 분양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배 치 기 준

○ 업종별 블록화 배치

○ 관련업종 인접 배치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 또는 유사업종별로 공장배치를 기준으로 하되 분양결과에 따라 산집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함

3) 업종별 배치계획 생략

마. 공공시설계획

1) 기본방향

○ 산업단지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입주기업에 효율적이고 활력 있는 생산활동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시설을 완비

○ 산업단지내 종사자들의 여가활동 및 쾌적한 노동활동에 적합하도록 시설물 선정 설치

○ 입주업체의 생산활동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 향상 도모

2) 지원시설 설치계획

가) 폐수처리계획

○ 총 폐수발생량 708㎥/일(공업용수 609㎥/일, 생활용수 99㎥/일)

○ 각 공장자체에서 완전 처리 후 방류하고

○ 생활오수는 오수관으로 직접 연결하여 자체 정화 시설에서 처리 후 방류

나) 폐기물 처리계획

○ 총 발생량 3,420.2톤/년(생활폐기물 3,404 , 산업폐기물 16.2)

○ 처리계획

일반폐기물은 안성시 쓰레기 매립장에 위탁 처리하며,특정폐기물은 전량 위탁처리

다) 공업용수 공급계획

○ 광역상수도 4단계에서 공급(공업용수 49톤/일)이용

라) 전력수급계획

○ 공급계획용량 14,628 KVA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공급계획 수립)

마) 통신시설계획

○ 총회선수 112회선(한국통신공사와 협의하여 계획수립)

바) 지방산업 관리를 위한 필요한 사항

○ 기술개발 및 산업정보 제공

○ 인력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지원 강화

○ 산업단지의 각종 재해방지를 위한 방재 계획 수립

[붙임]

산업단지 입주 제한업종

표준산업 분류번호	업 종
15111	도축업
23210	원유정제처리업
23221	윤활류 및 그리스 제조업
232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석유정제 분획물 재처리업
23300	핵연료가공업
26941	시멘트제조업
26942	석회제조업
26943	프라스터제조업
26951	비내화 모르타르제조업
26952	레미콘 제조업
26961	성형가공석재 및 석제품제조업
26993	아스팔트제품 제조업
26995	비금속광물 분쇄처리업
26996	인조흑연 및 기타 산소제품 제조업
27111	제철업
27112	합금철강 제조업
27113	제강업
271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철 및 제강업
63204	위험물품보관업
63209	기타 창고업

가율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1. 산업단지 개요

가. 관리기관 사단법인 안성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

나. 조 성 목 적

○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 산업재배치 정책에 부응

○ 지방화시대에 대비한 자립경제 기반 구축

○ 지역내 기존산업의 활성화로 경쟁력 제고 및 산업용지 수요충족

다. 추 진 경 위

· '93. 10. 09 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고시 (경기도고시 제328호)

· '93. 12. 22 실시계획 승인(경기도고시 제436호)

· '94. 11. 08 개발계획 변경승인(경기도고시 제329호)

· '94. 12. 22 실시계획 변경승인(경기도고시 제370호)

· '96. 03. 14 관리기본계획 수립(경기도고시 제43호)

'98. 07. 09 관리기본계획 수립(경기도고시 제295호)

· '00. 08. 17 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경기도고시 제208호)

· '01. 04. 23 관리기본계획변경(경기도고시 제65호)

· '03. 06. 23 경기도 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경기도고시 제155호)

라. 분 양 현 황

(단위 ·㎡)

총면적	분양가능면적					조성기간	조성기관
	합 계	분 양	미 분 양				
		조 성	소 계	조 성	미조성		
57,892.5	49,943.7	49,934.7	-	-	-	1994 ~ 1995	안성시

마. 입 주 현 황

구 분	입주업체수			면 적 (㎡)		
	계	제조업	기 타	계	제조업	기 타
합 계	2	2	-	49,934.7	49,934.7	
2003년 8월 현재	2	2	-	49,934.7	49,934.7	
향 후 계 획	-	-	-	-	-	

바. 입 지 여 건

시 설 명	총 계 획	2003년 현재	시행기관	향후확충계획
단지내 도로(m)	370	370	안성시	없음
용 수 (㎥/일)	273	273	〃	〃
전 력 (KVA)	9,991	9,991	〃	〃
통 신 (회선)	62	62	〃	〃
폐수처리(㎥/일)	253	253	〃	〃

2.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가. 관리기본계획

수도권 산업재배치 및 제조업의 정책적인 육성을 위하여 산업 용지를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으로 구획하여 관리하며 단지내 공공 및 지원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입주업체 기업활동의 효율적 지원을 도모

나. 입주 및 사후관리계획

1) 입주업종 한국표준산업 분류상의 전 제조업

※ 다만, [붙임1]의 입주제한 업종 및 수질환경보전법상 특정유해물질 배출업종은 제한함

2) 입주자격 (산업시설구역)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산집법' 이라한다)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공장으로 동법시행령 제27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공장

3) 입주 우선 순위

가)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등록공장

① 수도권지역별 우선순위

구 분	비 공 업 지 역		공 업 지 역	
	비도시형공장	도시형공장	비도시형공장	도시형공장
과밀억제권역	1	2	5	6
자연보전권역	3	4	7	8
성장관리권역	9	10	11	12

② 산업자원부 고시에 의한 "첨단업종"의 공장

③ 전년도 수출실적이 많은 공장

나) 기타공장

① 산업자원부 고시에 의한 첨단업종의 공장

② 도시형 업종의 공장(산집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참조)

다) 용수 다소비 공장 제한

용수공급계획 범위 내에서 면적당 배분량을 초과하는 경우 상기 입주우선 순위에 의한 입주자 선정을 제한할 수 있음

4) 사후관리 계획

산집법, 산업단지관리지침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의거 관리

다. 산업단지 용도별 구획계획

1) 용도별 구획면적

(단위 : ㎡)

총 면 적	산 업 시설구역	지 원 시설구역	공 공 시설구역	녹 지 시설구역	비 고
57,892.5 (100%)	49,934.7 (86.2%)	-	4,022.8 (6.9%)	3,935.0 (6.8%)	

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시설구역 산집법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용도의 건축물

나) 공공시설구역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다) 녹지시설구역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3) 용도별 구획 생략

라. 업종별 공장배치 계획

1) 업종별 배치계획

(단위 ㎡,개사)

업 종	업 체 수	면 적	비 고
합 계	2	49,934.7	
나 무 · 목 재	-	-	
화 학 제 품	-	-	
재생재료가공처리	-	-	
기 타 기계 제 조	-	-	
기 타 제 조	2	49,934.7	

※ 업체수는 분양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배 치 기 준

○ 업종별 블록화 배치

○ 관련업종 인접 배치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 또는 유사업종별로 공장배치를 기준으로 하되 분양결과에 따라 산집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함

3) 용도별 구획 생략

마. 공공시설계획

1) 기본방향

○ 산업단지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입주기업에 효율적이고 활력 있는 생산활동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시설을 완비

○ 산업단지내 종사자들의 여가활동 및 쾌적한 노동활동에 적합하도록 시설물 선정 설치

○ 입주업체의 생산활동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 향상도모

2) 지원시설 설치계획

가) 폐수처리계획

○ 총 폐수발생량 253㎥/일(공업폐수 197㎥/일, 생활폐수 66㎥/일)

○ 각 공장자체에서 완전 처리 후 방류하고

○ 생활오수는 오수관으로 직접 연결하여 자체 정화 시설에서 처리 후 방류

나) 산업(일반포함)폐기물 처리계획

○ 총 발생량 5,609.5톤/년 (생활폐기물 66.3 , 공업폐기물 5,543.2)

○ 처리계획

일반폐기물은 안성시 쓰레기 매립장에 위탁처리하며 특정폐기물은 전량 위탁처리

다) 공업용수 공급계획

단지내 공업용수는 자체 지하수를 개발하여 용수공급(총수량 273톤/일) (공업용수 202톤/일 , 생활용수 71톤/일)

라) 전력수급계획

공급계획용량 9,991 KVA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공급계획 수립)

마) 통신시설계획

총 회선수 62회선(한국통신공사와 협의하여 계획수립)

바) 지방산업 관리를 위한 필요한 사항

○ 기술개발 및 산업정보 제공

○ 인력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지원 강화

○ 산업단지의 각종 재해방지를 위한 방재 계획 수립

[붙임]

산업단지 입주 제한업종

표준산업 분류번호	업 종
15111	도축업
23210	원유정제처리업
23221	윤활류 및 그리스 제조업
232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석유정제 분획물 재처리업
23300	핵연료가공업
26941	시멘트제조업
26942	석회제조업
26943	프라스터제조업
26951	비내화 모르타르제조업
26952	레미콘 제조업
26961	성형가공석재 및 석제품제조업
26993	아스팔트제품 제조업
26995	비금속광물 분쇄처리업
26996	인조흑연 및 기타 산소제품 제조업
27111	제철업
27112	합금철강 제조업
27113	제강업
271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철 및 제강업
63204	위험물품보관업
63209	기타 창고업

동항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1.산업단지 개요

가. 관리기관 사단법인 안성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

나. 조 성 목 적

○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 산업재배치 정책에 부응

○ 지방화시대에 대비한 자립경제 기반 구축

○ 지역내 기존산업의 활성화로 경쟁력 제고 및 산업용지 수요충족

다. 추 진 경 위

· '92. 06. 03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93. 10. 09 단지 지정 및 개발기본계획 승인(경기도고시 제331호)

· '93. 12. 14 실시계획 승인(경기도고시 제10호)

'95. 07. 11 개발계획변경(경기도고시 제254호)

'95. 11. 24 실시계획 변경인(경기도고시 제452호)

'96. 12. 31 준공인가(경기도고시 제12호)

· '98. 07. 09 관리기본계획 수립(경기도고시 제295호)

· '00. 06. 17 관리기본계획 변경(경기도고시 제162호)

· '01. 04. 23 관리기본계획변경(경기도고시 제65호)

'03. 06. 23 경기도 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경기도고시 제155호)

라. 분 양 현 황

(단위:㎡)

총면적	분양가능면적					조성기간	조성기관
	합 계	분 양	미 분 양				
		조 성	소 계	조 성	미조성		
57,243.4	47,352.1	47,352.1	-	-	-	1993 ~ 1996	안성시

마. 입 주 현 황

구 분	입주업체수			면 적 (㎡)		
	계	제조업	기 타	계	제조업	기 타
합 계	9	9	-	47,352.1	47,352.1	-
2003년 8월 현재	9	9	-	47,352.1	47,352.1	-
향 후 계 획	-	-	-	-	-	-

바. 입 지 여 건

구 분	총 계 획	2003년 현재	시행기관	향후확충계획
단지내 도로(m)	552	552	안성시	없음
용 수 (㎥/일)	227	227	〃	〃
전 력 (KVA)	97	97	〃	〃
통 신 (회선)	157	157	〃	〃
폐수처리(㎥/일)	181	181	〃	〃

2.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가. 관리기본계획

수도권 산업재배치 및 제조업의 정책적인 육성을 위하여 산업 용지를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으로 구획하여 관리하며 단지내 공공 및 지원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입주업체 기업활동의 효율적 지원을 도모

나. 입주 및 사후관리계획

1) 입주업종 비금속광물, 조립금속, 기계, 전기 및 전자기기, 운수장비 (중분류 28-25) 업종을 우선유치

※ 사업준공인가('96.12.31)이후 5년이 경과되어도 입주가 안될 경우 전 제조업종으로 하며 단 용수 다소비업종, 공해업종(염색,주물,도금,염·안료,피혁 등) 및 붙임 입주제한업종은 제외

2) 입주자격 (산업시설구역)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산집법' 이라한다)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공장으로 동법시행령 제27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공장

3) 입주 우선 순위

가)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등록공장

① 수도권지역별 우선순위

구 분	비 공 업 지 역		공 업 지 역	
	비도시형공장	도시형공장	비도시형공장	도시형공장
과밀억제권역		1		4
자연보전권역		2		5
성장관리권역		3		6

② 산업자원부 고시에 의한 "첨단업종"의 공장

③ 전년도 수출실적이 많은 공장

나) 기타공장

① 산업자원부 고시에 의한 첨단업종의 공장

② 도시형 업종의 공장(산집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참조)

다) 용수 다소비공장 제한

용수공급계획 범위 내에서 면적당 배분량을 초과하는 경우 상기 입주우선 순위에 의한 입주자 선정을 제한 할 수 있음

4) 사후관리 계획

산집법, 산업단지관리지침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의거 관리

다. 산업단지 용도별 구획계획

1) 용도별 구획면적

(단위 ㎡)

총 면 적	산 업 시설구역	지 원 시설구역	공 공 시설구역	녹 지 시설구역	비 고
57,243.4 (100%)	43,164.4 (75.4%)	-	5,441.8 (9.5%)	4,449.5 (7.8%)	

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시설구역 산집법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용도의 건축물

나) 공공시설구역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다) 녹지시설구역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3) 용도별 구획 생략

라. 업종별 공장배치 계획

1) 업종별 배치계획

(단위 ㎡,개사)

업 종	업 체 수	면 적	비 고
합 계	10	47,352.1	
조립금속	-	-	
기계	-	-	
전기및전자기기	10	47,352.1	
운수장비	-	-	
기타제조업	-	-	

※ 업체수는 분양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배 치 기 준

○ 업종별 블록화 배치

○ 관련업종 인접 배치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 또는 유사업종별로 공장배치를 기준으로 하되 분양결과에 따라 산집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함

3) 업종별 배치계획 생략

마. 공공시설계획

1) 기본방향

○ 산업단지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입주기업에 효율적이고 활력 있는 생산활동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시설을 완비

○ 산업단지내 종사자들의 여가활동 및 쾌적한 노동활동에 적합하도록 시설물 선정 설치

○ 입주업체의 생산활동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향상 도모

2) 지원시설 설치계획

가) 폐수처리계획

○ 총 폐수량 190㎥/일 (공업폐수 74㎥/일, 생활폐수 116㎥/일)

○ 각 공장자체에서 완전 처리 후 방류하고

○ 생활오수는 오수관으로 직접 연결하여 자체 정화 시설에서 처리 후 방류

나) 폐기물 처리계획

○ 총 발생량 178.2톤/년(생활폐기물 76.5 , 공업폐기물 101.7)

○ 처리계획

일반폐기물은 안성시 쓰레기 매립장에 위탁처리하며 특정폐기물은 전량 위탁처리

다) 공업용수 공급계획

○ 총 발생량 203톤/일(공업용수 81, 생활용수 122)

○ 공업용수는 자체 지하수를 개발하여 용량 250톤/일의 공동용수 공급

라) 전력수급계획

○ 공급계획용량 95KVA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공급계획 수립)

마) 통신시설계획

○ 총회선수 131회선(한국통신공사와 협의하여 계획수립)

바) 지방산업 관리를 위한 필요한 사항

○ 기술개발 및 산업정보 제공

○ 인력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지원 강화

○ 산업단지의 각종 재해방지를 위한 방재계획 수립

〔붙임〕

산업단지 입주 제한업종

표준산업 분류번호	업 종
15111	도축업
23210	원유정제처리업
23221	윤활류 및 그리스 제조업
232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석유정제 분획물 재처리업
23300	핵연료가공업
26941	시멘트제조업
26942	석회제조업
26943	프라스터제조업
26951	비내화 모르타르제조업
26952	레미콘 제조업
26961	성형가공석재 및 석제품제조업
26993	아스팔트제품 제조업
26995	비금속광물 분쇄처리업
26996	인조흑연 및 기타 산소제품 제조업
27111	제철업
27112	합금철강 제조업
27113	제강업
271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철 및 제강업
63204	위험물품보관업
63209	기타 창고업

원곡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1. 산업단지 개요

가. 관리기관 사단법인 안성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

나. 조 성 목 적

○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 산업재배치 정책에 부응
○ 지방화시대에 대비한 자립경제 기반 구축
○ 지역내 기존산업의 활성화로 경쟁력 제고 및 산업용지 수요충족

다. 추 진 경 위

'94. 08. 19 단지 지정승인(경기도 고시 제235호)
'95. 02. 10 개발기본계획변경 승인(경기도고시 제34호)
'95. 04. 17 개발계획변경 승인(경기도고시 제103호)
'95. 06. 29 개발계획변경 승인(경기도고시 제219호)
· '95. 11. 14 실시계획변경 승인(경기도고시 제341호)
· '97. 03. 05 개발계획과 실시계획변경승인 및 준공인가(경기도고시 제64호)
· '98. 07. 09 관리기본계획 수립(경기도고시 제295호)
'01. 04. 23 관리기본계획변경(경기도고시 제65호)
· '03. 06. 23 경기도 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경기도고시 제155호)

라. 분 양 현 황

(단위 ·㎡)

총면적	분양가능면적					조성기간	조성기관
	합 계	분 양	미 분 양				
		조 성	소 계	조 성	미조성		
99,888.1	78,545	78,545	-	-	-	1995 ~ 1996	안성시

마. 입 주 현 황

구 분	입주업체수			면 적 (㎡)		
	계	제조업	기 타	계	제조업	기 타
합 계	3	3	-	78,545	78,545	-
2003년 8월 현재	3	3	-	78,545	78,545	-
향 후 계 획	-	-	-	-	-	-

바. 입 지 여 건

시 설 명	총 계 획	2003년 현재	시행기관	향후확충계획
단지내 도로(m)	304	304	안성시	없음
용 수 (㎥/일)	147	147	〃	〃
전 력 (KVA)	189	189	〃	〃
통 신 (회선)	36	36	〃	〃
폐수처리(㎥/일)	135	135	〃	〃

2.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가. 관리기본계획

수도권 산업재배치 및 제조업의 정책적인 육성을 위하여 산업 용지를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으로 구획하여 관리하며 단지내 공공 및 지원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입주업체 기업활동의 효율적 지원을 도모

나. 입주 및 사후관리계획

1) 입주업종 한국표준산업 분류상의 전 제조업

※ 다만, [붙임1]의 입주제한 업종 및 수질환경보전법상 특정유해물질 배출업종은 제한함

2) 입주자격 (산업시설구역)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 '산집법' 이라한다)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공장으로 동법시행령 제27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공장.

3) 입주 우선 순위

가)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등록공장

① 수도권지역별 우선순위

구 분	비 공 업 지 역		공 업 지 역	
	비도시형공장	도시형공장	비도시형공장	도시형공장
과밀억제권역	1	2	5	6
자연보전권역	3	4	7	8
성장관리권역	9	10	11	12

② 산업자원부 고시에 의한 "첨단업종"의 공장

③ 전년도 수출실적이 많은 공장

나) 기타공장

① 산업자원부 고시에 의한 첨단업종의 공장

② 도시형 업종의 공장(산집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참조)

다) 용수 다소비 공장 제한

용수공급계획 범위 내에서 면적당 배분량을 초과하는 경우 상기 입주우선 순위에 의한 입주자 선정을 제한할 수 있음

4) 사후관리 계획

산집법, 산업단지관리지침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의거 관리

다. 산업단지 용도별 구획계획

1) 용도별 구획면적

(단위 ㎡)

총 면 적	산 업 시설구역	지 원 시설구역	공 공 시설구역	녹 지 시설구역	비 고
99,881.1 (100%)	78,545 (78.6%)	4,187.7 (7.3%)	6,476 (6.5%)	14,867.1 (7.8%)	

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시설구역 산집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용도의 건축물

나) 공공시설구역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다) 녹지시설구역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3) 용도별 구획 생략

라. 업종별 공장배치 계획

1) 업종별 배치계획

업 종	업 체 수	면 적	비 고
합 계	3	78,545	
조 립 금 속	-	-	
기 계	-	-	
전기및전자기기	2	61,525.7	
운 수 장 비	-	-	
기 타 제 조 업	1	17,019.3	

※ 업체수는 분양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배 치 기 준

○ 업종별 블록화 배치

○ 관련업종 인접 배치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 또는 유사업종별로 공장배치를 기준으로 하되 분양결과에 따라 산집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함

3) 업종별 배치계획 생략

마. 공공시설계획

1) 기본방향

○ 산업단지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입주기업에 효율적이고 활력 있는 생산활동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시설을 완비

○ 산업단지내 종사자들의 여가활동 및 쾌적한 노동활동에 적합하도록 시설물 선정 설치

2) 지원시설 설치계획

가) 폐수처리계획

○ 총 폐수량 135㎥/일(공업폐수 36㎥/일, 생활폐수 99㎥/일)

○ 각 공장자체에서 완전 처리 후 방류하고

○ 생활오수는 오수관으로 직접 연결하여 자체 정화 시설에서 처리 후 방류

나) 폐기물 처리계획

○ 총 발생량 983톤/년(생활폐기물 38톤/년 , 공업폐기물 945톤/년)

○ 처리계획

일반폐기물은 안성시 쓰레기 매립장에 위탁처리하며 , 특정폐기물은 전량 위탁처리

다) 공업용수 공급계획

○ 단지내 공업용수는 자체 지하수를 개발하여 용수공급

○ 총 용수량 147톤/일(공업용수 108톤/일 , 생활용수 39톤/일)

라) 전력수급계획

○ 공급계획용량 189KVA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공급계획 수립)

마) 통신시설계획

○ 총회선수 36회선(한국통신공사와 협의하여 계획수립)

바) 지방산업 관리를 위한 필요한 사항

○ 기술개발 및 산업정보 제공

○ 인력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지원 강화

○ 산업단지의 각종 재해방지를 위한 방재 계획 수립

[붙임]

산업단지 입주 제한업종

표준산업 분류번호	업 종
15111	도축업
23210	원유정제처리업
23221	윤활류 및 그리스 제조업
232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석유정제 분획물 재처리업
23300	핵연료가공업
26941	시멘트제조업
26942	석회제조업
26943	프라스터제조업
26951	비내화 모르타르제조업
26952	레미콘 제조업
26961	성형가공석재 및 석제품제조업
26993	아스팔트제품 제조업
26995	비금속광물 분쇄처리업
26996	인조흑연 및 기타 산소제품 제조업
27111	제철업
27112	합금철강 제조업
27113	제강업
271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철 및 제강업
63204	위험물품보관업
63209	기타 창고업

미양II 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1. 산업단지 개요

가. 관리기관 사단법인 안성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

나. 조 성 목 적

○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 산업재배치 정책에 부응
○ 지방화시대에 대비한 자립경제 기반 구축
○ 지역내 기존산업의 활성화로 경쟁력 제고 및 산업용지 수요충족

다. 추 진 경 위

'94. 01. 03 산업용지 개발계획고시(건설부고시 제564호)
· '94. 12. 16 지방공단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승인(경기도고시 제372호)
· '95. 04. 24 지방공단 개발 실시계획 승인(경기도고시 제134호)
· '95. 09. 06 지방공단지정 변경 승인(경기도고시 제363호)
'96. 06. 11 공단단지개발계획 변경(시행자 변경)(경기도고시 제130호)
'96. 12. 31 공사준공
'97. 02. 03 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경기도고시 제46호)
'97. 03. 28 준공인가(경기도고시 제136호)
· '98. 07. 09 관리기본계획 수립(경기도고시 제295호)
· '01. 04. 23 관리기본계획변경(경기도고시 제65호)
· '03. 06. 23 경기도 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경기도고시 제155호)

라. 분 양 현 황

(단위 ㎡)

총면적	분양가능면적					조성기간	조성기관
	합 계	분 양	미 분 양				
		조 성	소 계	조 성	미조성		
159,986.5	144,249.6	144,249.6	-	-	-	1994 ~ 1997	안성시

마. 입 주 현 황

구 분	입주업체수			면 적 (㎡)		
	계	제조업	기 타	계	제조업	기 타
합 계	3	3	-	144,249.6	144,249.6	
2003년 8월 현재	3	3	-	144,249.6	144,249.6	
향 후 계 획	-	-	-			

바. 입 지 여 건

시 설 명	총 계 획	2003년 현재	시행기관	향후확충계획
단지내 도로(m)	555	555	안성시	없음
용 수 (㎥/일)	1,073	1,073	〃	〃
전 력 (KVA)	204	204	〃	〃
통 신 (회선)	377	377	〃	〃
폐수처리(㎥/일)	988	988	〃	〃

2.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가. 관리기본계획

수도권 산업재배치 및 제조업의 정책적인 육성을 위하여 산업 용지를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으로 구획하여 관리하며 단지내 공공 및 지원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입주업체 기업활동의 효율적 지원을 도모

나. 입주 및 사후관리계획

1) 입주업종 한국표준산업 분류상의 전 제조업

※ 다만, [붙임1]의 입주제한 업종 및 수질환경보전법상 특정유해물질 배출업종은 제한함

2) 입주자격 (산업시설구역)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산집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공장으로 동법시행령 제27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공장

3) 입주 우선 순위

가)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등록공장

① 수도권지역별 우선순위

구 분	비 공 업 지 역		공 업 지 역	
	비도시형공장	도시형공장	비도시형공장	도시형공장
과밀억제권역	1	2	5	6
자연보전권역	3	4	7	8
성장관리권역	9	10	11	12

② 산업자원부 고시에 의한 "첨단업종"의 공장

③ 전년도 수출실적이 많은 공장

나) 기타공장

① 산업자원부 고시에 의한 첨단업종의 공장

② 도시형 업종의 공장(산집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참조)

다) 용수 다소비 공장 제한

용수공급계획 범위 내에서 면적당 배분량을 초과하는 경우 상기 입주우선 순위에 의한 입주자 선정을 제한할 수 있음

4) 사후관리 계획

산집법, 산업단지관리지침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의거 관리

다. 산업단지 용도별 구획계획

1) 용도별 구획면적

(단위 ㎡)

총 면 적	산 업 시설구역	지 원 시설구역	공 공 시설구역	녹 지 시설구역	비 고
159,986.5 (100%)	144,249.6 (90.2%)	984.8 (0.6%)	7,485.7 (4.7%)	17,266.4 (4.5%)	

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시설구역 산집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용도의 건축물

나) 공공시설구역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다) 녹지시설구역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3) 용도별 구획 생략

라. 업종별 공장배치 계획

1) 업종별 배치계획

(단위 ㎡, 개사)

업 종	업 체 수	면 적	비 고
합 계	3	144,249.6	
1 차 금 속	1	91,173.5	
기 계	-	-	
전기및전자기기	1	48,883.1	
기 타 제 조	1	4,193	
자동차연구단지	-	-	

※ 업체수는 분양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배 치 기 준

○ 업종별 블록화 배치

○ 관련업종 인접 배치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 또는 유사업종별로 공장배치를 기준으로 하되 분양결과에 따라 산집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함

3) 업종별 배치계획 생략

마. 공공시설계획

1) 기본방향

○ 산업단지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입주기업에 효율적이고 활력 있는 생산활동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시설을 완비

○ 산업단지내 종사자들의 여가활동 및 쾌적한 노동활동에 적합하도록 시설물 선정 설치

2) 지원시설 설치계획

가) 폐수처리계획

○ 총 발생량 988㎥/일 (공업폐수 886㎥/일, 생활폐수 102㎥/일)

○ 각 공장자체에서 완전 처리 후 안성제2산업단지 폐수처리장으로 유입처리

○ 생활오수는 오수관으로 직접 연결하여 자체 정화 시설에서 처리 후 방류

나) 폐기물 처리계획

○ 총 발생량 1,669톤/년(생활폐기물 128 , 산업폐기물 1,542)

○ 처리계획

- 단지내 발생 오·폐수는 기존 농공단지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후 방류
- 일반 폐기물은 안성시 쓰레기 매립장에 위탁처리하며 , 특정폐기물은 전량 위탁처리

다) 공업용수 공급계획

○ 총용수공급량 1,073톤/일(공업용수 962 톤/일, 생활용수 111톤/일)

○ 생활용수는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을 통해 공급하도록 하되 동사업에서 계획한 미양배수지(V=1,200㎥) , 계통관로(D=300㎜)에서 분기하며 자연유하식으로 공급

라) 전력수급계획

○ 공급계획 7,983KVA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공급계획 수립)

마) 통신시설계획

○ 총회선수 377회선(한국통신공사와 협의하여 계획수립)

바) 지방산업 관리를 위한 필요한 사항

○ 기술개발 및 산업정보 제공

○ 인력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지원 강화

○ 산업단지의 각종 재해방지를 위한 방재계획 수립

[붙임]

산업단지 입주 제한업종

표준산업 분류번호	업 종
15111	도축업
23210	원유정제처리업
23221	윤활류 및 그리스 제조업
232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석유정제 분획물 재처리업
23300	핵연료가공업
26941	시멘트제조업
26942	석회제조업
26943	프라스터제조업
26951	비내화 모르타르제조업
26952	레미콘 제조업
26961	성형가공석재 및 석제품제조업
26993	아스팔트제품 제조업
26995	비금속광물 분쇄처리업
26996	인조흑연 및 기타 산소제품 제조업
27111	제철업
27112	합금철강 제조업
27113	제강업
271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철 및 제강업
63204	위험물품보관업
63209	기타 창고업

학운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1. 산업단지 개요

가. 관 리 기 관 김 포 시

나. 조 성 목 적

○ 수도권 성장관리지역의 균형개발 도모 및 건전한 유망중소기업 육성을 통하여 지역의 생산력과 고용증대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산업단지 조성

다. 추 진 경 위

○ '92. 5. 20 수도권정비심의 위원회 심의 가결
○ '93. 6. 17 단지 지정 및 기본계획승인(경기도 고시 178호)
○ '93. 11. 2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승인
○ '94. 12. 10 공사 착공
○ '97. 5. 23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경기도 고시 169호)
※ 부지면적, 유치업종변경
○ '97. 9. 8 준공인가(경기도 공고 1997-356호)
○ '98. 7. 9 관리기본계획 고시(경기도 고시 295호)

라. 분 양 현 황

(단위 ㎡)

구 분	분양대상	분 양 현 황			조성기간	사업시행자
		합 계	분 양	미 분 양		
계	39,697.8	39,697.8	39,697.8	-	-	
산업시설구역	39,697.8	39,697.8	39,697.8	-	'93 ~ '97	김포시장
지원시설구역	-	-	-	-	〃	〃

마. 입 주 현 황

구 분	입 주 업 체 수			면 적(㎡)		
	계	제조업	기 타	계	제조업	기타
계	26	26	-	39,697.8	39,697.8	-
2003.8월말 현재	14	14	-	25,019.3	25,019.3	-
향 후 계 획	12	12	-	14,678.5	14,678.5	-

바. 입 지 여 건

시 설 명	계 획	현 시 설	향 후 확 충 계 획	
			규 모	시 행 기 관
진입도로 폭 (m)	6.0	6.0	-	-
단지내 도로 (m)	802.9	802.9	-	-
용 수 (㎥/일)	578.0	578.0	-	-
전 력 (kW)	154.0	154.0	-	-
통 신 (회선)	109.0	109.0	-	-
하수도 시설(m)	789.0	789.0	-	-
오수처리장 (㎥)	1,426.9	1,426.9	(㎥/일)	학운입주기업체 협의회

2.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가. 기본방향

1) 기본방향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 "산집법" 이라함) 제38조, 제39조 근거에 의하여 공장을 신설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업체를 입주시켜 생산 활동 지원

○ 산업용지는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되, 부득이한 경우 산업시설구역 중 일부는 산업시설 또는 물류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함.

2) 추진방향

○ 공장시설 용도를 업종별로 세분하여 배치 및 관리

○ 업종별 배치에 맞는 기반시설 설치 및 확충

○ 환경오염 및 공해업소 이전 유도

나. 산업단지 용도별 구획 계획

1) 용도별 구획 면적

(단위 ㎡)

총 면 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55,628.2 (100%)	39,697.8 (71.4%)	349.2 (0.6%)	7,903.0 (14.2%)	7,678.2 (13.8%)

□ 산업시설구역 세부용도

(단위 ㎡)

공장시설	물류시설	지식산업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기 타
39,697.8	-	-	-	-

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시설구역

산집법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나) 지원시설구역

① 산집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동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입주 기업체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② 건축법 시행령 별표(건축물의 용도분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운수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다) 공공시설구역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라) 녹 지 지 역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3) 용도별 구획 평면도 생략

다. 업종별 배치계획

1) 업종별 배치현황

구 분 / 업종별	배 치 계 획		2003.8월말 현재		향 후 계 획	
	업체수	면적(㎡)	업체수	면적(㎡)	업체수	면적(㎡)
합 계	26	39,697.8	14	25,019.3	12	14,678.5
목재 및 나무	2	2,696.7	-	-	2	2,696.7
조 립 금 속	7	9,036.9	3	4,595.2	4	4,441.7
기계 및 장비	9	12,188.1	3	4,648.0	6	7,540.1
제1차 금속산업	2	4,605.6	2	4,605.6	-	-
화합물및화학제품	2	3,331.3	2	3,331.3	-	-
기타 제조업	4	7,839.2	4	7,839.2	-	-

2) 업종별 배치계획 생략

라. 입주관리계획

1) 입주대상업종

ㅇ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 제조업
(단, 입주제한업종을 제외한 업종에 한함)

ㅇ 창고·보관업 등 물류 관련업

【 입주제한 업종 】

- 공업용수 다소비 및 입주 부적격 업종 [별표#3]
-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동법시행령 별표8의 1종사업장 내지 2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공장 (다만, 연료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공장 제외)
- 수질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다만,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된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공장 제외)
- 수질환경보전법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동법시행령 별표1의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공장

2) 입주자격

ㅇ 산업시설구역

- 산집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및 산집법 시행령 제27조에서 정한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물류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 다만 기존의 물류업을 영위하는 자를 우선하여 입주

ㅇ 지원시설구역

- 산집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으로서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
- 건축법 시행령 별표(건축물의 용도분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전시시설, 운수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3) 입주 우선 순위

ㅇ 1순위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인가된 학운사업협동조합의 조합원 및 토지소유자

ㅇ 2순위 김포시내 조건부 및 무등록 공장으로서 이전하고자 하는 업체

ㅇ 3순위 수도권(과밀억제)내에서 이전하고자 하는 업체

ㅇ 4순위 기타 입주자격을 갖추고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

4) 입주절차

ㅇ 분양 → 입주계약 신청 → 심의위원회 심의 → 입주계약 체결

5) 분양한도

ㅇ 분양면적 한도(업체당) 700㎡ 이상

마. 사후관리계획

1) 산업용지 관리

ㅇ 산집법 및 산업단지관리 지침,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사후관리

2) 환경관리

ㅇ 하수도 배제방식은 우·오수 분류식으로 하며, 우수는 기존 배수로로 자연유하 배수하고 오수는 단지내 오수처리장에서 처리후 방류

ㅇ 오수처리장 시설개요

- 규 모 1,426.9㎡
- 처리용량 687㎥/일
- 처리방법 접촉산화방법
- 수질기준 20 ppm 이하

ㅇ 일반폐기물은 용도별(재활용, 소각슬러지, 매립)로 분류한 후 재생업자 및 폐기물처리 전문업체에게 위탁하여 처리

ㅇ 특정폐기물은 폐기물처리 전문업체에게 전량 위탁하여 처리

3) 안전관리

ㅇ 산업단지의 재해예방을 위한 방재계획 수립 (매년 1월)

ㅇ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실시 (분기별 1회)

ㅇ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바. 입주기업체 지원사업 추진계획

1) 생산활동 지원

ㅇ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ㅇ 신용보증재단 보증 지원

ㅇ 기술개발 및 수출, 무역, 박람회 등 산업정보 제공

ㅇ 구인·구직의 날 운영 등 산업인력 수급 지원

ㅇ 각종 지원시책 추진시 우대

2) 근로자 복지후생 지원

ㅇ 근로자 복지후생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보건, 교통등)

3) 지원시설 설치계획

ㅇ 학운지방산업단지 입주기업체 협의회를 구성하여 오수처리장 설치 및 관리사무소를 건립후 입주기업체 협의회에서 유지 및 관리 운영

사. 기타 산업단지 운영에 관한 사항

1) 중소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정보 제공

2) 인력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원 강화

3) 분양용지의 불법전매·장기 유휴화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철저

[별표#3]

입 주 제 한 업 종

분류번호	업 종 명	분류번호	업 종 명
15111	도 축 업	23100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업
15311	곡물 도정업	23210	원유 정제처리업
15312	곡물 제분업	23211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17401	솜 및 실 염색 가공업	23229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17402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 가공업	23300	핵연료 가공업
17403	날염가공업	26311	시멘트 제조업
17404	섬유사 및 직물 호부처리업	26312	석회 제조업
17409	기타 섬유 염색 및 정리업	26313	플라스터 제조업
18201	원모피 가공처리업	26321	비내화 모르타르 제조업
19101	원피 가공업	26322	레미콘 제조업
20212	강화 및 재생목재 제조업	26323	플라스터제품 제조업
21110	펄프 제조업	26324	섬유시멘트 제품 제조업
21121	신문용지 제조업	26325	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 제조업
21122	인쇄 및 필기용지 제조업	26326	콘크리트관 및 조립구조재 제조업
21123	크라프트지 및 상자용 판지 제조업	26329	그외 기타 콘크리트 제품 제조업
21124	가공지 제조업	26921	아스콘 제조업
21129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26922	아스팔트 성형제품 제조업
21211	골판지 및 골판지 상자 제조업	26993	석면, 암면 및 유사제품 제조업
21213	식품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	28922	도 금 업

율생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1. 산업단지 개요

가. 관 리 기 관 김 포 시

나. 조 성 목 적

○ 수도권(과밀억제)내에 산재된 가구 및 관련업종, 도시형 공장의 집단화·계열화를 통하여 지방화 시대에 대비한 재정자립도 향상 및 인구의 지방정착에 기여

다. 추 진 경 위

○ '95. 6. 21 단지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경기도 고시 218호)

○ '95. 12. 29 개발계획 변경(사업기간)승인(경기도 고시 478호)

○ '96. 6. 11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경기도 고시 131호)

○ '97. 1. 25 단지조성공사 착공

○ '97. 6. 4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경기도 고시 87호)

○ '98. 5. 29 :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사업기간)승인 (경기도 고시 226호)

○ '98. 11. 11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경기도 고시 460호)

○ '98. 12. 24 개발 및 실시계획(1단계) 변경승인(경기도고시 460호)

○ '98. 12. 24 1단계 준공인가 (경기도 공고 제472호)

○ '99. 7. 5 개발기간 연장 및 사업시행자 변경승인(경기도 고시 747호)

○ '99. 12. 24 개발기간 연장승인 (경기도 고시 494호)

○ '00. 7. 10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사업기간)승인 (경기도 고시 192호)

○ '01. 1. 16 개발기간 연장승인 (경기도 고시 14호)

○ '01. 6. 27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사업기간)승인 (경기도 고시 110호)

○ '01. 7. 23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경기도 고시 140호)

○ '01. 12. 24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사업기간) 승인 (경기도 고시 287호)

○ '02. 6. 29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사업기간) 승인 (경기도 고시 174호)

○ '02. 9. 30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사업기간) 승인 (경기도 고시 243호)

○ '03. 7. 12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사업기간) 승인 (경기도 고시 181호)

라. 분 양 현 황

(단위 ㎡)

구 분	분양대상	분양현황			조성기간	사업시행자
		합 계	분 양	미 분 양		
계	35,308.2	35,308.2	35,308.2	-	-	
산업시설구역	34,141.4	34,141.4	34,141.4	-	'96 ~ '03.12	율생가구공업 사업협동조합
지원시설구역	1,166.8	1,166.8	1,166.8	-		

마. 입 주 현 황

구 분	입주업체수			면 적(㎡)		
	계	제조업	기 타	계	제조업	기 타
계	10	10	-	34,141.4	34,141.4	-
2003.8월말 현재	9	9	-	33,070.3	33,070.3	-
향 후 계 획	1	1	-	1,071.1	1,071.1	-

바. 입 지 여 건

시 설 명	계 획	현 시 설	향후 확충계획	
			규 모	시 행 기 관
단지내 도로 (m)	548.0	548.0	-	-
용 수 (㎥/일)	299.0	299.0	-	-
전 력 (kW)	1,040.0	1,040.0	-	-
통 신 (회선)	71.0	71.0	-	-
하수도 시설(m)	539.0	539.0	-	-
오수처리장 (㎥)	-	-	-	-

2.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가. 기본방향

1) 기본방향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 "산집법" 이라함) 제38조, 제39조 근거에 의하여 공장을 신설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업체를 입주시켜 생산활동 지원

○ 산업용지는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되, 부득이한 경우 산업시설구역 중 일부는 산업시설 또는 물류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함

2) 추진방향

○ 공장시설 용도를 업종별로 세분하여 배치 및 관리

○ 업종별 배치에 맞는 기반시설 설치 및 확충

○ 환경오염 및 공해업소 이전 유도

나. 산업단지 용도별 구획 계획

1) 용도별 구획 면적

(단위 ㎡)

총 면 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48,758.8 (100%)	34,141.4 (70.0%)	1,166.8 (2.4%)	3,961.0 (8.1%)	9,489.6 (19.5%)

□ 산업시설구역 세부용도

(단위 ㎡)

공장시설	물류시설	지식산업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기 타
34,141.4	-	-	-	-

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시설구역

산집법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나) 지원시설구역

① 산집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동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입주 기업체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② 건축법 시행령 별표(건축물의 용도분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운수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다) 공공시설구역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라) 녹 지 지 역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3) 용도별 구획 평면도 생략

다. 업종별 배치계획

1) 업종별 배치현황

구 분 / 업 종 별	배 치 계 획		2003.8월말 현재		향 후 계 획	
	업체수	면적(㎡)	업체수	면적(㎡)	업체수	면적(㎡)
합 계	10	34,141.4	9	33,070.3	1	1,071.1
가구 및 관련업종	3	7,842.6	3	7,842.6	-	-
제1차 금속산업	3	18,898.5	3	18,898.5	-	-
기타 제조업	4	7,400.3	3	6,329.2	1	1,071.1

2) 업종별 배치계획 생략

라. 입주관리계획

1) 입주대상업종

ㅇ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 제조업
(단, 입주제한업종을 제외한 업종에 한함)

ㅇ 창고·보관업 등 물류 관련업

【 입주제한 업종 】

- 공업용수 다소비 및 입주 부적격 업종 (별표# 3)
-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동법시행령 별표8의 1종사업장 내지 2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공장 (다만, 연료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공장 제외)
- 수질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다만,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된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공장 제외)
- 수질환경보전법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동법시행령 별표1의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공장

2) 입주자격

ㅇ 산업시설구역

- 산집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한 입주 자격을 갖춘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및 산집법 시행령 제27조에서 정한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물류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 다만 기존의 물류업을 영위하는 자를 우선하여 입주

ㅇ 지원시설구역

- 산집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으로서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
- 건축법 시행령 별표(건축물의 용도분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전시시설, 운수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3) 입주 우선 순위

ㅇ 1순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협동화사업 실천계획을 승인받은 업체

ㅇ 2순위 김포시내 조건부 및 무등록 공장으로서 이전하고자 하는 업체

ㅇ 3순위 수도권(과밀억제)내에서 이전하고자 하는 업체

ㅇ 4순위 기타 입주자격을 갖추고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

4) 입주절차

ㅇ 분양 → 입주계약 신청 → 심의위원회 심의 → 입주계약 체결

5) 분양한도

ㅇ 분양면적 한도(업체당) 660㎡ 이상

마. 사후관리계획

1) 산업용지 관리

ㅇ 산집법 및 산업단지관리 지침,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사후관리

2) 환경관리

ㅇ 공장폐수 및 생활오수는 각 공장의 정화조에서 자체 처리하여 계획 오수관에 연결하여 방류

ㅇ 일반폐기물은 용도별(재활용, 소각슬러지, 매립)로 분류한 후 재생업자 및 폐기물처리 전문업체에게 위탁하여 처리

ㅇ 특정폐기물은 폐기물처리 전문업체에게 전량 위탁하여 처리

3) 안전관리

ㅇ 산업단지의 재해예방을 위한 방재계획 수립 (매년 1월)

ㅇ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실시 (분기별 1회)

ㅇ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바. 입주기업체 지원사업 추진계획

1) 생산활동 지원

- ㅇ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 ㅇ 신용보증재단 보증 지원
- ㅇ 기술개발 및 수출, 무역, 박람회 등 산업정보 제공
- ㅇ 구인·구직의 날 운영 등 산업인력 수급 지원
- ㅇ 각종 지원시책 추진시 우대

2) 근로자 복지후생 지원

- ㅇ 근로자 복지후생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보건, 교통등)

3) 지원시설 설치계획

- ㅇ 율생지방산업단지 입주기업체 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사무소를 건립후 입주기업체 협의회에서 유지 및 관리 운영

사. 기타 산업단지 운영에 관한 사항

1) 중소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정보 제공

2) 인력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원 강화

3) 분양용지의 불법전매·장기 유휴화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철저

〔별표# 3〕

입 주 제 한 업 종

분류번호	업 종 명	분류번호	업 종 명
15111	도 축 업	23100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업
15311	곡물 도정업	23210	원유 정제처리업
15312	곡물 제분업	23211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17401	솜 및 실 염색 가공업	23229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17402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 가공업	23300	핵연료 가공업
17403	날염가공업	26311	시멘트 제조업
17404	섬유사 및 직물 호부처리업	26312	석회 제조업
17409	기타 섬유 염색 및 정리업	26313	플라스터 제조업
18201	원모피 가공처리업	26321	비내화 모르타르 제조업
19101	원피 가공업	26322	레미콘 제조업
20212	강화 및 재생목재 제조업	26323	플라스터제품 제조업
21110	펄프 제조업	26324	섬유시멘트 제품 제조업
21121	신문용지 제조업	26325	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 제조업
21122	인쇄 및 필기용지 제조업	26326	콘크리트관 및 조립구조재 제조업
21123	크라프트지 및 상자용 판지 제조업	26329	그외 기타 콘크리트 제품 제조업
21124	가공지 제조업	26921	아스콘 제조업
21129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26922	아스팔트 성형제품 제조업
21211	골판지 및 골판지 상자 제조업	26993	석면, 암면 및 유사제품 제조업
21213	식품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	28922	도 금 업

상마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1. 산업단지 개요

가. 관 리 기 관 김 포 시

나. 조 성 목 적

○ 수도권소재 중소기업공장중 이전을 요하는 공장들의 수용을 통하여 무질서하게 산재되어 있는 공장의 계열화·집단화 유도

○ 주변지역의 환경보호 및 중소기업의 육성과 주민의 지역정착 및 소득증대에 기여

다. 추 진 경 위

○ '96. 9. 12 , 단지 지정 및 기본계획승인(경기도고시 1996-235호)
○ '97. 1. 25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경기도 고시 1997-30호)
○ '97. 3. 7 부지조성공사 착공
○ '98. 12. 11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경기도 고시 1998-506호)
○ '00. 1. 11 개발기간 연장 승인 (경기도 고시 2000-8호)
○ '00. 12. 7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경기도 고시 2000-276호)
○ '02. 4. 2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경기도 고시 2002-60호)
○ '03. 1. 13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경기도 고시 3호)
○ '03. 1. 13 준공인가(경기도 공고 제2003-33호)

라. 분 양 현 황

(단위 m²)

구 분	분양대상	분 양 현 황			조성기간	사업시행자
		합 계	분 양	미 분 양		
계	62,602.9	62,602.9	62,602.9	-	-	
산업시설구역	62,602.9	62,602.9	62,602.9	-	'96 ~ '02	상마사업 협동조합
지원시설구역	-	-	-	-	〃	〃

마. 입 주 현 황

구 분	입 주 업 체 수			면 적(㎡)		
	계	제조업	기 타	계	제조업	기타
계	26	26	-	62,602.9	62,602.9	-
2003.8월말 현재	25	25	-	59,533.5	59,533.5	-
향 후 계 획	1	1	-	3,069.4	3,069.4	-

바. 입 지 여 건

시 설 명	계 획	현 시 설	향 후 확 충 계 획	
			규 모	시행기관
진입도로 폭 (m)	2.0~12.0	2.0~12.0	-	-
단지내 도로 (m)	793.0	793.0	-	-
용 수 (㎥/일)	140.0	140.0	-	-
전 력 (kW)	1,661.0	1,661.0	-	-
통 신 (회선)	173.0	173.0	-	-
상수도 시설(m) D=75~100m/m	828.0	828.0		
하수도 시설(m) D=400~900m/m	1,595.0 (우:897,오:698)	1,595.0 (우:897,오:698)	-	-
오수처리장 (톤/일)	150.0	150.0	-	-
관리사무소 (㎡)	925.4	925.4	-	-

2.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가. 기본방향

1) 기본방향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 "산집법"이라함) 제38조,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신설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업체를 입주시켜 생산 활동을 지원

○ 산업용지는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되, 부득이한 경우 산업시설구역 중 일부는 산업시설 또는 물류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함.

2) 추진방향

○ 공장시설 용도를 업종별로 세분하여 배치 및 관리

○ 업종별 배치에 맞는 기반시설 설치 및 확충

○ 환경오염 및 공해업소 이전 유도

나. 산업단지 용도별 구획 계획

1) 용도별 구획 면적

(단위 : ㎡)

총 면 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78,737.0 (100%)	62,602.9 (79.5%)	1,751.9 (2.2%)	6,367.8 (8.1%)	8,014.4 (10.2%)

□ 산업시설구역 세부용도

(단위 ㎡)

공장시설	물류시설	지식산업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기 타
62,602.9	-	-	-	-

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시설구역

산집법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나) 지원시설구역

① 산집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동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입주 기업체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② 건축법 시행령 별표(건축물의 용도분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운수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다) 공공시설구역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라) 녹 지 지 역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3) 용도별 구획 평면도 생략

다. 업종별 배치계획

1) 업종별 배치현황

구 분 / 업종별	배 치 계 획		2003. 8월말 현재		향 후 계 획	
	업체수	면적(㎡)	업체수	면적(㎡)	업체수	면적(㎡)
합 계	26	62,602.9	25	59,533.5	1	3,069.4
조립금속제품	1	3,306.0	3	6,116.3	-	-
고무및플라스틱제품	1	3,306.0	2	6,610.6	-	-
가구 및 기타제품	1	1,653.0	1	1,652.8	-	-
화합물 및 화학제품	3	8,869.0	1	2,809.6	-	-
의료,정밀광학기기	1	1,653.0	1	1,653.7	-	-
제1차 금속산업	8	19,389.0	8	19,389.0	-	-
전기기계및변환장치	1	2,314.0	3	7,190.2	-	-
기타운송장비	1	2,562.0	1	2,562.0	-	-
기타기계및장비제조	9	19,550.9	4	9,704.6	1	3,069.4
봉제,의복및모피제조	-	-	1	1,844.7	-	-

2) 업종별 배치계획 생략

라. 입주관리계획

1) 입주대상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 제조업
(단, 입주제한업종을 제외한 업종에 한함)

○ 창고·보관업 등 물류 관련업

【 입주제한 업종 】

- 공업용수 다소비 및 입주 부적격 업종 [붙임#3]
-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동법시행령 별표8의 1종사업장 내지 2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공장 (다만, 연료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공장 제외)
- 수질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다만,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된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공장 제외)
- 수질환경보전법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동법시행령 별표1의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공장

2) 입주자격

○ 산업시설구역

- 산집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및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 시행령 제27조에서 정한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물류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 다만 기존의 물류업을 영위하는 자를 우선하여 입주

○ 지원시설구역

- 산집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으로서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
- 건축법 시행령 별표(건축물의 용도분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전시시설, 운수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3) 입주 우선 순위

ㅇ 1순위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인가된 김포 상마사업협동조합의 조합원

ㅇ 2순위 김포시내 조건부 및 무등록 공장으로서 이전하고자 하는 업체

ㅇ 3순위 수도권(과밀억제)내에서 이전하고자 하는 업체

ㅇ 4순위 기타 입주자격을 갖추고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

4) 입주절차

ㅇ 분양 → 입주계약 신청 → 심의위원회 심의 → 입주계약 체결

5) 분양한도

ㅇ 분양면적 한도(업체당) 990㎡ 이상

바. 사후관리계획

1) 산업용지 관리

ㅇ 산집법 및 산업단지관리 지침,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사후관리

2) 환경관리

ㅇ 하수도 배제방식은 우·오수 분류식으로 하며, 우수는 기존 배수로로 자연유하 배수하고 오수는 단지내 오수처리장에서 처리후 방류

ㅇ 오수처리장 시설개요

- 규 모 331㎡
- 처리용량 150㎥/일
- 처리방법 접촉산화방법
- 수질기준 20 ppm 이하

ㅇ 일반폐기물은 용도별(재활용, 소각슬러지, 매립)로 분류한 후 재생업자 및 폐기물처리 전문업체에게 위탁하여 처리

ㅇ 특정폐기물은 폐기물처리 전문업체에게 전량 위탁하여 처리

3) 안전관리

ㅇ 산업단지의 재해예방을 위한 방재계획 수립 (매년 1월)

ㅇ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실시 (분기별 1회)

ㅇ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사. 입주기업체 지원사업 추진계획

1) 공장설립 지원

ㅇ 공장설립 one-stop 방문 처리

ㅇ 시설자금 융자 지원 (경기도,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ㅇ 세제감면

- 취득세 · 등록세 면제
- 종합토지세, 재산세 50% 감면 (5년간)

2) 생산활동 지원

ㅇ 운전자금 융자 지원

ㅇ 신용보증재단 보증 지원

ㅇ 기술개발 및 수출, 무역, 박람회 등 산업정보 제공

ㅇ 구인 · 구직의 날 운영 등 산업인력 수급 지원

ㅇ 각종 지원시책 추진시 우대

3) 근로자 복지후생 지원

ㅇ 근로자 복지후생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보건, 교통등)

4) 지원시설 설치계획

ㅇ 상마지방산업단지 입주기업체 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사무소, 주차장, 오수처리장을 입주기업체 협의회에서 유지 및 관리 운영

아. 기타 산업단지 운영에 관한 사항

1) 중소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정보 제공

2) 인력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원 강화

3) 분양용지의 불법전매 · 장기 유휴화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철저

[붙임#3]

입 주 제 한 업 종

분류번호	업 종 명	분류번호	업 종 명
15111	도 축 업	23100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업
15311	곡물 도정업	23210	원유 정제처리업
15312	곡물 제분업	23211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17401	솜 및 실 염색 가공업	23229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17402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 가공업	23300	핵연료 가공업
17403	날염가공업	26311	시멘트 제조업
17404	섬유사 및 직물 호부처리업	26312	석회 제조업
17409	기타 섬유 염색 및 정리업	26313	플라스터 제조업
18201	원모피 가공처리업	26321	비내화 모르타르 제조업
19101	원피 가공업	26322	레미콘 제조업
20212	강화 및 재생목재 제조업	26323	플라스터제품 제조업
21110	펄프 제조업	26324	섬유시멘트 제품 제조업
21121	신문용지 제조업	26325	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 제조업
21122	인쇄 및 필기용지 제조업	26326	콘크리트관 및 조립구조재 제조업
21123	크라프트지 및 상자용 판지 제조업	26329	그외 기타 콘크리트 제품 제조업
21124	가공지 제조업	26921	아스콘 제조업
21129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26922	아스팔트 성형제품 제조업
21211	골판지 및 골판지 상자 제조업	26993	석면, 암면 및 유사제품 제조업
21213	식품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	28922	도 금 업

양문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1. 산업단지 개요

가. 관 리 기 관 포 천 시

나. 조 성 목 적

○ 임진강유역 및 한탄강수계 폐수배출공장 집단화

○ 산업폐수의 공동처리로 하천 수질환경 개선

○ 고질화된 환경불법행위 근절

다. 추 진 경 위

- '92. 10. 7 : 수도권 정비심의위원회 의결
- '92. 12. 4 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 체결 (포천군→중소기업진흥공단)
- '93. 11. 30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 (경기도 고시 제414호)
- '94. 4. 2 지방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경기도)
- '94. 8. 18 사업시행자 지정 (중소기업진흥공단)
- '95. 7. 9 관리기본계획 고시 (경기도 고시 제295호)
- '95. 10. 25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 '02. 9. 19 준공인가

라. 분양현황

(단위 ㎡)

구 분	분양대상	분 양 현 황			조성기간	사업시행자
		합 계	분 양	미분양		
계	118,441.8	118,441.8	-	118,441.8		
산업시설구역	115,016.3	115,016.3	-	115,016.3	'95.12. ~ '98.11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원시설구역	3,425.5	3,425.5	-	3,425.5	〃	〃

마. 입주현황

구 분	입주업체수			면 적(㎡)		
	계	제조업	기 타	계	제조업	기 타
계	43	43	-	115,016.3	115,016.3	-
'01. 3월 현재	-	-	-	-	-	-
향 후 계 획	43	43	-	115,016.3	115,016.3	-

바. 입지여건

시 설 명	총 계 획	'01. 3월 현재	향 후 확 충 계 획	
			규 모	시행기관
단지내 도로	폭 8~12m 연장 2,901m 면적 28,656㎡	폭 8~12m 연장 2,901m 면적 28,656㎡	-	중소기업진흥공단
용 수(㎥/일)	14,772	7,272	7,000	중소기업진흥공단 포천군
전 력(KW)	7,919	7,919	-	한국전력공사
통 신(회선)	379	-	379	한국통신
폐수처리(㎥/일)	14,000	7,000	7,000	중소기업진흥공단
폐기물매립장 및 소각장	5,175㎡ 6,300톤/일	-	5,175㎡ 6,300톤/일	〃

2.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가. 기본방향

1) 관리기본방향

○ 하천수질 오염원이 되고 있는 폐수배출 공장을 집단화시켜 생산활동을 지원하고 하천수질을 개선코자 함

○ 산업용지는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으로 구획하여 관리하되, 부득이한 경우 산업시설구역 중 일부는 물류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함

2) 추진방향

○ 공장시설 용도를 업종별로 세분하여 배치 및 관리
○ 업종별 배치에 맞는 기반시설 설치 및 확충
○ 하천 환경오염 폐수배출업체 이전 유도

나. 산업단지 용도별 구획 계획

1) 용도별 구획 면적

(단위 ㎡)

총 면 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179,634.9 (100%)	115,016.3 (64%)	3,425.5 (1.9%)	47,351.2 (26.4%)	13,841.9 (7.7%)

○ 산업시설구역 세부용도

(단위 ㎡)

공장시설	물류시설	지식산업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기 타
115,016.3	-	-	-	-

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시설구역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 "산집법"이라함)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나) 지원시설 구역

① 산집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동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② 건축법 시행령 부표(건축물의 용도분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운수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다) 공공시설구역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라) 녹 지 구 역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3) 용도별 구획 평면도 생략

다. 업종별 배치계획

1) 업종별 배치현황

구분 / 업종별	배치계획		2000.12월말 현재		향후계획	
	업체수	면적(㎡)	업체수	면적(㎡)	업체수	면적(㎡)
합 계	43	115,016.3	-	-	43	115,016.3
염 색	31	82,669.3	-	-	31	82,669.3
피 혁	12	32,347	-	-	12	32,347

2) 업종별 배치계획도 생략

라. 입주관리계획

1) 입주대상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염색(세탁업 포함) 및 피혁 제조업

2) 입주제외대상

○ 피혁 및 염색업종(세탁업 포함) 이외의 업체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자

○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자 또는 대기업 집단의 소속회사인 자

○ 휴·폐업중인 자

3) 입주자격

○ 산업시설구역

- 수도권에 소재한 폐수배출공장으로서 산집법 시행령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규정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고,
- 산집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공장등록을 필한 공장 (이전조건부 공장포함)
- 산집법 부칙 제3조에 의거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공장

○ 지원시설구역

- 산집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으로서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 관리기관 및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
- 건축법 시행령 부표(건축물의 용도분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운수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을 영위하고자 하는자

4) 입주우선순위

- 1 순 위 포천군 소재업체
- 2 순 위 동두천시, 양주군, 연천군, 파주군 소재업체
- 3 순 위 1,2순위를 제외한 수도권 소재업체

5) 입주절차

입주계약체결(관리기관)→건축허가 및 건축 → 공장등록

마. 사후관리계획

1) 산업용지 관리

산집법, 산업단지관리 지침, 관리기본계획에 의거 관리

2) 환경관리

○ 산업폐수처리 폐수종말처리장 유입처리

○ 폐기물처리

- 일반폐기물 소각 매립
- 특정폐기물 위탁처리

○ 유지관리지침서에 의거 관리

3) 안전관리

산집법 제45조에 의거 관리

바. 입주기업체 지원사업 추진계획

1) 공장설립 지원

2) 생산활동 지원 용수공급사업, 환경오염방지사업

3) 근로자 복지후생 지원

4) 지원시설 설치계획 사업계획 미수립

사. 기타 산업단지 운영에 관한 사항

목동지방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1. 산업단지 개요

가. 관리기관 가평군

나. 조성목적

○ 수도권 분산시책에 따라 이전을 요하는 공장 및 부적격공장을 수용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유도

○ 무질서하게 난립된 지역의 공장과 이전촉진지역 및 제한정비 지역 내의 등록공장의 집단화 및 계열화를 통한 업종별 협동화 도모

○ 상업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부존자원 활용과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

다. 추진경위

- 94. 3. 23 단지 지정(경기도고시 제3호)
- 94. 6. 10 실시계획승인(경기도고시 제157호)
- 95.12. 29 공사착공
- 98.12. 11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경기도고시 제505호)
- 99. 6. 4 공사준공

라. 분양현황

(단위 ㎡)

구 분	분양대상	분 양 현 황			조성기간	사업시행자
		합 계	분 양	미분양		
계	50,114	50,114	34,809	15,305		
산업시설 구 역	50,114	50,114	34,809	15,305	1994 ~ 1998	가평군수

마. 입주현황

구 분	입 주 업 체 수			면 적(㎡)		
	계	제조업	기 타	계	제조업	기 타
계	16	16	-	50,114	50,114	-
2001.2월말	11	11	-	34,809	34,309	-
향후계획	5	5	-	15,305	15,305	-

바. 입지여건

○ 도 로 국도 46호선(11㎞) 및 지방도 363호선(2㎞)
○ 철 도 경춘선(가평역 10㎞)
○ 항 만 인천항(100㎞)
○ 용 수 자체수원 확보(공업용수 522톤/일, 생활용수 61톤/일)
○ 전 력 지구북측 고압선로에서 인입공급(1,779KVA)
○ 오폐수 북면하수종말처리장 유입처리
○ 통 신 가평전화국에서 87회선 공급
○ 폐기물 생활쓰레기는 수거, 산업폐기물은 위탁처리

2.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가. 기본방향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 "산집법"이라함) 제38조,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신설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업체를 입주시켜 생산활동 지원
○ 산업용지는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되, 부득이한 경우 산업시설구역중 일부는 물류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

나. 추진방향

- 공장시설 용도를 업종별(섬유,화학,기계 등)로 세분하여 배치 및 관리
- 업종별 배치에 맞는 기반시설 설치 및 확충
- 환경오염 및 공해업소 이전 유도

다. 산업단지 용도별 구획 계획

1) 용도별 구획 면적

(단위 천㎡)

총 면 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59,500 (100%)	50,114 (84%)	500 (1%)	6,500 (11%)	2,386 (4%)

□ 산업시설구역 세부용도

(단위 ㎡)

공장시설	물류시설	지식산업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기타
50,114	-	-	-	-

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시설구역

산집법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나) 지원시설구역

① 산집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동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입주 기업체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② 건축법 시행령 부표(건축물의 용도분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운수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3) 용도별 구획평면도 생략

다. 업종별 배치계획

1) 업종별 배치현황

구 분	배치계획		2003. 8월말 현재		향후계획	
	업체수	면적(㎡)	업체수	면적(㎡)	업체수	면적(㎡)
합 계	16	50,114	11	34,809	5	15,305
음·식료품 제조업	7	16,501	4	11,501	3	5,000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4	10,421	3	5,330	1	5,091
첨단산업제품제조 및 연구시설	1	14,872	1	14,872	-	-
목제제조업	3	3,106	3	3,106	-	-
보관 및 창고업	1	5,214	-	-	1	5,214

2) 입주업체 위치도 생략

라. 입주관리계획

1) 입주대상업종

음 · 식료품, 조립 · 금속제품중 도시형 업종, 첨단산업제품제조, 보관 및 창고업종. 다만 분양 심의위원회 부결시는 예외로 한다

2) 입주자격

○ 산집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한 입주 자격을 갖춘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및 산집법 시행령 제27조에서 정한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공업용수 다소비업종 및 산업단지 입주 부적격업체는 제외

3) 입주 우선 순위

- 1순위 가평군내 기존공장을 이전하는 공장
- 2순위 수도권내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에서 공공사업시행 및 도시 정비를 위해 이전이 불가피한 공장
- 3순위 산집법 부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이전 조건부로 등록한 공장
- 4순위 과밀억제권역에서 산집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이전신고를 필하고 기존공장을 멸실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매각하고 이전하는 공장
- 5순위 기타 입주자격을 갖추고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

4) 입주절차

분양신청서 접수 → 서면심사 → 분양심의위원회 심의 → 협약체결

5) 분양한도 1,000㎡ 이상

마. 사후관리계획

1) 산업용지 관리 산집법 및 산업단지관리지침,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사후관리

2) 환경관리 생활쓰레기는 수거처리, 오·폐수는 북면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하여 처리(현재 가동중)

3) 안전관리 입주업체별 별도관리

바. 입주기업체 지원사업 추진계획

○ 공장설립지원 창업자금 융자 알선

○ 생산활동지원 생산품 우선구매 및 구인알선

○ 근로자 복지후생 지원 별도계획 없음

○ 지원시설 설치계획 : 별도계획 없음

사. 기타 산업단지 운영에 관한 사항

○ 산업단지 전담업무자 지정 운영

○ 산업단지 관리위원회 구성 및 활성화 지원

검준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1. 산업단지 개요

가. 관리기관 양주시

나. 조성목적

○ 국토이용관리법 · 환경관련법 등 각종 법규에 제한되어 정상적으로 공장운영을 할 수 없는 폐쇄 위기의 조건부 공장들을 집단화

○ 정상적인 등록을 해줌으로써 계속적인 조업은 물론 작업환경 정비를 통한 생산성 제고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함.

다. 추진경위

- '97. 7. 8 공업지역 물량 배정 (주내면 만송리 100,000㎡)
- '98. 2.23 공업지역 공급계획 변경 승인 (남면 상수리)
- '99. 4. 1 단지 지정승인
- '99. 7.27 공업용지 공급계획변경승인
- '00. 3.17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 '03. 7. 3 준공인가

라. 분양현황

(단위:㎡)

구 분	분양대상	분 양 현 황			조성기간	사업시행자
		합 계	분 양	미분양		
계	112,507	112,507	112,507	-	'98.2 ~ 2002.6	양주군
산업시설구역	88,307	88,307	88,307	-		
지원시설구역	24,200	24,200	24,200	-		

마. 입주현황

구 분	입주업체수			면 적(㎡)		
	계	제조업	기 타	계	제조업	기 타
2001. 2월말현재	-	-	-	-	-	-
향 후 계 획	60	60	-	88,307	88,307	-

바. 입지여건

⊙ 도 로

- 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구리 IC(30km) 이용(동두천 12㎞, 의정부 7㎞)
- 국 도 3번(동두천↔양주↔의정부)
- 지 방 도 360번(덕정↔파주)국도 3호선, 국가지원지방도 39호선, 56호선과 연결

○ 철 도 경원선 덕정역(5.5㎞) 이용

○ 항 공 김포공항(51㎞) 이용

○ 항 만 인천항(80km) 이용, 대형선박 25척 동시접안, 화물하역능력 39,081천톤, 화물접안능력 58선좌

○ 용 수 광역상수도 6단계에서 공급(23,000㎥/일)

○ 전기·통신 총 수요전력 7,420KVA, 260회선

○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소각처리하고, 잔량에 대하여는 재활용 및 위탁처리

○ 폐수종말처리시설 23,000㎥/일

2.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가. 기본방향

○ 산업자원부 고시 제97-218호('97.12.31) 『적법지역 이전을 추진하는 기존 공장등록요령』에 의한 이전조건부 공장들을 입주시켜 생산활동을 지원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 "산집법" 이라함) 제38조,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신설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업체를 입주시켜 생산활동 지원

○ 산업용지는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되, 부득이한 경우 산업시설구역 중 일부는 물류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

나. 추진방향

○ 산업시설 용도를 업종별(염색, 도금등)로 세분하여 배치 및 관리

○ 업종별 배치에 맞는 기반시설 설치 및 확충

○ 환경오염 및 공해업소 이전 유도

다. 산업단지 용도별 구획 계획

○ 용도별 구획면적

(단위 ㎡)

총 면 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145,000 (100%)	88,307 (60.9%)	1,500 (1.0%)	43,909 (30.3%)	11,284 (7.8%)

○ 산업시설구역 세부용도

(단위 ㎡)

공장시설	물류시설	지식산업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기 타
88,307	-	-	-	-

○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 산업시설구역 산집법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 지원시설구역

- 산집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동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 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부표(건축물의 용도분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운수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 공공시설구역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 녹지구역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 용도별 구획 평면도 생략

라. 업종별 배치계획

○ 업종별 배치현황

구 분 / 업종별	배치계획		2000.12월말 현재		향 후 계 획	
	업체수	면적(㎡)	업체수	면적(㎡)	업체수	면적(㎡)
합 계	60	88,307	60	88,307	60	88,307
섬유제품제조(염색)	57	86,324	57	86,324	57	86,324
조립금속(도금)	3	1,983	3	1,983	3	1,983

○ 업종별 배치계획도 생략

마. 입주관리계획

○ 입주 대상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중분류 174(섬유염색 및 가공업), 289(기타 조립금속제품 제조 및 금속처리업)

○ 입주자격

• 산업시설구역

산집법 시행령 제6조의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및 산집법 시행령 제27조에서 정한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중 염색, 도금등의 공해배출업체

- 지원시설구역
  - 산집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으로서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
  - 건축법 시행령 별표(건축물의 용도분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전시시설, 운수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입주 우선순위

- 양주시내의 이전조건부 공장으로써 기존공장은 폐쇄하고 이전하고자 하는 자
- 경기도내 이전조건부 공장으로써 기존공장은 폐쇄하고 이전하고자 하는 자
- 양주시내의 업체로서 입주업종(염색,도금)의 업종을 하고자하는 자중 이전하고자 하는 공장
- 기타 입주자격을 갖추고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

○ 입주절차

- 분양, 양도양수(경락포함), 임대방법으로 공장취득
- 산업단지 입주계약신청
- 입주가능여부 검토후 입주계약 체결

바. 사후관리계획

○ 산업용지 관리

산집법 및 산업단지관리 지침,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사후관리

○ 환경관리

환경성검토 결과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 허용기준에 따라 사후관리

○ 안전관리

산집법에 따라 사후관리

사. 입주기업체 지원사업 추진계획

○ 공장설립 지원

- 세제혜택
  - 취득세, 등록세 전액 면제
  - 재산세, 종토세 5년간 50% 감면
- 중소기업진흥공단 자금지원 알선

○ 생산활동 지원

- 취업알선
  - 직업안정법 제4조의 2에 의하여 입주업체에 신속하고 다양한 구직 정보를 제공하여줌으로써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
  - 읍·면사무소의 취업알선창구 및 군청의 취업상담센타 설치운영

○ 지원시설 설치계획

구 분	시설명	배치계획		2000.12월말 현재		향후계획	
		업체수	면적(㎡)	업체수	면적(㎡)	업체수	면적(㎡)
관리운영	관리사무소	1	1,500	0	0	1	1,500

상수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1. 산업단지 개요

가. 관리기관 상수지방산업단지 협의회

나. 조성목적

○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효과 극대화

○ 입주희망업체에 대한 저렴한 공업용지 분양

다. 추진경위

- '90. 2. 10 수도권정비심의 위원회 심의승인(건설부)
- '90. 4. 11 공업용지 조성공사 착공
- '91. 2. 5 공업용지 조성사업 협약(공영개발사업단)
- '92. 4. 15 국토이용계획 변경고시
- '92. 10. 5 공사준공
- '95. 2. 14 지방산업단지지정승인

라. 분양현황

(단위:㎡)

구 분	분양대상	분 양 현 황			조성기간	사업시행자
		합 계	분 양	미분양		
계	50,553	50,553	50,553	0	'90.4.11 ~ '92.10.5	양주군
산업시설구역	48,374	48,374	48,374	0		
지원시설구역	2,179	2,179	2,179	0		

마. 입주현황

구 분	입주업체수			면 적(㎡)		
	계	제조업	기 타	계	제조업	기 타
2001. 2월말현재	7	7	0	42,482	42,482	0
향 후 계 획	1	1	0	5,892	5,892	0

바. 입지여건

○ 도로

- 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구리 IC(30km) 이용(동두천 12km, 의정부 7km)
- 국 도 3번(동두천↔양주↔의정부)
- 지 방 도 360번(덕정↔파주)국도 3호선, 국가지원지방도 39호선, 56호선과 연결

○ 철 도 경원선 덕정역 (6.5km) 이용

○ 항 공 김포공항(51km) 이용

○ 항 만 인천항(80km) 이용, 대형선박 25척 동시접안, 화물하역능력 39,081천톤, 화물접안능력 58선좌

○ 전력 2.5kw

2.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가. 기본방향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 "산집법" 이라함) 제38조,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신설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업체를 입주시켜 생산 활동 지원

○ 산업용지는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되, 부득이한 경우 산업시설구역 중 일부는 물류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함.

나. 추진방향

○ 산업시설 용도를 업종별로 세분하여 배치 및 관리

○ 기술개발 및 산업정보 제공

○ 업종별 배치에 맞는 기반시설 설치 및 확충

다. 산업단지 용도별 구획 계획

○ 용도별 구획면적

(단위 ㎡)

총 면 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59,162 (100%)	48,374 (81.77%)	57.1 (0.09%)	10,730.9 (18.14%)	- (0%)

○ 산업시설구역 세부용도

(단위 ㎡)

공장시설	물류시설	지식산업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기 타
88,307	-	-	-	-

○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 산업시설구역

  산집법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 지원시설구역

  ① 산집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동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입주 기업체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② 건축법 시행령 부표(건축물의 용도분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운수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 공공시설구역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 녹지구역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 용도별 구획 평면도 생략

라. 업종별 배치계획

○ 업종별 배치현황

구 분 / 업종별	배치계획		2000.12월말 현재		향 후 계 획	
	업체수	면적(㎡)	업체수	면적(㎡)	업체수	면적(㎡)
합 계	8	48,374	7	42,482	1	5,892
가죽,가방및신발제조	2	7,994	2	7,994	0	0
화합물및화학제품제조	1	15,255	1	15,255	0	0
고무및플라스틱제조	2	9,802	2	9,802	0	0
금속제품제조	1	6,287	1	6,287	0	0
기타기계및장비제조	1	3,144	1	3,144	0	0
기 타	1	5,892	0	0	1	5,892

○ 입주업체 위치도 생략

마. 입주관리계획

○ 입주대상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전 제조업
(단, 용수 다소비 업종, 특정유해물질 배출업종, 수질 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 대상업종 및 산업단지 입주 부적격업종은 제외)

○ 입주자격

- 산업시설구역
  - 산집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및 산집법 시행령 제27에서 정한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물류업을 영위하기 위한자, 다만 기존의 물류업을 영위하는 자를 우선하여 입주
- 지원시설구역
  - 산집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으로서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
  - 건축법 시행령 별표(건축물의 용도분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전시시설, 운수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입주 우선순위

- 양주시 이전촉진권역에 산재되어 있는 공장중 이전하고자 하는 공장
- 양주시의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공장
- 양주시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공장중 이전하고자 하는 임차공장
- 양주시 관내에서 기존공장은 폐쇄하고 이전하고자 하는 자가공장
- 기타 입주자격을 갖추고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

○ 입주절차

분양, 양도양수(경락포함), 임대방법으로 공장취득 → 산업단지 입주계약신청 → 입주가능여부 검토후 입주계약 체결

바. 사후관리계획

○ 산업용지 관리

산집법 및 산업단지관리 지침,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사후관리

○ 환경관리

환경성검토 결과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 허용기준에 따라 사후관리

○ 안전관리

산집법에 따라 사후관리

사. 입주기업체 지원사업 추진계획

○ 취업알선

- 직업안정법 제4조의 2에 의하여 입주업체에 신속하고 다양한 구직 정보를 제공하여줌으로써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
- 읍·면사무소의 취업알선창구 및 군청의 취업상담센타 설치운영

장안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1. 산업단지 개요

가. 관리기관 여주군

나. 조성목적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내 중소기업체의 이전 및 신·증설 하고자 하는 업체를 입주시켜 지역경제 발전과 고용증대 도모

다. 추진경위

○ '96. 12. 10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건교부, 가결)
○ '97. 08. 22 지방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사업시행자 지정
○ '97. 12. 23 수도권정비원원회 심의사항 변경승인(건교부)
※ 토지이용계획 변경
○ '98. 01. 05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경기도)
○ '98. 10. 28 공사 착공
○ '99. 07. 05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경기도)
○ '00. 07. 01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경기도)

라. 분양현황

(단위 ㎡)

구 분	분양대상	분 양 현 황			조성기간	사 업 시행자
		합 계	분 양	미분양		
계	45,400	45,400	45,400	-		
산업시설구역	44,583	44,583	44,583	-	'97 ~ '01.6	여주군수
지원시설구역	817	817	817	-	-	-

마. 입주현황

구 분	입 주 업 체 수			면 적(㎡)		
	계	제조업	기 타	계	제조업	기 타
계	2	2		44,583	44,583	
2003.8월말 현재	2	2		44,583	44,583	
향 후 계 획	-	-		-	-	

바. 입지여건

○ 산업지구 북측 약 5.3㎞ 지점에 영동고속도로가 위치해 있고, 산업지구 서쪽 약 7.8㎞ 지점에 중부내륙고속도로가 통과예정이며, 10㎞ 지점에 여주J·C가 입지할 예정으로 경기동부권과 경북권을 연결하는 광역교통 체계 확립

○ 국도 37호선(약 3Km)과 구지방도 335호선이 사업지구와 연접

○ 내부도로는 원활한 화물교통의 처리를 위해 8m와 12m도로(L=364m) 입지

○ 단지내에 오·폐수처리장을 설치하여 공장폐수 및 생활하수를 전용관을 통해 자체 처리후 방류

○ 전력공급은 한전 이천변전소에서 22.9KV-Y 방식으로 공급

○ 용수공급은 굴착심정을 개발하여 공급

○ 통신회선공급은 한국전기통신공사 여주 전화국에서 81회선 인입

2.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가. 기본방향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 "산집법" 이라함) 제38조,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신설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업체를 입주시켜 생산활동 지원

○ 산업용지는 산업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으로 구획하여 정리

나. 추진방향

○ 공장시설 용도를 입주업체별로 세분하여 배치 및 관리

○ 입주 업종에 맞는 기반시설설치 및 확충

다. 산업단지 용도별 구획 계획

1) 용도별 구획 면적

(단위 ㎡)

총 면 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59,425 (100%)	44,583 (75.0)	-	4,505 (7.6%)	10,337 (17.4%)

□ 산업시설구역 세부용도

(단위 ㎡)

공장시설	물류시설	지식산업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기타(부대)
44,583	-	-	-	-

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시설구역

산집법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공장의 부대시설

나) 지원시설구역 계획없음

다) 공공시설구역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라) 녹 지 구 역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3) 용도별 구획 평면도 생략

라. 업종별 배치계획

(단위 ㎡, 개사)

업 종	업 체 수	면 적	비 고
합 계	2	44,583	
도자기 제조업	2	44,583	
기 타 제 조 업	-	-	

※ 업체수는 분양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마. 입주관리계획

1) 입주대상업종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도자기 및 기타요업제품 제조업)

※ 대기 및 수질환경오염과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업종은 제한

2) 입주자격

○ 산업시설구역

산집법 제2조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추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제4항에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업체

3) 입주 우선 순위

가) 입주대상업체 우선순위

○ 1순위 여주군에 소재한 공장으로 입주대상 공장에 해당되어 이전을 희망하는 업체

○ 2순위 수도권 소재 업체중 공공사업으로 철거되어 당해 지방산업단지로 이전을 희망하는 첨단 업종의 공장

○ 3순위 수도권 소재 업체중 용도지역에 불합리하게 설치되어 당해 지방산업단지로 이전을 희망하는 첨단 업종의 공장

○ 4순위 수도권 소재 업체중 당해 지방산업단지로 이전을 희망하는 희망하는 첨단 업체의 공장

※ 동일 순위간의 경쟁에 대하여는 공개추첨의 방식으로 입주자 선정

나) 입주제외 대상업체

○ 수질환경보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대기유해물질 배출공장, 수질 배출허가 대상공장(단, 배출되지 않고 위탁처리시 제외)

○ 환경저해 및 입주업체 생산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장

○ 분양신청을 이중으로 한 업체

4) 입주절차 및 분양한도

○ 입주절차 입주자격 심사 →입주계약 체결 → 공장설립 완료신고

○ 분양한도 500㎡이상

바. 사후관리계획

○ 산집법 및 산업단지관리지침,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사후관리

탄현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1. 산업단지의 개요

가. 관리기관 파주시

나. 조성목적

o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지역간의 불균형 해소와 지방재정 자립도 향상에 기여

o 체계적인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파주·고양 등 수도권 지역에 산발적으로 난립되어 있는 가구공장을 입주시켜 집단화 형성

다. 추진경위

· 1996. 8. 국토이용계획(안)변경 입안(준농림지역→준도시지역)

· 1996. 11.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에 따른 환경성검토 협의 (한강환경관리청 → 파주시)

· 1996. 12.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 고시(파주시고시 제1996-63호)

· 1999. 5. 지방산업단지 지구지정을 위한 환경성검토 협의요청

· 2000. 6. 지구지정/개발계획/사업시행자 승인신청(파주시→ 경기도)

· 2000. 12. 지구지정/개발계획/사업시행자 승인 (경기도고시 제2000-5114호)

· 2001. 4.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경기도고시 제2001-5023호)

· 2001. 9. 개발사업 준공인가(경기도고시 제2001-5109호)

· 2003. 6.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경기도고시 제2003-154)

라. 분양현황

(단위:㎡)

구 분	분양대상	분 양 현 황			조성기간	사업시행자
		합 계	분 양	미분양		
계	85,870.7	85,870.7	85,870.7	-	2001 ~ 2002. 1	파주통일산업단지조합
산업시설구역	83,908.5	83,908.5	83,908.5	-		
지원시설구역	1,962.2	1,962.2	1,962.2	-		

마. 입주현황

구 분	입 주 업 체 수			면 적(㎡)		
계	계	제조업	기 타	계	제조업	기 타
2003. 8월말 현재	31	31	-	83,908.5	83,908.5	-
향후계획	-	-	-	-	-	-

바. 입지여건

시 설 명	총 계 획	2003. 8월말 현재	향후 확충계획		
			사업기간	규 모	시행기관
도 로 용 수 전 력 통 신	10,375㎡ 94.1톤/일 8,612KVA 180회선	10,375㎡ 94.1톤/일 8,612KVA 180회선	-	-	-

2. 산업단지 관리계획

가. 관리방향

o 중소기업의 이전을 수용하여 지원시설 및 공장시설의 설치, 운영등을 통해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고 공장용지를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으로 관리함.

나. 산업단지 용도별 구획 계획

1) 용도별 구획 면적

(단위 ㎡)

총 면 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 지 구 역
122,871.3 (100%)	83,908.5 (68.3%)	13,113.2 (10.7%)	11,781.3 (9.6%)	14,608.3 (11.4%)

2) 산업시설구역 세부용도

(단위 ㎡)

공장시설	물류시설	지식산업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기 타
83,908.5	-	-	-	-

3)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시설구역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 "산집법" 이라함)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나) 지원시설구역

① 산집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동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② 건축법 시행령 부표(건축물의 용도분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운수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다) 공공시설구역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라) 녹지구역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4) 용도별 구획 평면도 생략

다. 업종별 배치 현황

o 업종별 배치현황

구 분 업종별(분류번호)	배치계획		2003. 8월말 현재		비고
	업체수	면적(㎡)	업체수	면적(㎡)	
합 계	31	83,908.5	31	83,908.5	
가구및기타제품 제조업(36)	12	53,793.1	12	53,793.1	
조립금속제품 제조업)28)	13	21,216.6	13	21,216.6	
목 재 및 나무 제조업(20)	2	4,349.9	2	4,349.9	
출 판 및 인 쇄 제조업(22)	2	3,887.7	2	3,887.7	
프라스틱제품제조업(25)	2	661.2	2	661.2	

라. 입주기업체 관리계획

1) 입주대상업종

o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36, 28, 20, 22, 25) 제조업

※ 다만, 관리기관은 용수 다소비업종, 용지 과다소요업종 등 산업단지 입주 부적격 업종에 대하여 미리 그 업종을 공고한 후 입주를 제외할 수 있음.

2) 입주제한 업종 생략

3) 입주자격

ㅇ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산집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업체. 다만, 산집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이 아닌 공장 및 공업용수 다소비업종에 대하여는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

4) 입주시 우선 순위

ㅇ1순위 파주시, 고양시 일대에 등록된 공장으로서 이전이 불가피한 공장

ㅇ2순위 파주시, 고양시 일대의 무등록공장 및 임대공장으로서 이전을 희망하는 업체

ㅇ3순위 기타 입주자격을 갖추고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

마. 사후 관리계획

○ 산집법, 지방산업단지관리지침 및 파주탄현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의거 관리

- 입주기업체 협의회를 구성 공동관리부분 제비용(오수처리 비용, 일반관리비, 기타 공동소요 비용등)은 분양평형별로 관리비 부과 및 징수 관리

바. 입주기업체 지원시설 추진계획

1) 생산활동지원 주차장 741㎡, 오수처리장 400㎡

2) 근로자 복지후생 지원 종합상가 1962.2㎡

3) 지원시설 설치계획

구 분	시설명	배 치 계 획		2001.10월말현재		향 후 계 획	
		업체수	면적(㎡)	업체수	면적(㎡)	업체수	면적(㎡)
후생복지 지원시설	종합상가	1	1962.2	-	-	1	1962.2

사. 기타 산업단지 운영에 관한 사항

1) 도로계획

구 분			폭원(m)	연장(m)	노선수	비고
등급	유별	번호				
계			-	946	2	
중로	2	1	15	106	1	
소로	1	1	10	842	1	

2) 용수계획

구 분	용수량(㎥/일)	비 고
계	94.1	파주시 상수도 공급 협약체결에 의거 수급
공 업 용 수	-	
생 활 용 수	94.1	

3) 오·폐수처리계획

구 분	발생량(㎥/일)	비 고
계	88.1	단지내 오수처리장에서 통합처리
공 업 폐 수	-	
생 활 오 수	88.1	

4) 폐기물처리계획

구 분	발생량(kg/일)	비 고
계	3,399	· 지정폐기물 : 위탁처리 · 생활폐기물, 가연성폐기물 : 파주시 쓰레기위생처리시설에서 처리
산 업 폐 기 물	2,319	
생 활 폐 기 물	1,080	
폐수처리장슬러지	-	

5) 전기공급계획

전력량(KVA)	비 고
8,612	본단지와 인접한 전력선에서 인입

6) 통신시설계획

회선수	비 고
185	파주관내 전화국에서 공급

별첨

입주제한 업종

분류번호	업 종 명	분류번호	업 종 명
15311, 15312	곡물도정 및 제분업	17401	솜 및 실 염색 가공업
15111	도축업	17402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 가공업
23100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업	17403	나염 가공업
26311	시멘트 제조업	17409	기타 섬유염색 및 정리업
26322	레미콘 제조업	19101	원피 가공업
26326	콘크리트관 및 조립구조재 제조업	18201	원모피 가공처리업
26325	콘크리트타일,기와,벽돌 및 블록제조업	21110	펄프 제조업
26921	아스콘 제조업	21121	신문용지 제조업
26922	아스팔트 성형제품 제조업	21122	인쇄 및 필기용지 제조업
21129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21123	크리프크지 및 상자용 판지 제조업
		20212	강화 및 재생목재 제조업

발안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1. 산업단지 개요

가. 관리기관 : 화성시

나. 조성목적

○ 서해안 시대를 대비한 경기지역 발전의 거점적 역할 수행
○ 수도권내 성장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산업단지 개발 공급 도모

다. 추진경위

○ '92. 9.22 수도권정비계획 개발유도권 개발계획고시
○ '95. 8.12 발안지방산업단지 개발사업 착수
○ '97. 7.22 산업정책심의회 개최(건설교통부)
○ '97. 9. 1 지구지정승인 및 개발계획승인, 사업시행자지정(면적 1,925천㎡)
○ '99.12.23 에너지사용계획심의(에너지관리공단)
○ '00. 2. 3 에너지사용계획협의완료(한국토지공사, 산업자원부)
○ '01.10.24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한국토지공사, 환경부)
○ '01.12.13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승인(경기도)
(면적변경 1,925,000㎡ → 1,845,700㎡)
○ '01.12.14 용지보상착수
○ '02. 9. 4 공사착공

라. 분양현황

(단위 ㎡)

구 분	분양 대상	분 양 현 황			조성기간	조성기관
		계	분양	미분양		
계	1,371,045	1,371,045		211,849	'97～'06	한 국 토지공사
산업시설구역	1,307,000	1,307,000	1,159,196	147,804		
지원시설구역	64,045	64,045	-	64,045		

마. 입주현황

구 분	입주업체수			면 적(㎡)		
	계	제조업	기타	계	제조업	기타
2004. 5월 현재	0	0	0	0	0	0
향 후 계 획	154	138	16	1,307,000	1,183,956	123,044

바. 입지여건

시 설 명	총 계 획	사업기간	시행기관
도 로(㎡)	274,982	'02 ~ '05	한국토지공사
용 수(㎥/일)	12,000	〃	한국토지공사
전 력(KVA)	154	〃	한국전력공사
통 신(회선)	2,106	〃	한국통신공사
오 · 폐수처리장(㎥/일)	5,000	〃	한국토지공사
폐기물처리장(㎡)	24,133	미 정	미 정

2.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가. 기본방향

O 합리적인 업종배치를 통한 산업단지 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입주기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산업단지 활성화 도모

O 인접지역 임해산업단지관련 업종과 전기 · 전자 등의 조립 가공업종, 첨단업종, 의약산업관련 업종의 원활한 입지제공과 고부가가치 생산 기업유치 및 공공사업시행에 따른 이전업체 등을 유치하여 경기지역의 중추거점 산업단지로 육성 발전

나. 입주 및 사후관리계획

1) 입주대상업종

가) 조립금속(28), 기계 및 장비(29), 컴퓨터/사무용기기(30), 전기기계/전기변환장치(31), 전자부품/영상/음향/통신장비(32)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33), 가구 및 기타제조업(36), 의약품(242), 연구/개발업(73), 정보처리(72),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74)

※ ( )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 번호임

나) 공용화물터미널, 집배송단지, 기계와 공구단지, 보관·창고·운송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산업

다) 폐기물관리법 제26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업종

2) 입주자격 (산업시설 구역)

산집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공장으로 동법시행령 제27조의 2규정에 해당하는 공장

3) 입주우선 순위

가) 화성시 관내에서 이전 또는 확장하고자 하는 업체

나) 수도권에서 공공사업시행으로 이전하는 업체

다)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업체로서 화성시 소재 대기업의 협력업체

라) 수도권 지역에서 이전하는 업체

※ 수도권 지역별 우선순위

구 분	비공업지역		공업지역	
	비도시형 공 장	도시형 공 장	비도시형 공 장	도시형 공 장
과밀억제지역	1순위	2순위	5순위	6순위
자연보전지역	3순위	4순위	7순위	8순위
성장관리지역	9순위	10순위	11순위	12순위

마) 산업발전법 제5조에 의거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업종

바) 전년도 수출실적이 많은 업체

4) 사후관리 계획

산집법 및 산업단지관리지침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의거 관리

다. 산업단지 용도별 구분계획

1) 용도별 구획면적 (단위 ㎡)

총 면 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1,845,700 (100%)	1,307,000 (70.8%)	64,045 (3.5%)	298,902 (16.2%)	175,753 (9.5%)

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시설구역 산집법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나) 지원시설구역

① 산집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동법 제2조 제8호 및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② 관리기관이 입주업체 사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화성시 도시계획조례로 일반상 업지역내에서 허용되는 건축 가능한 업종
(단, 단독주택, 공동주택, 공장 등은 제외)

③ 제2호의 용도중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는 27-4블럭에 한한다.

다) 공공시설구역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라) 녹 지 구 역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3) 용도별구획 평면도 붙임 #1 (생략)

라. 업종별 배치계획

1) 세부 배치계획

(단위 개사, m²)

구 분		계		'04. 5월 현재		향후계획	
		업체수	면 적	업체수	면 적	업체수	면 적
계		159	1,307,000	146	1,159,196	13	147,804
산업시설용도	소 계	158	1,282,867	146	1,159,196	12	123,671
	조립금속(28),기계및장비(29)	52	390,720	42	332,602	10	58,118
	컴퓨터/사무용기기(30), 전기기계/전기변환장치(31), 전자부품/영상/음향/통신장비(32),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33)	33	326,491	33	326,491	-	-
	가구 및 기타제조업(36)	15	123,705	15	123,705	-	-
	의약품(242), 연구/개발업(73)	55	428,800	54	364,657	1	64,143
	정보처리(72),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74)	3	13,151	2	11,741	1	1,410
특정용도	폐기물 처리시설	1	24,133	-	-	1	24,133

※ 업체수는 분양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배치기준

가) 업종별 블록화 배치

나) 관련업종 인접 배치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 또는 유사업종별로 배치 하되 산집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배치함

3) 업종별 배치계획도 붙임 #2 (생략)

마. 중소기업에 대한 임대용지 공급

1) 목 적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및 단지활성화 도모

2) 임대용지 면적 64,143m²(19,403평)

3) 임대 운영계획

가) 입주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나) 유치업종 의약품(242), 연구 및 개발업(73)

※ ( )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 번호임

바. 입주기업체 지원사업 추진계획

1) 공장설립지원

공장설립 업무 인·허가 절차대행 및 현지출장으로 신속한 업무 처리

2) 생산활동 지원

생산활동 기반구축을 위해 입주업체의 원부자재 및 생산제품의 운송·보관이 편리하도록 물류업체 유치

3) 고용증대 및 근로자복지사업

산업인력공단, 산업안전공단 등을 통한 근로자의 기술능력향상 교육 실시

4) 지원시설 설치계획

관리사무소, 창업보육센타, 소방파출소, 우체국, 파출소, 은행 등

파주 오산지방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1. 산업단지 개요

가. 관 리 기 관 : 파 주 시

나. 조 성 목 적

○ 수도권 지역에 난립해 있는 인쇄공장을 집단화, 현대화하여 환경오염방지

○ 21세기 첨단산업에 대비한 산업시설의 확충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 향상

○ 인구의 지방정착 기여

다. 추 진 경 위

- 1997. 7. 3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에 의한 공업지역 승인(건교부)
- 1997. 10. 14 단지 지정신청
- 1997. 11. 19 단지 지정 공고(파주시)
- 1998. 2. 2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경기도)
- 1998. 8. 7 지정 및 개발계획변경 승인(경기도)
- 1999. 11. 22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경기도)
- 2000. 10. 25 공업지역 공급계획 변경승인
- 2003. 7. 7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경기도)

라. 분 양 현 황

총 면 적	분 양 가 능 면 적(㎡)					조성기간	조성기관
	합 계	분 양	미 분 양				
		조 성	소 계	조 성	미 조 성		
230,811	171,341	171,341	-	-	-	1997~2003	파주인쇄공업사업협동조합

마. 입 주 현 황

구 분	입 주 업 체 수			면 적 (㎡)		
	계	인쇄관련업	기 타	계	인쇄관련업	기 타
합 계	58	58	-	171,341	171,341	-
2003년11월현재	-	-	-	-	-	-
향 후 계 획	58	58	-	171,341	171,341	

바. 입 지 여 건

시 설 명	총 계 획	2003년 현재	시 행 기 관	향후 확충계획
단지내 도로(M)	1,445.00	1,445.00	파주인쇄공업사업협동조합	없 음
용수량(㎥/일)	405.36	406	〃	〃
전력(KVA)	30,000	30,000	〃	〃
통신(회선)	600	600	〃	〃
오수처리(㎥/일)	400	400	〃	〃
폐수처리(㎥/일)	11.6(위탁처리)	위탁처리	〃	〃

2.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가. 관리기본계획

- 지형여건을 최대한 이용하여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단지조성
- 공단의 용도별 구획을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기반시설용지, 녹지 등을 감안하여 계획
- 충분한 녹지공간계획으로 종업원의 쾌적한 환경 조성
- 자동차 수용증대와 방문객을 위한 주차장 계획 확보
- 공공시설계획과 공해방지를 위한 완벽한 시설 설치
-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가로망체계 구상

나. 입주 및 사후관리계획

1) 입주업종

- 본 사업지구의 유치업종은 인쇄업자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개발하는 인쇄산업단지이므로 인쇄관련업종
- 총 조합원수가 58명(58개업체)으로 이루어진 인쇄공업사업 협동조합으로 구성

2) 입주자격(산업시설구역)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 '산집법' 이라 한다)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공장으로 동법시행령 제27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공장으로 해당 인쇄조합으로부터 입주자격을 부여받은 인쇄관련업체

3) 사후 관리계획

- 산집법, 산업단지 관리 지침과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의거 관리

다. 산업단지 용도별 구획계획

1) 용도별 구획 면적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	비 고
계		230,811	100.0	
산 업 시 설 용 지		171,341	74.2	
지원시설	소 계	4,394	1.9	
	관 리 사 무 소	2,487	1.1	
	오 수 처 리 장	1,907	0.8	
도 로		21,062	9.1	
공 원		4,684	2.0	
완 충 녹 지		17,650	7.7	
경 관 녹 지		9844	4.3	
주 차 장		1,836	0.8	

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시설구역 산집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용도의 건축물

나) 지원시설용지 인쇄조합 관리를 위한 산업지원시설 건축물

다) 녹 지 구 역 녹지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라. 업종별 공장배치 계획

1) 업종별 배치계획

업 종	업 체 수	면 적(㎡)	비 고
인 쇄 관 련 업 (22)	58	171,341	인쇄업(22), 인쇄관련문구제조(21) 관련사출(25), 폐지가공(37) 및 물류창고를 포함한 인쇄관련업종

※ 업체수는 입주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배 치 기 준

- 지형여건 및 입주업체의 규모를 고려 배치
- 도로에서 직접 진입토록 계획
- 규모의 차이를 감안하여 분할 및 합병이 용이토록 계획
- 분양시 실수요에 따라 적절한 규모로 분할 계획

3) 업종별 배치계획

마. 산업지원시설 배치계획

1) 기 본 방 향

- 인쇄산업단지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입주업체에 효율적이고 활력있는 생산활동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시설을 완비
- 산업단지내 종사자들의 여가활동 및 쾌적한 노동활동에 적합하도록 시설물 선정 설치

2) 산업지원 시설 설치계획

가) 입주기업체 지원을 위한 시설

유 치 업 종	면 적 (㎡)	주 요 설 치 내 용
합 계	4,394	
관 리 사 무 소	2,487	사무실, 식당, 휴게실, 은행 등
공공 지원 시설	1,907	오수처리시설

나) 오.폐수 처리계획

- 총 오수발생량 400.00㎥/일
- 단지내 발생 오수는 공동 오수처리장에서 정화후 방류
- 총 폐수발생량 11.60㎥/일
- 폐수는 업체별 수거후 폐수위탁처리 업자에게 위탁처리함

다) 산업(일반) 폐기물 처리계획

- 산업폐기물 유치업종이 인쇄업인 점을 강안하여 재활용가능한 품목은 재활용업체에 위탁처리함.
- 일반폐기물 사업지구에서 발생되는 일반폐기물, 사업장 일반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은 적법한 절차에 의거 위탁처리함

라) 용수공급계획

- 단지내 용수공급계획은 파주시 수도사업소와 협의하여 405.36t/일을 공동으로 공급함

마) 전력수급계획

- 공급계획 30,000 KVA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공급계획 수립)

바) 통신시설계획

- 총 회선수 600회선 (한국통신공사와 협의하여 공급계획 수립)

사) 지방산업단지 관리를 위한 필요한 사항

- 기술개발 및 산업정보 제공
- 인력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도록 행정지원강화
- 신업단지의 각종 재해방지를 위한 방재계획 수립

붙임 1. 산업단지 입주제한업종 1부

2. 용도별 구획 평면도 1부(생략)

3. 업종별 배치 평면도 1부(생략)

(붙임-1)

산업단지 입주 제한업종

표준산업 분류번호	업 종	비 고
23210	원유정제처리업	
23221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23229	달리 분류되지않은 석유정제 분획물 재처리업	
23300	핵연료가공업	
26941	시멘트 제조업	
26942	석회 제조업	
26943	플라스틱 제조업	
26951	비내화 모르타르 제조업	
26952	레미콘 제조업	
26961	성형가공석재 및 석제품 제조업	
26993	아스팔트 제품제조업	
26995	비금속광물 분쇄처리업	
26996	인조흑연 및 기타 산소제품 제조업	
27111	제철업	
27112	합금철강 제조업	
27113	제강업	
271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철 및 제강업	
63204	위험물품보관업	
63209	기타 창고업	

파주LCD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1. 산업단지 개요

가. 관리기관 파주시

나. 조성목적

○ 첨단업종의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 산업의 합리적인 배치를 통하여 지역 균형개발

○ 한수 이북지역에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로 투자의 안보리스크 해소 및 대외 신인도 향상

다. 추진경위

○ 2003. 2. 4 : MOU 체결(경기도, 파주시, LPL)

○ 2003. 3.14 : 공동사업시행 협약(파주시, 경기지방공사)

○ 2003. 7.31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경기도 고시 제2003-199호)

○ 2003. 2.21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경기도 고시 제2004-49호)

라. 분양현황

구 분	총면적(㎡)	분양가능면적(㎡)					조성기간	조 성 기 관
		계	기분양	미 분 양				
				소 계	조 성	미조성		
계	1,695,724	1,233,236	-	1,233,236	-	1,233,236	'04. 2~'07.12	파주시, 경 기 지방공사
산업시설구역	1,167,813	1,167,813	-	1,167,813	-	1,167,813		
지원시설구역	44,091	44,091	-	44,091	-	44,091		
공공시설구역	281,424	-	-	-	-	-		
녹 지 구 역	181,064	-	-	-	-	-		
기 타 (이주자택지)	21,332	21,332	-	21,332	-	21,332		

마. 입주현황

구 분	입주업체수			면 적(㎡)		
	계	제조업	기 타	계	제조업	기 타
계	6	4	2	1,167,813	1,119,976	47,837
2004. 3월 현재	-	-	-	-	-	-
향 후 계 획	6	4	2	1,167,813	1,119,976	47,837

※ 상기 사항은 입주 수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바. 입지여건

시 설 명	총 계 획	2004년 현재	시행기관
○ 도 로 - 광역접근도로 - 진입도로 - 단지내도로	◦ 국지도23호(자유로), 국도1호선(통일로) ◦ 군도 3호선, 군도 5호선 ◦ L = 6,328m	-	파주시 경 기 지방공사
○ 용 수 - 생활용수 - 공업용수	◦ Q = 3,396㎥/일 ◦ Q = 225,987㎥/일	-	
○ 전 력 - 규 모 - 면 적	◦ 수 요 량 : 6,263,791MWh/년 ◦ 부 하 량 : 829,677KVA ◦ A = 18,001㎡	-	
○ 통 신 - 규 모	◦ 2,738회선	-	
○ 에너지	◦ 열 수 요 량 : 2,923,944Gcal/년 ◦ 열 부 하 량 : 435Gcal/hr ◦ 연료 수요량 : 279,123LNC(천m^3/년)	-	
○ 폐수종말처리장 - 규 모 - 면 적	◦ Q = 228,223㎥/일 ◦ A = 79,270㎡	-	
○ 폐기물처리시설 - 규 모 - 면 적	◦ Q = 572.394톤/일 ◦ A = 29,836㎡	-	

2.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가. 관리기본방향

(1) 입주관리

가) 첨단기술산업, 외국인 투자기업, 원자재 공급사업, 수출증진 유망사업의 우선 지원 및 육성

나)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도로, 용수등 각종 기반시설의 원활한 공급지원

(2) 구역관리

가) 산업단지용지를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으로 구획하여 관리

나) 산업용지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조업과 산업시설이 복합입주하도록 관리

(3) 기업지원

가) 생산성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및 근로자 복지후생 지원

나) 산업공해를 최소화하여 쾌적한 단지 조성

다) 입주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시설자동화, 자금, 인력, 판매, 산업정보제공 등의 입주기업 지원강화

나. 산업단지 용도별 구분계획

(1) 용도별구역 면적

(단위 ㎡)

총 면 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기 타 (이주자택지)
1,695,724 (100%)	1,167,813 (68.9%)	44,091 (2.6%)	281,424 (16.6%)	181,064 (10.7)	21,332 (1.2%)

※ 산업시설구역 세부용도 (1,167,813 ㎡)

- 공장시설 1,119,976 ㎡
- 폐기물처리시설 29,836 ㎡
- 전력시설 18,001 ㎡

(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시설구역

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산집법"이라한다)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② 보관·창고·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공작물과 그 관련시설(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③ 자원비축시설용도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자원의 비축, 저장, 공급 등을 위한 건축물
④ 폐기물처리시설용도 폐기물수집 및 처리를 위한 건축물
⑤ 전력시설용도 발전소시설 등을 위한 건축물

나) 지원시설구역

① 산집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동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② 건축법시행령 별표(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근린공공시설 등의 시설로서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다) 공공시설구역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물

라) 녹지구역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3) 용도별구획 평면도 별첨 #1

다. 업종별 배치계획

(1) 배치기준
가) 유치업종 및 시설간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업종별 유치규모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검토하여 이를 근거로 효율적인 업종배치계획 수립
나) 업종별 규모 및 배치기준에 입각하여 업종별 집단화를 유도

(2) 업종별 배치계획

업 종			업체수	면 적(㎡)	비 고
합 계			6	1,167,813	
산업시설용도	소 계		4	1,119,976	
	전자부품,영상,음향,통신장비	액정표시장치	1	21,063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 음향기기	1	989,498	
	화 합 물 및 화 학 제 품	산업용가스	1	46,200	
	비 금 속 광 물 제 품	기타 산업용유리제품	1	63,215	
특정용도	소 계		2	47,837	
	폐기물처리시설		1	29,836	
	전 력 시 설		1	18,001	

(3) 업종별배치 계획도 별첨 #2

라. 입주관리계획

(1) 입주대상업종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

액정표시장치 제조업,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 음향기기 제조업, 산업용가스 제조업, 기타산업용유리제품 제조업 등(한국표준산업분류상 32196, 32300, 24121, 26129 업종)

나) 보관·창고·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한 산업

- 보관·창고업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3201~2, 63204(다만, 가스성화물 보관은 제한), 63209 업종
- 운송업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0311~2, 61112, 61122, 61203 업종

다)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 및 처리업

다만,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건설폐기물, 감염성 폐기물, 생활폐기물, 분뇨처리업, 축산폐기물의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

라)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및 민자발전사업추진기본계획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

마) 입주업체 사업지원을 위하여 금융·보험·의료·교육 및 산집법시행령 제6조 제6항에서 정하는 사업

(2) 입주자격

가) 산업시설구역

① 산집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자로서 기존공장을 이전하거나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 또는 증설하는 공장

② 보관·창고·운송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③ 폐기물수집 및 처리를 위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지정용도에 한함)

④ 발전소시설 등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지정용도에 한함)

나) 지원시설구역

① 산집법 제2조 제12호 규정의 지원기관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자

②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한자

③ 산업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④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 시설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로서 동시설에 입주자격을 갖추었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자

(3) 입주절차

산집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계약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

마. 사후관리계획

(1) 목표

산집법, 산업단지관리지침 및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의거 산업단지의 합리적·효율적 관리도모

(2) 세부관리계획

가) 분양용지의 관리

① 산업단지내 분양용지는 산집법, 산업단지관리지침 및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사후 관리

② 입주기업체가 공장 등의 설립을 완료하기 전(나대지등)에 분양용지를 처분하는 경우 관리기관이 매수함. 다만,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을 경우 산집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매수신청을 받아 양도할 수 있음.

③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④ 경매 기타법률에 의하여 공장등을 취득한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법정기간내 미계약시는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함.

⑤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당해 산업용지를 환수할 수 있으며, 산집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함.

⑥ 이주택지는 원활한 사업추진과 민원해소차원에서 특별히 공급하는 것이므로 관리기관에서 별도 관리할 필요성이 없으며, 거주대상자가 입주한 후 관리하여야 함(택지분양과 동일). 다만, 이주택지의 세부구획으로 인한 가로망 및 녹지 등의 공공시설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6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므로 관리기관인 파주시에서 공공시설의 종류에 따라 관계부서에서 별도 관리토록 함.

나) 환경관리

① 입주업체는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진동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배출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환경오염의 사전 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② 관리기관은 산업단지내 폐수처리장과 폐기물처리장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단지내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이 적절히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

다) 안전관리

① 관리기관은 풍수해 등 재해와 치안유지를 위해 산업단지내 파출소, 소방파출소 등을 유치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과 재해복구 협조체제 구축

② 입주기업체는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함

③ 예비군편성과 단지방호는 지자체 및 군부대와 협의하여 산업단지 특성을 감안한 방호계획이 수립되도록 협조체제 구축

라) 기반시설지원

관리기관은 산업단지내 도로, 전력, 용수 등 기반시설의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공급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바. 입주기업체 지원사업 추진계획

(1) 공장설립지원

가) 입주기업체가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공장건축을 하는 경우 관계 법률상의 인·허가 업무 대행 또는 지원활동을 함

나)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을 완료하고 관리기관에 공장설립 완료신고시 완료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공장등록대장에 기록하고 등록사실을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함.

(2) 생산활동 기반 구축

가) 생산활동 기반구축을 위해 산업단지내 물류부지를 조성하여 입주기업체의 원자재 및 생산제품의 운송·보관이 편리하도록 물류업체 유치

나) 생산활동을 위한 도시가스, 열공급 등 원활한 에너지공급을 통한 입주기업체 지원도모

다) 인력수급의 원활화를 위해 무료취업 알선과 외국인근로자의 관리, 병역특례업체 지정관리 등을 통한 입주기업체 지원도모

(3) 근로자 복지후생 지원

가) 단지내 근로자복지관, 탁아시설 등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근로자의 여가 활용을 지원하고, 주부들의 취업지원도모

나) 산업단지 공원내 운동장, 테니스장등의 대규모 운동시설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체력향상을 도모하고 입주업체의 각종 행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4) 지원시설 설치계획

가) 폐수처리계획

① 공장폐수(약 224,964㎥/일)는 개별업체에서 1차 처리한 후 생활오수(약 3,209㎥/일)와 함께 분류식 오·폐수관에 연결시켜 폐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후 방류

② 폐수종말처리장 설치계획

· 면　　적　79,270㎡

· 처리용량　228,223㎥/일(공장폐수 224,964㎥/일, 생활오수 3,209㎥/일, 침출수 50㎥/일)

나) 산업(일반포함) 폐기물 처리계획

① 폐기물발생량 : 사업장폐기물 570.198톤/일, 생활폐기물 2.196톤/일

② 배출시설계 폐기물중 가연성 폐기물과 폐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는 소각처리

③ 소각재 및 불연성 폐기물은 단지내 매립장에 매립처리

④ 지정폐기물은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 면　　적　29,836㎡

· 처리용량　일일소각량 90톤/일, 일일매립량 40.019톤/일

다) 용수공급계획

① 용수 수요량　229,383㎥/일(공업용수 225,987㎥/일, 생활용수 3,396㎥/일)

② 용수공급계획　322,000㎥/일(공업용수 226,000㎥/일, 생활용수 96,000㎥/일)

③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수행중인 한강하류권급수체계조정 1차사업에서 용수공급 (생활용수 포함)

④ 사업지구 인근에 공업용수 정수장을 신설하여 사업지구까지 공급

⑤ 한강하류권급수체계조정 1차사업 완료시까지는 우선 파주시 문산정수장에서 생활용수 공급

라) 전기공급계획

ㅇ 면　　적　18,001㎡

ㅇ 수 요 량　6,263,791MWh/년

ㅇ 전력부하 용량　829,677KVA

마) 기타 지원사업계획

① 통신수요　2,738회선

② 에너지공급계획　열수요량 2,923,944Gcal/년, 열부하량　435Gcal/hr

③ 공원시설계획　· 3개소 25,462㎡

④ 주차장공급계획　2개소 10,194㎡

용월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1. 산업단지 개요

가. 관리기관 : 안 성 시

나. 조 성 목 적

○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 산업재배치 정책에 부응

○ 지방화시대에 대비한 자립경제 기반 구축

○ 지역내 기존산업의 활성화로 경쟁력 제고 및 산업용지 수요충족

다. 추 진 경 위

○ 2000. 11. 27 안성용월지방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00-273호)

○ 2003. 4. 30 용월지방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승인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03-93호)

○ 2003. 3. 2 용월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승인
(경기도 고시 제2004-67호)

라. 분 양 현 황

(단위 ㎡)

총 면 적	분 양 가 능 면 적					조 성 기 간	조성기관
	합 계	분 양	미 분 양				
		조 성	소 계	조 성	미조성		
60,000	41,533	22,018	19,515	-	19,515	2003. 5 ~ 2004.12	재원공영

마. 입 주 현 황

구 분	입 주 업 체 수			면 적(㎡)		
	계	제조업	기 타	계	제조업	기타
합 계	10	10	-	41,533	41,533	-
2004년 3월 현재	5	5	-	22,018	22,018	-
향 후 계 획	5	5	-	19,515	19,515	-

바. 입 지 여 건

시 설 명	총 계 획	2004년 현재	시행기관	향후확충계획
단지내 도로(m)	568	-	재원공영	조성중
용 수(㎥/일)	69.1	-	〃	〃
전 력 (KVA)	784	-	〃	〃
통 신 (회선)	45	-	〃	〃
오수처리(㎥/일)	55.3	-	〃	장래 오수발생 증가분 고려 200㎥/일 규모로 설치

2.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가. 관리기본계획

수도권 산업재배치 및 제조업의 정책적인 육성을 위하여 산업용지를 산업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으로 구획하여 관리하며 단지내 공공 및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여 입주업체 기업활동의 효율적 지원을 도모

나. 입주 및 사후관리계획

1) 입주업종 [붙임1]의 입주제한 업종을 제외한 한국표준산업 분류상의 전 제조업

※ 단 수질환경보전법상 폐수배출 업종은 제외함

2) 입주자격 (산업시설구역)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한다.)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공장으로 동법시행령 제27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공장

3) 입주 우선 순위

가)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등록공장

① 수도권지역별 우선순위

구 분	비 공 업 지 역		공 업 지 역	
	도시형공장	비도시형공장	도시형공장	비도시형공장
과밀억제권역	1	2	5	6
자연보존권역	3	4	7	8
성장관리권역	9	10	11	12

② 산업자원부 고시에 의한"첨단업종"의 공장

③ 전년도 수출실적이 많은 공장

나) 기타공장

① 산업자원부 고시에 의한 첨단업종의 공장(법 시행규칙 제19조의 4 참조)

② 도시형 업종의 공장(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참조)

다) 용수 다소비공장 제한

용수공급계획 범위 내에서 면적당 배분량을 초과하는 경우 상기 입주우선순위에 의한 입주자 선정을 제한 할 수 있음.

4) 사후관리 계획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산업단지관리지침과 산업단지관리기본 계획의거 관리

다. 산업단지 용도별 구획계획

1) 용도별 구획면적

(단위 ㎡)

총 면 적	산 업 시설구역	지 원 시설구역	공 공 시설구역	녹 지 시설구역	비 고
60,000 (100%)	40,542 (67.6%)	991 (1.6%)	7,567 (12.6%)	10,900 (18.2%)	

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시설구역 법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용도의 건축물

나) 공공시설구역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다) 녹지시설구역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3) 용도별 구획 붙임 도면 참조

라. 업종별 공장배치 계획

1) 업종별 배치계획

(단위 ㎡, 개사)

업 종	업 체 수	면 적	비 고
합 계	10	40,542	
음 · 식료품	1	3,000	
섬유 · 의복제품	4	15,414	
목재 및 나무제품	1	4,000	
종이제품	1	6,000	
비금속광물	2	5,124	
기계금속	3	4,000	
기타제조업	1	3,000	

※ 업체수는 분양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배치기준

○ 업종별 블록화 배치

○ 관련업종 인접 배치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 또는 유사업종별로 공장배치를 기준으로 하되 분양결과에 따라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함

3) 업종별 배치계획 붙임 도면 참조

마. 공공시설계획

1) 기본방향

○ 산업단지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입주기업에 효율적이고 활력 있는 생산활동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시설을 완비

○ 산업단지내 종사자들의 여가활동 및 쾌적한 노동활동에 적합하도록 시설물 선정 설치

○ 입주업체의 생산활동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 향상 도모

2) 지원시설 설치계획

가) 오수처리계획

○ 총 폐수발생량 63.5㎥/일 (생활폐수 63.5㎥/일)

○ 사업지구내에 오수처리장에서 처리(규모 200㎥/일)

나) 산업(일반포함) 폐기물 처리계획

○ 처리계획

- 생활 및 일반폐기물은 안성시 소각장 및 매립시설에서 처리
- 지정폐기물은 전량 위탁처리

다) 용수 공급계획

○ 총 용수량 69.1톤/일(생활용수 69.1㎥/일)

○ 생활용수는 충주댐(광역상수도) 공급

라) 전력수급계획

○ 공급계획 784 KVA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공급계획 수립)

마) 통신시설계획

총소요수 45선(한국통신공사와 협의하여 계획수립)

바) 지방산업 관리를 위한 필요한 사항

○ 기술개발 및 산업정비 제공

○ 인력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지원 강화

○ 산업단지의 각종 재해방지를 위한 방재 계획 수립

사) 입주기업들의 편의를 위해서 기숙사 및 사원주택과 음식점, 당구장, 탁구장, 편의점, 약국, PC방, 미용실 등 기타 근린생활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

붙임 1. 산업단지 입주제한업종 1부.

2. 용도별 구획 평면도 1부.(생략)

3. 업종별 배치 계획도 1부.(생략)

[붙임 1]

산업단지 입주 제한업종

표준산업 분류번호	업 종
151110	도축업
23210	원유정제처리업
23221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232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석유정제 분획물 재처리업
23300	핵연료가공업
26941	시멘트제조업
26942	석회제조업
26943	프라스터제조업
26951	비내화 모르타르제조업
26952	레미콘 제조업
26961	성형가공석재 및 석제품제조업
26993	아스팔트 제품제조업
26995	비금속광물 분쇄처리업
26996	인조흑연 및 기타 산소 제품제조업
27111	제철업
27112	합금철강 제조업
27113	제강업
271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철 및 제강업
63204	위험물품보관업
63209	기타 창고업

현곡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1. 산업단지 개요

가. 관리기관 평택시

나. 조성목적

○ 국토의 균형개발과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단지의 적기제공 및 지역 산업개발 촉진에 기여

○ 외국첨단 제조업체의 유치를 통한 국가 경제력 제고

○ 지방산업 육성을 통한 신규 고용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다. 사업추진경위

○1986. 7. 15 산업용지 지구지정(건교부고시 제306호)
○1993. 5. 29 현곡지방산업단지 지구지정 승인(건교부)
○1993. 12. 17 국토이용계획 변경고시(건교부 고시 제541호)
○1993. 12. 28 현곡지방산업단지 지정고시(경기도 고시 제480호)
○1994. 6. 16 : 개발계획 승인 (건교부)
○1994. 6. 25 개발계획 승인고시 (경기도 고시 제1944-170호)
○1994. 9. 24 개발계획 변경 승인고시(경기도 고시 제1994-263호)
○1996. 4. 8 사업시행자 지정
○1996. 5. 7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고시(경기도 고시 제1996- 100호)
○1998. 3. 21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고시(경기도 고시 제1998-123호)
○1999. 12. 22 개발기간 연장 승인고시(경기도 고시 제1999-484호)
○2001. 1. 16 사업시행자 변경승인고시(경기도 고시 제2001-10호)
○2001. 12. 24 사업기간 연장 승인고시(경기도 고시 제2001-289호)
○2002. 8. 28 :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고시(경기도 고시 제2002-222호)
○2002. 9. 5 : 현곡단지 외국인투자기업 임대지구 확보계획 통보(경기도)

라. 분양(임대)현황

(단위 m²)

구 분	분양(임대) 대상면적	분양(임대) 가능면적					조성기간	조성기관
		기분양(기임대)	미분양(미임대)			계		
			조성	미조성	소계			
계	529,379	-	-	529,379	529,379	529,379	'93.12 ~ '05.6	경기지방공사 · 평택시
산업시설구역	514,291	-	-	514,291	514,291	514,291		
지원시설구역	15,088	-	-	15,088	15,088	15,088		

마. 입주현황

구 분	입주업체수			면 적(㎡)		
	계	제조업	기 타	계	제조업	기 타
계	15	14	1	514,291	501,209	13,082
2004.6월 현재	-	-	-	-	-	-
향 후 계 획	15	14	1	514,291	501,209	13,082

※ 상기 사항은 입주수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바. 입지여건(기반시설)

시 설 명	총 계 획	비 고
용 수	6,797㎥/일	(공업용수 5,447㎥/일, 생활용수 1,350㎥/일)
폐수종말처리장	3,600㎥/일	
폐기물매립장	13,082㎡	
통 신	1,382회선	
전 력	32,582KVA	
도 로	길이 5,280m	(면적 96,406㎡)
에너지(연료수요량)	122,595Gcal/년	

2.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가. 기본방향

○ 첨단고도기술을 수반한 외국인투자기업 입주를 통해 외국인투자기업 전용 산업단지로 육성·발전 도모

○ 첨단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저가의 임대단지 조성·운영

○ 산업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 녹지구역으로 구획, 관리하여 환경 친화적인 산업단지 조성·운영

○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소득증대, 지역주민의 고용창출 및 외국의 고도기술이전 등의 효과가 있는 외국인업체를 적극 유치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나. 산업단지 용도별 구획계획

1) 용도별 구획면적

(단위 ㎡, %)

총 면 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727,668 (100)	**514,291 (70.7)**	**15,088 (2.1)**	**129,690 (17.8)**	**68,599 (9.4)**

※ 공공시설구역 (도로 96,406, 주차장 4,408, 공원 18,928, 폐수종말처리장 9,948)

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시설구역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이라한다)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로서 건축법 및 건축물 등의 설비기준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규정사항을 반영한 건축물

나) 지원시설구역

① 산집법 제2조 1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동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② 건축법 시행령 별표(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제외),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공공용시설 등(라목 내지 아목)의 시설로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다) 공공시설구역 도로 등 공공기관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

라) 녹지구역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3) 용도별 구획 평면도 별첨 #1

다. 업종별 배치계획

1) 업종별 배치계획

(단위 : 개사, m²)

구 분	업 종	업체수 (예정)	면 적
산업시설구역 (외투기업 임대단지)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14~18	501,209

※ 상기사항은 입주수요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배치기준

가) 유치업종 및 시설간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업종별 유치규모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검토, 효율적인 업종별 배치

나) 시설투자의 경제성을 제고하여 업종별 집단화를 유도

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입주촉진,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여건에 따라 달리 배치가능

3) 업종별 배치계획도 별첨 #2

라. 입주관리계획

1) 입주(임대)대상업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2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고도기술수반업종

○ 산집법 시행규칙 별표5에 의한 첨단업종

○ 고용 및 기술이전 효과가 큰 일반제조업종

2) 입주자격

가) 산업시설구역

○ 외국인 투자촉진법이 정하는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위·수탁기관(경기지방공사)과 임대계약을 체결한 기업체

○ 산집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기업체로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정한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나) 지원시설구역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업자로서 산집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3) 입주(임대) 우선순위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 간 동일부지에 대하여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기술수준, 투자규모, 외국인 투자비율, 고용인원 등을 감안하여 입주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 단 산자부장관 또는 경기도지사가 승인한 업체에 대하여는 입주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 없이 위탁기관의 결정으로 입주결정 및 임대계약 체결가능

4) 입주절차

임대업무 수탁기관과 임대차계약 체결하고 산집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고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

마. 사후관리계획

1) 임대업체(용지) 관리

산집법, 산업단지관리지침, 현곡지방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및 현곡외국인투자지구 운영에 관한 지침에 의거 관리

2) 환경관리

○ 입주업체는 환경관련 법률 및 지자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 소음·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배출하여야 하며, 오염물질종류 및 발생량등을 검토하여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적합한 방지지설을 설치·운영하고 대기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LNG연료 등을 사용토록 함. 또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유지관리비는 오염물질 부하량을 기준하여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함.

○ 입주기업체의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폐수의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300mg/ℓ,화학적 산소요구량 240mg/ℓ,부유물질량 100mg/ℓ로 하고 총질소 및 총인의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은 원폐수로 하며, Cd, Pb, Zn, Cu의 특정 유해물질은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5, 2호 "특례지역" 기준의 1/2을 적용함

바. 입주기업체 지원사업 추진계획

1) 기본방향

○ 입주기업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공행정,우정,소방,통신, 금융·보험, 복리후생, 교육연구시설등과 산집법 시행령 제6조제6항 규정의 사업을 위한 시설의 설치

※ 해당 실수요자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함

○ 입주업체의 생산활동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 향상을 도모

2) 지원(공공)시설 설치계획

가) 입주기업체 지원을 위한 시설

○ 지원시설용지 ---------- 15,088㎡

○ 지원시설설치계획 산집법에서 정한 지원기관으로서 금융·보험·의료·교육 등 입주 가능한 시설

나) 폐수처리계획

입주기업체에서 발생되는 공장폐수는 자체처리후 차집관로를 통해 현곡폐수종말처리장(3,600㎥/일)으로 유입후 처리

다) 폐기물처리계획

산업단지내 발생되는 폐기물중 매립대상 폐기물의 매립을 위하여 13,082㎡ 규모의 폐기물 매립장 설치

라) 용수공급계획

○ 계획급수구역은 현곡산업단지 전체이며, 공업용수와 생활용수는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팔당광역상수도 평택계통)에서 인입 공급

○ 공업용수량산정 6,797㎥/일(공업용수 5,447㎥/일,생활용수 1,350㎥/일)

붙 임 1. 용도별 구획평면도 1부(생략)
2. 업종별 배치계획도 1부(생략)

마도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1. 산업단지 개요

가. 관리기관 화성시

나. 조성목적

○ 수도권내 산재된 공장을 계획적으로 집단화 유치

○ 지역고용촉진 및 생산환경 개선과 소득증대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다. 추진경위

○ 1992. 09. 22 수도권 정비 시행계획 (건설부 고시 제 1992-521호)
(본 계획지구의 입지지정을 정책 결정)

○ 1994. 04. 28 마도지방산업단지 지정승인 (건설부)

○ 1994. 05. 23 마도지방산업단지 지정 및 고시 (경기도 고시 제 123호)

○ 1995. 05. 02 마도지방산업단지 (변경)지정 및 고시 (경기도 고시 140호)

○ 1997. 12. 31 마도지방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고시
(경기도 고시 제 491호)

○ 2000. 12. 07 마도지방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개발기간 연장)
(경기도 고시 제 2000-277호)

○ 2003. 09. 16 사업시행자 변경 승인 (경기고 고시 제 2003-227호)

○ 2003. 12. 23 마도지방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사업기간 연장) (경기도 고시 제 2003-328호)

○ 2004. 04. 08 마도지방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승인 (유치업종 변경)
(경기도 고시 제 2004-107호)

○ 2004. 06. 22 마도지방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승인
(경기도 고시 제 2004-190호)

라. 분양현황 (단위 · 천㎡)

구 분	총면적	분 양 가 능 면 적					조성기간	조성기관
		분양	미 분 양			계		
			조성	미조성	소계			
산업시설구역	577	-	-	577	577	577	'97～'05	주식회사 새 날
지원시설구역	62	-	-	62	62	62		
공공시설구역	177	-	-	177	177	177		
녹 지 구 역	126	-	-	126	126	126		
계	942	-	-	942	942	942		

마. 입주현황 (단위 · 개사, 천㎡)

구 분	입 주 업 체 수			면 적 (㎡)		
	제조업	기 타	계	제조업	기 타	계
'04년도 현 재	0	0	0	0	0	0
향후계획	117	1	118	568,498	8,300	576,798

바. 입지여건

시 설 명	총 계획	사업기간	시행기관
도 로(㎡)	157,374	'00 ~ '05	주식회사 새날
용 수(㎥/일)	10,000	〃	주식회사 새날
전 력(KW)	30,950	〃	한국전력공사
통 신(회선)	1,200	〃	한국통신공사
오 · 폐수 처리장(㎥/일)	2,500	〃	주식회사 새날
폐기물 처리장(㎥)	8,300	〃	미정

2. 관리기본계획

가. 관리기본방향

1) 목 표

가) 기업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활성화 대책 강구

나) 입주 기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활동 전개

다) 비공해업종 유치를 통한 산업단지 관리의 효율성 제고

2) 추진방향

가) 경기지역의 중추거점 산업단지로 육성발전 도모

나) 첨단업종 및 저공해 발생 제조업등의 원활한 입지제공

다) 수출증대 및 생산성 향상을 이룩하는 고부가가치 기업유치

라) 공공사업시행에 따른 이전업체 유치

나. 산업단지 용도별 구분계획

1) 용도별 구획면적 (단위 ㎡, %)

총 면 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942,000	576,798 (61.2)	62,176 (6.6)	177,124 (18.8)	125,902 (13.4)

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시설구역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② 폐기물 처리시설용지 폐기물 수집·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나) 지원시설구역

① 공공관리 및 지원시설용지

-.산집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동법 제2조 제8호 및 제44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공작물과 그 관련시설(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기타 공용의 청사 등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화성시 도시계획조례로 준공업 지역내에서 허용되는 건축 가능한 건축물
(단, 단독주택, 공동주택, 공장 등은 제외)

② 유통업무 및 지원시설용지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자의 생산활동지원에 필요한 공용화물터미널·집배송단지, 기계와 공구단지, 주유소, 보관·창고·운송업 및 이에 필요한 판매 및 영업시설 등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화성시 도시계획조례로 준공업 지역내에서 허용되는 건축 가능한 건축물
(단, 단독주택, 공동주택, 공장 등은 제외)

③ 복지후생 및 지원시설용지

-.산업단지 종사자 및 인근지역 주민들의 복지 및 생활 편익을 위한 병원, 약국, 교회, 음식점 등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화성시 도시계획조례로 준공업지역내에서 허용되는 건축 가능한 건축물
(단, 단독주택, 공동주택, 공장 등은 제외)

④ 주차장용지

- 관계법령과 화성시 조례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

다) 공공시설구역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라) 녹지시설구역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3) 용도별구획 평면도 붙임 1.(생략)

다. 업종별 배치계획

1) 업종별 배치계획

구 분		계		'04. 5월 현재		향 후 계 획	
		업체수	면적	업체수	면적	업체수	면적
계		-	576,798	-	576,798	118	576,798
산업시설용도	소 계	-	568,498	-	568,498	117	568,498
	조립금속 제품제조업 (28)	-	194,159	-	194,159	42	194,159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29)	-	157,172	-	157,172	29	157,172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32)	-	101,144	-	101,144	21	101,144
	1차 금속산업 (27)	-	69,389	-	69,389	15	69,389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34)	-	46,634	-	46,634	10	46,634
특정용도	폐기물 처리시설	-	8,300	-	8,300	1	8,300

※ 업체수는 분양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배치기준

가) 타 업종에 비해 공해가 적어 깨끗한 산업단지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는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은 진입도로쪽에 배치

나) 환경영향요인을 감안하여 동종 업종인 조립금속 제품제조업과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은 집단화하여 단지 안쪽에 배치.

다) 단위면적당 상주인구가 많은 노동집약적 업종인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은 단지 진입부쪽에 배치

라) 지원시설용지는 이용성,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단지 진입부에 계획하고 주차장용지는 이용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단지중앙에 배치

마) 폐기물처리장, 오·폐수처리장, 변전소 및 열공급시설은 민원 사전예방 및 미관차원에서 당지 남부 저지대에 배치

3) 업종별 배치 계획도 붙임 2.(생략)

라. 입주관리계획

1) 입주대상업종

가) 조립금속 제품제조업(28),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29),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32), 1차 금속산업(2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4)

※ ( )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 번호임

※ 입주 제한업종 1차 금속산업중 공해업종(붙임 3.)

나) 공용화물터미널, 집배송단지, , 기계와 공구단지, 주유소, 보관·창고·운송업 및 이에 필요한 판매 및 영업시설 등을 영위하기 위한 산업

다) 폐기물관리법 제26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종

라) 관리기관이 입주업체 사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관리사무소, 우체국, 소방파출소, 파출소, 기타 공용의 청사 등과 금융·보험·의료·교육과 관련된 시설, 기타 교회 ,음식점등 복지후생과 관련된 시설)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화성시도시계획조례로 준공업지역내에서 허용되는 건축 가능한 업종(단, 단독주택, 공동주택, 공창 등은 제외)

2) 입주자격

가) 산업시설구역

① 산집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② 산집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의거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③ 폐기물수집 및 처리를 위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지정용도에 한함)

나) 지원시설구역

① 공공관리 및 지원시설용지

-.산집법 제2조 제12호 규정의 지원기관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및 화성시 도시계획조례로 준공업지역내에서 허용되는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할 일반 실수요자

② 유통업무 및 지원시설용지

-.공용화물터미널 · 집배송단지, 기계와 공구단지, 주유소, 보관 · 창고 · 운송업 및 이에 필요한 판매 및 영업시설 등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및 화성시 도시계획조례로 준공업지역내에서 허용되는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할 일반 실수요자

③ 복지후생 및 지원시설용지

-.산집법 제2조 제12호 규정의 지원기관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 관리기관이 입주업체 사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관리사무소, 우체국, 소방파출소, 파출소, 기타 공용의 청사 등과 금융 · 보험 · 의료 · 교육과 관련된 시설, 기타 교회 ,음식점등 복지후생과 관련된 시설) 등을 영위하고자 하는자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및 화성시 도시계획조례로 준공업지역내에서 허용되는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할 일반 실수요자

④ 주차장용지

- 관계법령 및 화성시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운영하고자 하는자

3) 입주우선 순위

가) 화성시 관내에서 이전 또는 확장하고자 하는 업체

나) 수도권에서 공공사업시행으로 이전하는 업체

다) 수도권 지역에서 이전 또는 확장하고자 하는 업체

※ 수도권 지역별 우선순위

구 분	비 공 업 지 역	공 업 지 역
과밀억제지역	1순위	3순위
자연보호지역	2순위	4순위
성장관리지역	5순위	6순위

라) 기타 창업 및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

4) 분양 최소면적

1,653㎡(500평)을 원칙으로 함.

(단, 토지이용형태상 필요할 경우 관리기관이 조정할 수 있음)

마. 사후 관리계획

1) 목표

산집법, 산업단지관리지침 및 관리기본계획에 의거 산업단지의 합리적, 효율적 관리 도모

2) 세부 관리계획

가) 분양용지 관리

① 산업단지내 분양용지는 산집법과 산업단지관리지침 및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사후 관리함.

② 공장등의 설립을 완료하기 전(나대지 등)에 분양용지를 처분하는 경우 관리기관에 양도함. 다만,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을 경우 산집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할 수 있음.

③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④ 경매,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취득한 자는 관리기관에 취득신고 및 입죽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법정기간내 미계약시는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함.

⑤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가 산업시설용지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당해 용지를 환수할 수 있으며, 산집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함.

나) 환경관리

① 입주업체는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 진동 등의 배출허영 기준에 적합하게 배출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도지사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② 관리기관은 산업단지내에 설치된 폐수처리장을 단지내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이 적절히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

③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근로자 및 주변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단지내에 휴식을 위한 충분하 녹지공간 확보

다) 안전관리

① 관리기관은 풍수해 등 재해와 치안유지를 위해 산업단지내에 파출소, 소방파출소 등을 여건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유치하고, 관계기관과 재해복구 협조체제 구축

② 입주기업체는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라) 기반시설지원

관리기관은 산업단지내 도로, 전력, 용수 등 기반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공급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산업시설용지 등을 조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조치를 강구

사. 입주기업체 지원사업 추진계획

1) 공장설립지원

가) 공장설립 업무 인 · 허가 절차대행 및 현지출장으로 신속한 업무 처리

나)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을 완료하고 관리기관에 공장설립 완료 신고시 완료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장등록대장에 기록하고 등록사실을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함.

2) 생산활동 지원

생산활동 기반구축을 위해 산업단지내에 입주업체의 원부자재 및 생산제품의 운송 · 보관이 편리하도록 물류업체 유치

3) 고용증대 및 근로자복지사업

산업인력공단, 산업안전공단 등을 통한 근로자의 기술능력향상 교육실시

4) 지원시설 설치계획

관리사무소, 창업보육센터, 소방파출소, 우체국, 파출소, 은행, 주유소, 교회, 병원, 약국등 입주대상시설의 수용에 의함

경기도지방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본 책자는 지방산업단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발간하였으며 고시된 내용중 업종별 배치계획 등 일부는 생략하였습니다.

○ 발 행 일 2004. 7.
○ 발 행 처 경기도청 산업정책과 산업입지담당
○ 전 화 031) 249 - 4611 ~ 4614
○ F A X 031) 249 - 3239